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807-01

정책보고서 2016-30

신설·변경 협의 미이행 사회보장사업 조사

정홍원 · 함영진 · 강지원 · 이민경 · 이세미 · 류진아 · 민진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세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민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발간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시행하고 있다.

신설·변경 협의의 대상인 사회보장제도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은 추상적 개념정의이며,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해마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을 목록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목록과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은 매년 신설과 폐지, 내용의 변경 등 상당한 폭의 변화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기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및 예산 설명자료를 통해 사업별로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을 조사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사회보장사업 조사는 상당한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부서별로 분할되어 있거나 일반회계만 제공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일정한 분석틀에 따라 분류해내는 작업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목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의·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보장사업을 조사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비를 통해 특정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고 할 때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이 엄밀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념적 범위와 협의·조정 절차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사업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의 목록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사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지침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조사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시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회보장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설·변경시 협의·조정을 사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협의·조정 미이행 사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도움을 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 박순영 과장과 전병길 사무관 이하 관련 공무원, 자료 제출 및 협의에 참여해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조정 업무 담당 공무원, 자료 수집 및 입력, 기초자료 분석 등 지난한 과정을 잘 견디어 준 정홍원 연구위원 이하 연구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2016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요약 ····· 1

제1장 서론 ·····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9

제2절 연구 방법 ····· 11

제2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와 방법 ····· 15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 ····· 17

제2절 조사의 범위: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 22

제3절 자료 입력과 처리 ····· 30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판단 ····· 39

제3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 43

제1절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 45

제2절 시·도별 현황 및 조사 결과 ····· 49

제3절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에 대한 분석 ····· 211

제4장 미협의 사업 조사 개선 및 결과 활용 방안 ····· 217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결과 처리와 조사 개선 방안 ····· 219

제2절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 631

제5장 결론 ····· 13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141

제2절 제언 ····· 149

참고문헌 ····· 155

부록 ····· 157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홈페이지 주소 ····· 751

부록 2: 예산의 성질별 분류(편성목, 통계목)에 따른 자료입력 여부 ····· 561

부록 3: 미협의 사업의 예산 편성목·통계목별 분류 ····· 961

표 목차

<요약표 1>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의 변동 현황(2016년 본예산 기준) ····· 3
<요약표 2> 시.도별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 4

<표 2-2-1>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 사회복지(080) 영역 ····· 2
<표 2-2-2>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 보건(090) 영역 ····· 2
<표 2-3-1> 예산의 성질별 분류의 편성목, 통계목에 따른 자료입력 범위 ····· 3
<표 2-3-2> 1차 자료 입력 양식 ····· 3
<표 2-3-3> 1개 단위사업 예산서 예시 ····· 3
<표 2-3-4> 2개 이상 단위사업 예산서 예시 ····· 3
<표 2-3-5> 예산서 내의 예산산출근거 ····· 3
<표 2-3-6> 지방자치단체 통보 양식 : 사업 목록 및 예산 ····· 3
<표 2-3-7> 지방자치단체 통보 양식 : 사업 정보 입력 ····· 3
<표 2-3-8> 추가 입력 양식 ····· 3
<표 3-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2016년 본예산 기준) ····· 4
<표 3-1-2> 협의대상 사업 및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의 시.도별 현황 ····· 4
〈표 3-2-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서울) ····· 5
〈표 3-2-2〉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서울) ····· 5
〈표 3-2-3〉 미협의 사업 목록(서울) ····· 5
〈표 3-2-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부산) ····· 5
〈표 3-2-5〉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부산) ····· 5
〈표 3-2-6〉 미협의 사업 목록(부산) ····· 5
〈표 3-2-7〉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대구) ····· 5
〈표 3-2-8〉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대구) ····· 5
〈표 3-2-9〉 미협의 사업 목록(대구) ····· 5
〈표 3-2-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인천) ····· 6
〈표 3-2-11〉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인천) ····· 6
〈표 3-2-12〉 미협의 사업 목록(인천) ····· 6
〈표 3-2-13〉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광주) ····· 6
〈표 3-2-14〉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광주) ····· 6

〈표 3-2-15〉 미협의 사업 목록(광주) ····· 5 ····· 6
〈표 3-2-16〉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대전) ····· 6 ····· 6
〈표 3-2-17〉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대전) ····· 7 ····· 6
〈표 3-2-18〉 미협의 사업 목록(대전) ····· 8 ····· 6
〈표 3-2-19〉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울산) ····· 9 ····· 6
〈표 3-2-20〉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울산) ····· 0 ····· 7
〈표 3-2-21〉 미협의 사업 목록(울산) ····· 1 ····· 7
〈표 3-2-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세종) ····· 2 ····· 7
〈표 3-2-23〉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세종) ····· 3 ····· 7
〈표 3-2-24〉 미협의 사업 목록(세종) ····· 3 ····· 7
〈표 3-2-25〉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경기) ····· 5 ····· 7
〈표 3-2-26〉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경기) ····· 6 ····· 7
〈표 3-2-27〉 미협의 사업 목록(경기) ····· 7 ····· 7
〈표 3-2-28〉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강원) ····· 1 ····· 8
〈표 3-2-29〉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강원) ····· 3 ····· 8
〈표 3-2-30〉 미협의 사업 목록(강원) ····· 4 ····· 8
〈표 3-2-3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충북) ····· 6 ····· 8
〈표 3-2-32〉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충북) ····· 7 ····· 8
〈표 3-2-33〉 미협의 사업 목록(충북) ····· 8 ····· 8
〈표 3-2-3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충남) ····· 9 ····· 8
〈표 3-2-35〉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충남) ····· 0 ····· 9
〈표 3-2-36〉 미협의 사업 목록(충남) ····· 1 ····· 9
〈표 3-2-37〉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전북) ····· 3 ····· 9
〈표 3-2-38〉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전북) ····· 4 ····· 9
〈표 3-2-39〉 미협의 사업 목록(전북) ····· 5 ····· 9
〈표 3-2-40〉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전남) ····· 7 ····· 9
〈표 3-2-41〉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전남) ····· 8 ····· 9
〈표 3-2-42〉 미협의 사업 목록(전남) ····· 9 ····· 9
〈표 3-2-43〉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경북) ····· 2 ····· 0 ···· 1
〈표 3-2-44〉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경북) ····· 3 ····· 0 ···· 1
〈표 3-2-45〉 미협의 사업 목록(경북) ····· 4 ····· 0 ···· 1

〈표 3-2-46〉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경남) ····· 60 ····· 0 ····· 1
〈표 3-2-47〉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경남) ····· 70 ····· 0 ····· 1
〈표 3-2-48〉 미협의 사업 목록(경남) ····· 80 ····· 0 ····· 1
〈표 3-2-49〉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제주) ····· 90 ····· 0 ····· 1
〈표 3-2-50〉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제주) ····· 0 ····· 1 ····· 1
〈표 3-2-51〉 미협의 사업 목록(제주) ····· 1 ····· 1 ····· 1
<표 3-3-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미협의 사업 현황 ····· 2 ····· 1 ····· 1
<표 3-3-2> 미협의 사업의 담당부서별 현황 ····· 3 ····· 1 ····· 1
<표 3-3-3> 미협의 사업의 유형별 현황 ····· 4 ····· 1 ····· 1
<표 3-3-4> 미협의 사업의 지원대상별 현황 ····· 5 ····· 1 ····· 1
<표 3-3-5> 미협의 사업의 지원 목적별 현황 ····· 6 ····· 1 ····· 1
<표 3-3-6> 미협의 사업의 예산 편성목별 현황 ····· 7 ····· 1 ····· 1
<표 3-3-7> 미협의 사업의 지원 대상-목적별 현황 ····· 9 ····· 1 ····· 1
<표 3-3-8> 보훈사업의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 0 ····· 2 ····· 1
<표 3-3-9> 임산부 대상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 1 ····· 2 ····· 1
<표 3-3-10> 아동.청소년 대상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 2 ····· 2 ····· 1
<표 3-3-11> 노인 대상 돌봄 및 요양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 3 ····· 2 ····· 1
<표 3-3-12> 저소득 대상 맞춤형 지원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 4 ····· 2 ····· 1
<표 3-3-13> 보건소 사업의 미이행 다빈도 사업 예시 ····· 5 ····· 2 ····· 1
<표 3-3-14〉 기타 부서의 미이행 다빈도 사업 예시 ····· 6 ····· 2 ····· 1
<표 5-1-1> 신설.변경 협의 제외대상 유형과 주요내용 ····· 4 ····· 4 ····· 1
<표 5-1-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 변동(2016년) ····· 5 ····· 4 ····· 1
<표 5-1-3〉 시.도별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 7 ····· 4 ····· 1

그림 목차

[그림 2-1-1]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 절차 ····· 17 ····· 1
[그림 4-2-1] 지방자치단체 행사예산의 관리방안 개선 ····· 73 ····· 1
[그림 5-1-1]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논리 모형 ····· 14 ····· 1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을 위한 협의·조정제도의 시행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2013.1.27.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②항).

○ 2013년제도 시행 이후 매년 협의안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61건(2013) → 81건(2014) → 361건(2015) → 약 1,050건(2016)

□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에 대한 제제수단 마련으로 선제적 조치 필요

○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미협의 사업의 제제수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2016.1.1.)에 따라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또는 협의·조정의 결과를 준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에 대해서 감액 또는 환수”가 명시됨.

– 교부세 감액과 같은 재정적 제재 이전에,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협의 사유를 확인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미협의 사업 조사

- 미협의 사업에 대한 조사는 2015년과 2016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며, 전국 243개(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미협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 조사방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목록화 및 미협의 사업의 유형화 등을 통해 산출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미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방법 및 체계, 효율적 조사 방안 마련

2. 주요 연구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중 사회보장사업 현황

○ 2016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중 사회보장사업의 예산 지출 항목은 48,895개(예산 81,878억)에 달함.

-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은 서울특별시가 33,387억원(5,527개)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9,947억원(7,391개)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464억원(210개)으로 가장 적으며, 광주광역시 1,285억원(878개), 제주특별자치도 1,429억원(892개), 울산광역시 1,595억원(1,147개)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은 69,688억원(2015년) → 81,878억원(2016년)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7.5% 수준임.

- 신설 사업은 포함된 반면 폐지 사업은 제외되어 증가율이 높게 계산되었음.
- 실제로 사회복지 영역의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예산은 64,517억원(2015년) → 66,344억원(2016년)으로 증가, 증가율은 2.8%(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5년, 2016년).

○ 2015년 대비 2016년의 예산 변동을 기준으로 동결사업은 46.7%(22,810개), 감액사업은 14.8%(7,243개), 증액사업은 19.1%(9,316개), 그리고 신설사업

은 19.5%(9,526개)임.

<요약표 1>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의 변동 현황(2016년 본예산 기준)

시도	사회보장사업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개)	예산(억원)	사업(개)	예산(억원)	사업(개)	예산(억원)	사업(개)	예산(억원)	사업(개)	예산(억원)
서울	5,527	33,387	1,392	3,698	1,219	16,508	1,982	1,285	934	11,896
부산	1,525	4,784	328	336	313	2,265	674	1,448	210	735
대구	1,352	3,042	246	195	321	1,432	655	394	130	1,021
인천	1,615	3,634	534	597	265	1,048	577	353	239	1,637
광주	878	1,285	166	101	164	738	445	278	103	168
대전	841	1,920	106	217	182	736	454	533	99	435
울산	1,147	1,595	167	113	271	651	568	671	141	160
세종	210	464	25	27	59	164	86	43	40	230
경기	7,391	9,947	1,618	2,073	1,794	4,506	2,968	1,579	1,011	1,789
강원	4,063	2,720	756	402	741	1,155	1,873	569	693	594
충북	2,249	1,903	368	166	450	813	1,054	368	377	555
충남	2,974	2,748	663	521	469	1,078	1,497	706	345	444
전북	3,025	2,972	651	241	548	937	1,313	699	513	1,095
전남	5,056	2,466	1,015	318	669	793	2,532	876	840	479
경북	5,395	3,736	780	424	852	928	2,922	870	841	1,514
경남	4,755	3,844	545	525	707	1,479	2,856	1,066	647	773
제주	892	1,429	166	276	292	745	354	211	80	197
합계	48,895	81,878	9,526	10,229	9,316	35,979	22,810	11,949	7,243	23,721

□ 미협의 사업

○ 예산변동과 신설·변경 협의대상 유무를 판단하여 3,163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요청

– 8개 특별·광역시는 925개(6,313억), 9개 광역도는 2,238개(4,732억) 등 총 3,163개(1조 1,104억) 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사업정보의 확인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함.

○ 243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조사·확인을 거쳐 434개 사업을 미협의사업

으로 확정함.

- 경기가 76개로 미협의 사업이 가장 많고 충남(55개), 강원(47개), 서울(36개), 경북(33개) 등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반면에 세종(3개), 대전(5개), 광주(6개), 울산(8개), 전북(10개) 등이 적음.

<요약표 2> 시·도별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시도	지자체 확인 요청		미협의 사업(확정)	
	사업 (개)	2016년 예산 (백만원)	사업 (개)	2016년 예산 (백만원)
서울	361	432,330	36	10,751
부산	127	52,712	19	11,536
대구	114	66,656	24	3,551
인천	133	24,333	12	1,448
광주	49	6,293	6	236
대전	64	26,636	5	297
울산	62	15,834	8	3,449
세종	15	6,466	3	50
경기	607	170,396	76	27,325
강원	212	52,256	47	12,024
충북	137	18,489	18	1,262
충남	307	44,951	55	6,731
전북	150	34,044	10	575
전남	231	30,360	41	4,363
경북	235	23,985	33	2,074
경남	228	74,058	25	3,159
제주	131	24,615	16	4,262
합계	3,163	1,104,566	434	93,093

3. 결론 및 시사점

가. 신설·변경 사회보장 미협의 사업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중 미협의 사업은 주로 전통적인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광의의 개념에 따른 확대된 사회보장사업임.

○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을 사업 대상 및 목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훈대상

자에 대한 소득·생계 지원 사업(47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모에 대한 출산지원 사업(41개), 노인에 대한 돌봄(23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양육(20개) 순으로 나타남.

- 이들 사업은 국가보훈처, 보건소, 교육청 등 전통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외의 독립적인 전달체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 및 미협의 사업에 대한 예시 목록의 제공으로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개념 및 협의대상 사업에 대한 지침이 모호하여 협의를 요청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함.

- 미협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결과, 해당사업이 사회보장사업인지 여부와 협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빈번함.
- 특히 복지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조정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사회보장 총괄·조정기제 필요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이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주무 부서를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신청 여부를 관리하는 기제가 부족함.

□ 신설변경 협의의 지침서 보완 필요

○ 전년도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목록을 제공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기준으로 분야 및 부문, 복지부서 및 기타부서, 독립적인 전달체계(예, 지방보훈처, 교육청, 지방주택공사 등) 등에서 수행

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을 파악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침 제공

○ 지침서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목록과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의 필요성 및 제재조치, 협의·조정 절차와 이와 관련된 서식들이 충분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른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미협의 조사 사업의 예시 또한 목록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복지 외 기타부서, 독립적인 전달체계 등에서도 협의 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침 교육 및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주요용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1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시행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2013.1.27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②항)

○ 협의 및 조정제도의 도입 이후에 매년 협의건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61건(2013년) → 81건(2014년) → 361건(2015년) → 약 1,050건(2016년)

– 협의 안건 수 및 관련 사례의 누적, 협의·조정 안건 유형의 다양화 등으로 협의·조정제도가 활성화

– 협의·조정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후관리, 협의의 이행력 제고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관심 필요

□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력 제고 차원에서 미협의 사업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2016.1.1.)에 따라서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또는 협의·조정 결과를 준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재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

○ 지방교부세 감액과 같은 재정적 제재 수단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에 대한 명확한 확인·조사와 같은 후속조치가 필수

2. 연구 목적

□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 조사

○ 지방자치단체가 신설 또는 변경한 사회보장사업의 현황과 신설·변경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회보장사업을 조사

○ 미협의 사업의 확인 및 조사의 대상기간은 2016.1.1.~2016.12.31.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예산서를 근거로 하여 조사를 실시

□ 미협의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활용과 사후관리 마련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조정 대상에 포함되나,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을 목록화하고 이를 다음 년도 협의·조정 지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할 수 있도록 자료 구축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미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사방법 및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모색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 적합한 사회보장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컨설팅 기초자료 구축

- 지역단위 사회보장 현황 및 수준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사업과 필요한 사업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모색

제2절 연구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과 협의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 정립

○ 신설·변경 협의의 대상으로서 사회보장의 범주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협의·조정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동법 제3조제1항)'과 '평생사회안전망(동법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재원분담체계 또는 재원부담 수준,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전달체계 등이 바뀌는 경우

○ 신설·변경 협의의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전액 민간재원으로 시행하는 제도

– 사회보장급여(현금, 현물, 서비스)의 신설 또는 변경 없이 사회보장사업, 행정적 조치의 시행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관련 법률 또는 조례안의 제·개정

– 사회보장 급여의 대상자 선정 기준, 급여 내용 및 수준 등이 변경되지 않고 단순히 대상자 수, 예산 규모 등의 자연 증가로 인한 변경

-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의 변경을 반영한 예산 변경을 포함

– 사회보장사업을 통한 급여·서비스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보장 관련 조직, 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관련 기관, 단체 등

의 개폐 및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사업 구분(안) 기준

- 신규사업: 2016년 세출예산서 기준 예산이 순증한 신규 사업 중 신설·변경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 변경사업: 2016년 세출예산서 기준 전년도 대비 사업예산이 조정된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식의 변경, 재정부담 수준의 변화, 급여 및 서비스 수준이 변화되었으나 신설·변경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중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을 조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서를 활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을 전수조사

- 세출예산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예산총칙에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의 총액을 제공하고 있음.
- 지자체가 공개하고 있는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은 부서별·기관별로 작성되어 기능별 분류에 따른 사회보장사업 전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 2015년과 201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조사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중 사회보장사업으로 신설·변경된 사업을 파악

- 2015년(전년도 예산액) 예산은 없고, 2016년 예산액이 편성된 경우는 신설
- 2016년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의 차이가 0보다 큰 증액사업은 변경

○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중 미협의 여부를 판단

- 2015년에 신설 또는 변경된 사회보장사업 중 협의 제외대상을 식별하여 신설·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목록을 확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조회
-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2015년 신설·변경 협의안건 목록을 비교하여 미협의 사업의 목록을 확정
- 미협의 사업에 대한 현황 통계 생산: 자치단체별, 자치단체유형별, 예산편성목별, 사업유형별 통계

□ 미협의 사업 조사의 체계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관련 예산정보 이용의 개선 방안

–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의 사유 검토를 통한 이행 개선 방안

○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의 활용과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미협의 사업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

– 미협의 사업의 발생 예방 및 협의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과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사회보장 및 신설·변경 협의 관련 법률과 지침 분석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법령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훈련 등)과 조례 포함

– 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각종 사회보장 관련 사업(노인, 장애인, 아동, 보건의료, 가족 등)의 사업안내·지침, 지방자치단체 사업 안내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관련 보도자료 등 검토

□ 예산자료 수집 및 데이터 구축

○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5년과 2016년 세출예산서(세부명세)를 수집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세출예산서를 수집하고, 관련 URL을 정리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과 해당 분야의 자체사업을 정리

– 부서별로 작성된 예산을 기능별,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하여 데이터를 구축

□ 관련전문가 회의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분야 자체사업 신설·변경 사업 확인 기준 타당성 검토

– 신설·변경 협의 및 제외사업에 대한 기준, 미이행 사업 구분 기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을 연구하는 시·도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신설·변경 사업 미협의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의 소명과 의견 수렴

제 2 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와 방법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
제2절 조사의 범위 :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제3절 자료 입력과 처리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판단

2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와 방법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

□ 미협의 사업에 대한 조사는 3단계로 구분(그림 2-1-1 참고)

○ 조사는 자료수집 및 입력, 입력된 자료의 분석, 그리고 확인 및 결과 도출의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

[그림 2-1-1]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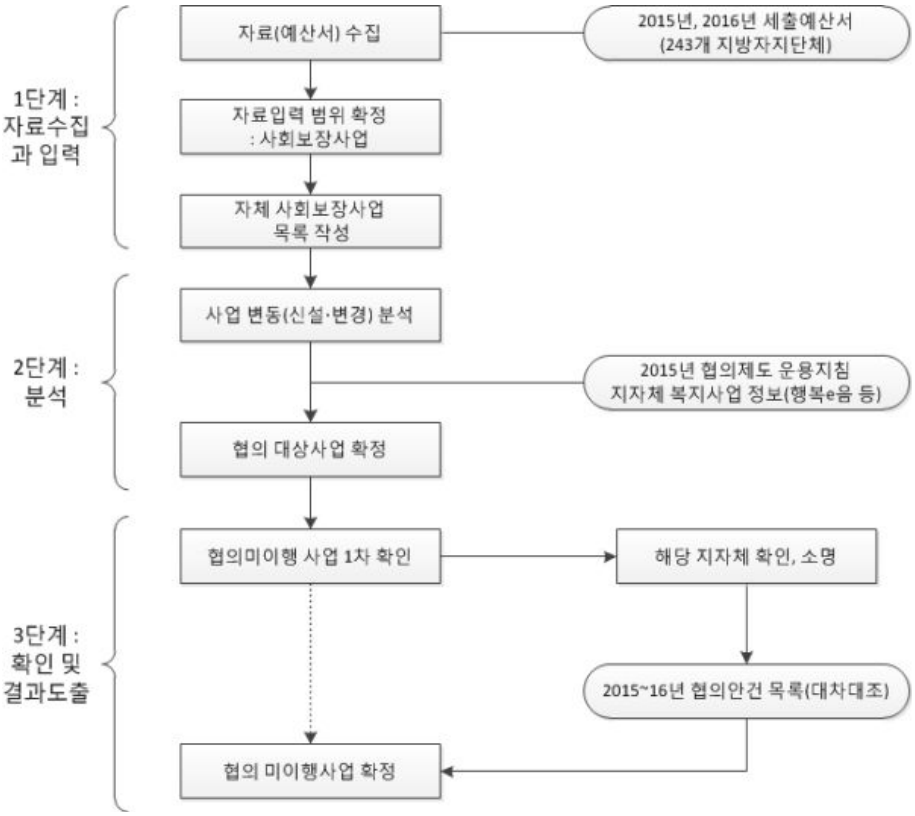

1. 1단계 : 자료 수집 및 입력(2절 및 3절 내용 참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자료) 수집

○ 자료 수집 대상 및 범위

- 17개 시·도 본청, 226개 시·군·자치구
- 2015년, 2016년의 본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필요한 경우에 2015년 최종(추가경정)예산 및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

○ 예산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수집하고, 자료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자료를 요청

※ 예산서를 공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소(URL)는 부록을 참고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목록을 작성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을 확인하여 입력 범위를 결정(2절 내용 참고)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보건소 포함)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총무·기획, 건설·주택, 산업, 교육 등의 관련부서 예산항목을 확인
- 내역사업별로 예산항목을 검토하여 사회보장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자료 입력 범위를 결정

○ 국고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을 선별하여 목록을 작성(3절 내용 참고)

- 시·도의 경우에 국비, 지역특별회계(사회계정), 중앙정부기금의 항목이 표시된 예산항목을 제외하고, 시·도비와 시·도-시·군·구비로 표시된 예산을 입력
- 시·군·구의 경우에 국비, 지역특별회계(사회계정), 중앙정부기금, 시·도비 예산이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자료를 입력

※ 지역특별회계 사회계정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바우처 예산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사회계정예산 규모 결정과 지자체 배분은 중앙부처가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비사업으로 분류됨

○ 자료입력 항목 : 담당부서, 편성목, 단위사업명, 내역사업명, 2015년과 2016년 예산액, 예산산출내역 등

□ 1단계 작업의 산출물

○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목록 및 예산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담당부서를 제외한 부서가 담당하는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목록 및 예산

2. 2단계 :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협의 대상사업의 판단(4절 내용 참고)

□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확인 : 신설 및 변경사업의 판단

○ 2016년 예산서에 신규항목을 신설사업으로 판단

- 신규항목이란 2016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항목이 '0'원인 경우
- 입력과정에서 2015년 예산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신규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

○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순증한 경우에 변경사업으로 판단

- 2015년과 2016년의 예산 총액과 산출내역(수량, 단가 등)을 비교
- 물가상승, 최저생계비 또는 최저임금 등과의 연동으로 예산이 자연증가한 사례에 대해서는 1차로 판단하되, 최종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함

□ 신설·변경 협의 대상사업 여부 판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신설·변경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판단은 '2016년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 예산서는 단위사업명, 내역사업명, 편성목, 예산액, 그리고 일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의 활용이 가능
- 예산서 정보만으로 신설·변경 협의 대상인지 확실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 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활용 자료

- 행복e음 사업정보(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보)로 2016년 현행화 데이터
- 2015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위해서 조사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보(5,891개 사업에 대한 정보)
-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조례의 제·개정 연혁을 파악하여 이를 활용

□ 2단계 작업의 산출물

○ 개별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내역(2015~2016년)

○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변경 협의 대상 및 제외대상 사업 목록

3. 3단계 : 미협의 사업 확인 및 결과 도출

□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의 확인

○ 협의 대상사업 목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확인 및 의견을 수렴

- 목록에 포함된 사업의 2015년, 2016년 예산액 확인
- 대상자 및 선정기준, 급여, 전달체계(제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와 해당 항목의 변동 여부
- 사업의 신설·변경 협의 여부 확인 및 협의대상 포함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지방자치단체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의 협의 이행 여부를 확인

□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의 목록을 확정

○ 2015.1.1. ~ 2015.4.30. 접수된 협의안건 목록과 대차대조하여 신설·변경 협의 이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목록을 확정

- 필요한 경우에 2013 ~ 2014년의 협의안건 목록을 참고

○ 신설·변경 협의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중점 검토 대상

-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 : 시·도 10억원 이상, 시·군·구 1억원 이상
- 부동의(불수용) 가능성이 큰 사업은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확인
- 신설·변경 협의사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중점 검토

□ 3단계 작업의 산출물

○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의 목록

제2절 조사의 범위: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개념

□ 사회보장사업은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의미

○ 사회보장제도는 개념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과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제도를 지칭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시·도비, 시·군·구비)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

–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사업을 의미

<표 2-2-1>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 사회복지(080) 영역

영역	주요 내용
081 기초생활보장	·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지방공공근로사업은 제외 → 086 노동)
082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 장애인·불우아동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사회복지 사업평가, 지역사회복지 · 복지회관 운영 등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제외 → 016 일반행정)
084 보육·가족 및 여성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 방지, ·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여성단체 지원,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 모·부자 복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지원 업무 ·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 아동·보육 관련 업무
085 노인· 청소년	·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물 설치 포함) ·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등
086 노동	·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 등 ·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직업재활지원 · 장애인근로자 융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 생활안정대부사업,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융자 등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087 보훈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 국가유공자 등 의료복지 지원 및 요양보호 ·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국민 호국정신 함양, 호국영웅 선양사업 · 호국보훈안보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숭모사업 및 묘소 단장사업, 독립운동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기타 보훈관련 업무
088 주택	· 임대주택건설, 수요자 융자지원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 임대 ·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089 사회복지 일반	·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080(사회복지)과 090(보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

○ 사회복지(080)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 사회복지(080)에 해당하는 사업은 9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 및 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 등 8개 하위 영역에 해당함
- 사회보험(083)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보건(090)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 보건(090)에 해당하는 사업은 091~093의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
- 보건의료(091) 영역이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함.
- 반면에 건강보험(092)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품의약안전(093)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식품위생단속, 의약품 관리 등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이 없는 규제업무로 사회보장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표 2-2-2>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 보건(090) 영역

영역	주요 내용
091 보건의료	·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등 운영 ·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 사회복지(080)와 보건(090) 이외의 영역에 대한 검토

○ 예산의 기능별 분류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080과 090 이외의 영역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

- 025(재난방재·민방위) :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및 복구 관련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이 아니며, 화재 등 인재에 따른 피해 보상과 구호는 사회보장사업
- 050(교육) : 교육사업 중 장학금 및 학비 지원(감면), 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 등 교육급여와 유사한 사업은 사회보장사업
  ※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원은 사회보장사업이 아니며, 사교육비(학원비 등) 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060(문화 및 관광) : 문화(061), 관광(062), 체육(063)에 속하는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에 포함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산림복지(휴양시설이용권) 등과 유사한 사업은 사회보장사업
- 070(환경보호) : 생계(활)비용 지원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지원(감면) 사업이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 100(농림해양수산) : 농업·농촌(101), 임업·산촌(102), 해양수산·어촌(103)에 속하는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농가도우미사업(농림부-농협)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관광부)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 120(수송 및 교통)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이동수단 제공이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 140(국토 및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142) 영역에 속하는 사업 중 주거급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주택현물 제공, 집수리 사업,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이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2. 예산의 조직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조직별 분류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 식품의약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사회보장사업에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이외의 업무 담당부서의 사업

○ 사업별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며,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제시한 원칙과 동일한 관점에서 판단함

- 재난방재, 재해구호 : 화재 등 인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구호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
- 교육 : 교육사업 중 장학금 및 학비 지원(감면), 학교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
- 문화, 관광, 체육 : 통합문화이용권(문화관광부), 스포츠바우처(문화관광부), 산림복지사업(산림청) 등의 사업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
- 환경보호 : 생계(활) 비용 지원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지원(감면), 쓰레기 처리 요금 지원(감면) 사업 등
-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농·임·수산업 종사자(개인 또는 가구)에 대한 지원 중에서 농가도우미사업(농림부, 농협), 통합문화이용권(문화관광부), 여성농어업인바우처사업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
- 교통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이동수단 제공 등
- 주거(주택)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주택현물 제공, 집수리 사업,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이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3.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상의 사회보장사업 조사 기준

□ 사업의 수혜자(대상자)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사업 여부를 판단

○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개인과 단체의 2가지로 구분 가능

- 개인이란 소득, 가구구성 등의 객관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급여의 수급단위는 개인과 가구가 대표적임

-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단체, 조직, 법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업의 지원 대상이 개인이 아닌 경우를 의미함

○ 사업에 따라서는 지원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 경우도 있음

□ 직접 사업 : 지원 대상이 개인인 경우

○ 사업 지원대상의 성격 판단

- 전통적 복지사업 개념에서의 정책대상자 및 보훈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 전통적 복지사업의 정책대상 : 빈곤·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등), 사회적 약자(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 보훈대상 : 국가·참전·독립 유공자, 무공수훈자, 의·사상자, 전몰군경 등의 본인과 유족
- 저출산, 인구고령화, 장기실업 등 사회적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 새로운 복지정책의 대상자 : 임산부, 고령자,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기)실업자, 자활대상자 등

○ 사업의 지원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의 목적을 판단

- 사업 목적이 출산·보육, 교육, 고용, 돌봄, 의료·보건, 소득·생계지원, 주거지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 사업 목적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 간접 사업 : 지원 대상이 단체인 경우

○ 사업 지원대상인 단체의 유형과 지원금의 사용목적을 확인

- 단체의 유형은 법정 단체와 비법정 단체로 구분함

○ 법정 단체

- 법정 단체란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관·단체를 의미하며
  - 법정 단체 여부는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에 근거
- 지원금이 법정 단체의 경상운영비, 법령에서 정한 고유사업을 위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 비법정 단체

- 사업의 지원대상인 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비법정 단체인 경우에 지원금의 사용목적을 판단하여 결정
- 비법정 단체에 지원금의 목적이 출산·보육, 교육, 고용, 돌봄, 의료·보건, 소득·생계지원, 주거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 사업의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

○ 사업의 지원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 경우란 행사, 워크숍, 회의, 기반시설 구축, 시설물 설치 지원 등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관련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간접사업에 포함됨

○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사회보장의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을 기준으로 해당사업을 개별적으로 판단

- 사회보장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

○ 사회보장 관련 행사의 포함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사회보장제도간의 정합성 유지 및 급여의 중복·누락·편중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시행
- 사회보장 관련 일회성 행사를 협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해당 행사의 대상자와 목적을 확인하여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여부를 판단

- 행사의 참여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는지 확인
- 행사 참여자에게 출산·보육, 교육, 고용, 돌봄, 의료·보건, 소득·생계지원, 주거지원 등을 위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 위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사업에 포함

제3절 자료 입력과 처리

1.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판단과 입력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이란 해당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기획, 집행을 하는 사업을 의미

– 시·도가 시·도 예산을 재원으로, 시·군·구가 시·군·구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

○ 국비보조금, 지역특별회계, 중앙정부의 기금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분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분류되며,

○ 시·도 예산과 시·군·구 예산의 매칭(분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 사업으로 분류하여 입력함

□ 자체 사회복지사업의 자료 입력

○ 17개 시·도

– 국비보조금, 지역특별회계, 중앙정부 기금보조금의 항목이 있는 사업은 입력에서 제외

– 예산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사업(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의 자료를 입력

○ 226개 시·군·구

– 국비보조금, 지역특별회계, 중앙정부 기금보조금, 시·도비의 항목이 있는 사업은 입력에서 제외

– 예산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사업(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의 자료를 입력

□ 예산의 편성목, 통계목에 따른 자료 입력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대상은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사업이 핵심이며, 따라서 예산지출 항목의 성질에 따라 자료입력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협의 제외대상 사업의 예산지출 항목은 자료입력에서 제외

<표 2-3-1> 예산의 성질별 분류의 편성목, 통계목에 따른 자료입력 범위

편성목		통계목	포함 여부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 03	불포함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포함
200 물건비			
	201 ~ 207		불포함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01 ~ 02	포함
		03 ~ 03	불포함
		05 ~ 11	포함
	302 ~ 305		불포함
	306 ~ 309		포함
	310 ~ 311		불포함
400 자본지출			
	401 ~ 402		포함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불포함
	404 ~ 407		포함
500 융자 및 출자			
	501 ~ 502		포함
600 보전재원			
	601 ~ 602		불포함
700 내부거래			
	701 ~ 703		포함
	704 ~ 706		불포함
800 예비비 및 기타			
	801 ~ 802		불포함

※ 편성목, 통계목에 따른 자료입력 여부의 세부사항은 부록2 참고

2. 1차 자료 입력

□ 1차 자료입력 양식 : 엑셀파일을 기준으로 작성

○ 입력 담당자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② ~ ⑬번 항목을 입력하며

○ 입력자료 검증과정에서 ①번 항목은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이 일괄하여 생성

<표 2-3-2> 1차 자료 입력 양식

번호	시도	지자체	부서	세부사업	해당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			예산산출근거		
							2015(A)	2016(B)	변동(B-A)	2015	2016	변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①번 번호는 시도, 시군구, 사업번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사회보장사업 여부 확인 등 데이터 검증 이후에 일괄 부여

- 7자리 숫자의 형식으로 시도번호 2자리, 지자체 번호 3자리, 그리고 사업번호 3자리(필요시 4자리)로 구성
- (예) 01-001-001 : 01(서울), 001(서울 종로구청), 001(사업번호)

○ ②번 시도는 해당 시 또는 도의 명칭을 그대로 문자로 입력

○ ③번 지자체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문자로 입력

- 서울시청, 충남도청, 사하구청, 경산시청, 인제군청 등

○ ④번 부서 항목은 담당부서 또는 조직의 명칭을 '과'단위로 입력

○ ⑤번 세부사업과 ⑥번 내역사업은 예산서의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명칭을 그대로 입력

- 내역사업은 예산서에서 통계목 하단에 기록된 사업 내역을 지칭하며, 본 조

사에서 기본 입력단위는 내역사업임

○ ⑦번 편성목(통계목) 항목은 예산서의 편성목과 통계목을 합하여 5자리 숫자 형식으로 자료를 입력

-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 '301-09'로 입력
-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 '307-02'로 입력

○ ⑧ ~ ⑩번의 예산액

- 2015년 예산과 2016년 예산을 해당년도 예산서 내용을 그대로 숫자로 입력하되, 예산의 단위는 '천원'으로 기준을 통일
- 통계목 이하의 내역사업이 1개인 경우에 2016년 예산서로 입력이 가능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 1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1개 사업으로 입력
  -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그리고 증감 항목 모두 2016년 예산서로 확인이 가능함

<표 2-3-3> 1개 단위사업 예산서 예시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7 민간이전	338,976	338,000	976
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급식(정액)	338,976 338,976	338,000	976

- 통계목 이하의 내역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 2016년과 2015년 예산서를 모두 확인하여 자료를 입력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세부사업(시설입소아동지원)이 5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5개 사업으로 입력(5줄로 입력됨)
  - 2015년과 2016년의 예산서에서 해당 단위사업별로 예산액을 확인하고 변동증감을 계산하여 정리

<표 2-3-4> 2개 이상 단위사업 예산서 예시

항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변동증감
시설입소아동 지원	95,000	86,000	9,000
301 일반보상금	95,000	86,000	9,0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95,000	86,000	9,000
○어려운아동 간식비	19,000		
○어려운아동 학원비 등 지원	28,00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00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비	13,000		
○시설아동 대학등록금지원	15,000		

- 예산서의 내용이 위의 표와 같은 경우에 아래와 같이 5개 내역사업으로 정리하고, 2015년 예산서의 내용과 대조하여 자료를 입력

어려운아동 간식비	301-01	95,000	95,000	0
어려운아동 학원비 등 지원	301-01	15,000	19,000	4,00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01-01	28,000	28,000	0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비	301-01	13,000	13,000	0
시설아동 대학등록금지원	301-01	10,000	15,000	5,000

○ ⑪ ~ ⑬번의 예산산출근거는 아래 예산서에서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함

<표 2-3-5> 예산서 내의 예산산출근거

301 일반보상금	24,000	36,000	△12,000
02 장학금및학자금	24,000	36,000	△12,000
○ 이통장 자녀장학금(고등학생)			
1,200,000원*20명	24,000		

- 예산산출근거는 단가, 수량 등의 내용 →'1,200천원, 20명'의 문자로 입력
- 2015년과 2016년의 예산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2015년 예산서를 확인하여 예산산출근거를 빠짐없이 입력

- ⑬ 예산산출근거 변동은 '유(변동이 있는 경우)'와 '무(변동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입력

3. 지방자치단체 통보 및 확인

□ 1차 입력 자료에 대한 판단(1절, 4절 내용 참고)

○ 1차로 입력한 사업의 목록과 내용을 근거로 사회보장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대상 사업을 확정

○ 2015년과 2016년의 예산액을 근거로 사업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신설 사업과 증액 사업을 확인

○ 신설 및 증액 사업이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사회보장사업 여부, 해당 사업의 변동, 신설·변경 협의 대상의 3가지 판단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업목록을 선정

□ 판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내용을 확인

○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내용은 '사업 목록 및 예산'과 '사업 정보'로 구분

- 사업 목록과 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근거로 1차 입력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 사업 정보는 미협의 사업의 판단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확인과 의견 수렴은 <표 2-3-6>과 <표 2-3-7>을 참고

□ 사업 목록과 예산 확인

○ 사업의 목록과 예산(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내용은 사업명, 편성목, 예산액 등의 내용으로 구성

○ <표 2-3-6>에서 ①사업번호, ②담당부서, ③세부사업명, ④편성목, ⑤내역(사업명)의 5개 항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⑥예산액(천원) 항목은 확인하여 반드시 오류를 수정하도록 함

- 특히 2015년 예산액이 '0'원인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 양식에서 숫자를 정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예산액은 2015년과 2016년의 최종예산(추가경정예산)이 아닌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함

<표 2-3-6> 지방자치단체 통보 양식 : 사업 목록 및 예산

①사업번호	②부서	③세부사업명	④편성목	⑤내역(사업명)	⑥예산(천원)		
					15년	16년	증감
00-000	AA과	장제비 지원	307-05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7,000	7,500	500
00-000	BB과	노인 사회참여 지원	307-02	노인 일자리	11,000	12,000	1,000
00-000	BB과	청소년활동지원	307-11	청소년활동프로그램	0	3,600	3,600
00-000	DD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301-01	위기가정 지원	0	50,000	50,000
00-000	FF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401-01	가스안전차단기보급	0	5,000	5,000

□ 사업 정보

○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해당 사업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청

- <표 2-3-7>의 ⑦ ~ ⑫ 항목

<표 2-3-7> 지방자치단체 통보 양식 : 사업 정보 입력

⑦예산변경 사유	⑧대상자 선정기준		⑨지원내역		⑩제공기관	⑪협의여부		⑫담당자	
	15년	16년	15년	16년			협의일자	성명	연락처

○ ⑦예산변경 사유

-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 신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또는 감소, 물가상승률(최저생계비) 인상 반영, 지원대상자 수 증감 등

○ ⑧지원대상 : 대상자의 선정기준, 대상자 규모 등과 관련하여 2015~2016년 기간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

-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 대상자 규모 : 000명/00개소

○ ⑨지원내역 : 지원유형, 지원수준 등 2015~2016년 변경내용 작성

- 지원유형 : 현금, 현물, 서비스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지원수준 : 연간/월간 지원 횟수, 지원금액, 연령별 수준 등

○ ⑩제공기관 : 해당 사업의 집행 또는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

○ ⑪협의여부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와 협의 여부(협의완료, 협의중, 미협의 중 1개 선택)와 협의 일자(협의완료: 완료일자 / 협의중: 협의 신청일자) 기재

○ ⑫담당자 :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4. 지방자치단체 확인과 추가 입력

□ 추가 입력의 역할 분담

○ ㉮~㉲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입력 내용을 참고하여 공동연구자가 입력

○ 연구책임자는 ㉮~㉲의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항목을 판단하여 결정

□ 공동연구자의 입력 항목

○ ㉮ 항목(사업의 신설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여 수정한 2015년과 2016년 예산액을 근거로 2015년 예산액이 '0'원인 경우 신설사업으로 입력

○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항목

–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의 2015년과 2016년 내용을 대조하여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항목을 입력

<표 2-3-8> 추가 입력 양식

변동 확인			판단	
신설 여부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협의 여부	미협의 사업
㉮	㉯	㉰	㉱	㉲

○ ㉱(협의 여부) 항목

– 지방자치단체가 입력한 내용과 2015년과 2016년 상반기의 신설·변경 협의 안건 목록을 대조하여 협의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

○ ㉲(미협의 사업) 항목

– 연구책임자가 ㉮~㉱의 항목의 입력 내용을 점검하여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신설·변경 협의 여부를 판단하여 미협의 사업을 확정하여 입력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판단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분석

□ 사업의 변동은 예산액 변동을 기준으로 판단

○ 해당 사업의 변동 여부는 2015년과 2016년 예산액을 비교하여 구분

– 사업 예산 변동의 항목은 '동결', '증액', '감액', '신설'의 4가지로 유형화

○ 예산 변동의 값이 '0'인 경우 ⇒ **동결**

○ 예산 변동의 값이 마이너스(음수)인 경우 ⇒ **감액**

○ 예산 변동 값이 플러스(양수)이면서, 2015년 예산액이 0이 아닌 경우 ⇒ **증액**

○ 예산 변동 값이 플러스(양수)이면서, 2015년 예산액이 0인 경우 ⇒ **신설**

□ 사회보장사업의 협의 대상으로서 신설 및 변경의 판단

○ 협의 대상으로서 신설은 사업 변동의 결과가 신설로 판단된 경우

○ 협의 대상으로서 변경은 사업 변동의 결과가 증액으로 판단된 경우

– 증액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인과 의견 수렴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2. 신설변경 협의대상 여부의 판단

□ 협의대상의 판단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이 신설·변경 협의대상 인지 판단은 신설·변경 협의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지침의 내용에 근거하여 협의 제외대상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협의 제외대상이 아닌 사업을 협의대상으로 판단

– 협의 제외대상은 '자연증가', '폐지', '급여무관', '행사', '시설지원', '재원분담' 그리고 '기타' 등의 유형으로 구분

□ 협의 제외대상 유형 1 : 자연증가

○ (지원)대상자 및 급여 등의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으나, 이러한 변화가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상자 규모 또는 예산액의 자연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항목이 반영되어 대상자 규모, 급여 수준, 예산 등의 변화

○ 복지로 등을 활용한 해당 사업의 정보의 파악, 예산 변동의 이유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

□ 협의 제외대상 유형 2 : 폐지

○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협의 제외대상 유형 3 : 급여무관

○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의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조직의 개편, 부서 및 기관 운영, 직접 고용 인력의 인건비, 시설·장비 구입비, 재료비(보건소 약제비 등 포함)는 협의대상에서 제외

- 예) 복지부서 개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정),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등

□ 협의 제외대상 유형 4 : 행사

○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과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관련 행사, 일회성 성격의 교육·훈련, 설명회, 공청회 등

-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노인의날 행사, 호국보훈 추모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 및 여성대회,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및 축하공연 등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교육 등은 협의대상에서 제외

○ 민간재원, 기부금, 포상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단년도 시행하는 사업은 행사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협의대상에서 제외

○ 반면에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이 있는 행사는 협의대상에 포함

– 예) 재가장애인 합동결혼식, 무연고자 마을공동장례 지원 등

□ 협의 제외대상 유형 5 : 시설지원

○ 사회보장 관련 법령[1]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협의대상에서 제외

– 사회보장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단체를 의미

– 법률 근거가 없는 시설·기관·단체 등의 개폐와 운영 지원은 협의 대상

–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제한하며, 다만, 법령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과 조례는 법령에 포함

---

1)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란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을 의미함

○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구강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 지원

-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관·단체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지원
- 해당 시설, 단체, 기관의 고유업무[2]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시설·기관·단체 등의 고유업무 이외에 복지사업 위탁과 사업비 지원은 협의대상에 포함됨

□ 협의 제외대상 유형 6 : 재원분담

○ 사회보장제도의 변경 중 자치단체들의 재원분담(비율) 변경은 신설·변경 협의대상에서 제외

-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예산분담 변경,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예산분담 변경 등은 협의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육자치단체(교육청)로 재정을 이전하는 사업(308-08)은 신설·변경 협의의 주체가 교육자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협의 제외대상 유형 7 : 기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닌 전액 민간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

○ 사회보장사업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이·통장(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고등학생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 유공자 표창, 재해복구용 기계톱 구입, 마을회관 목욕시설 설치, 자연재해 대응 구조훈련, 귀농자 농가주택수리,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농촌주민 컴퓨터 교육, 마을 공동구역 청소용 쓰레기봉투 지원 등

---

2) 해당 기관의 고유사업 사례 :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
○ 사회복지관의 고유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및 동 별표 3에 규정하고 있는 복지사업(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의미함
○ 사회복지관의 고유사업을 제외한 복지사업을 위탁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조정 대상임

제 3 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제1절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제2절 시·도별 현황 및 조사 결과
제3절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에 대한 분석

3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제1절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현황

□ 지방자치단체 사업보장사업

○ 2016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은 총 48,895개이며, 예산은 81,878억원으로 나타남

- 예산규모는 서울특별시가 33,387억원(5,527개)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9,947억원(7,391개) 규모임
- 자체 사회보장예산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은 세종특별자치시로 464억원(210개) 이며, 광주광역시 1,285억원(878개), 제주특별자치도 1,429억원(892개), 울산광역시 1,595억원(1,147개)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사업 예산은 2015년 69,688억원에서 2016년 81,878억원으로 증가율은 17.5%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예산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설 사업은 포함된 반면에 폐지 사업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
-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은 2015년 64,517억원에서 2016년 66,344억원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은 2.8%에 그쳤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5년, 2016년)

○ 전체 사업의 46.7%인 22,810개 사업이 전년도와 예산액이 동일한 동결사업이며, 14.8%인 7,243개 사업은 예산액이 감소함.

○ 반면에 9,316개(19.1%)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가한 증액사업이며,

9,526개(19.5%) 사업은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3-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2016년 본예산 기준)

(단위: 개, 억원)

시도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서울	5,527	33,387	1,392	3,698	1,219	16,508	1,982	1,285	934	11,896
부산	1,525	4,784	328	336	313	2,265	674	1,448	210	735
대구	1,352	3,042	246	195	321	1,432	655	394	130	1,021
인천	1,615	3,634	534	597	265	1,048	577	353	239	1,637
광주	878	1,285	166	101	164	738	445	278	103	168
대전	841	1,920	106	217	182	736	454	533	99	435
울산	1,147	1,595	167	113	271	651	568	671	141	160
세종	210	464	25	27	59	164	86	43	40	230
경기	7,391	9,947	1,618	2,073	1,794	4,506	2,968	1,579	1,011	1,789
강원	4,063	2,720	756	402	741	1,155	1,873	569	693	594
충북	2,249	1,903	362	166	450	813	1,054	368	377	555
충남	2,974	2,748	663	521	469	1,078	1,497	706	345	444
전북	3,025	2,972	651	241	548	937	1,313	699	513	1,095
전남	5,056	2,466	1,015	318	669	793	2,532	876	840	479
경북	5,395	3,736	780	424	852	928	2,922	870	841	1,514
경남	4,755	3,844	545	525	707	1,479	2,856	1,066	647	773
제주	892	1,429	166	276	292	745	354	211	80	197
합계	48,895	81,878	9,526	10,229	9,316	35,979	22,810	11,949	7,243	23,721

2.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의 조사 결과

□ 미협의 사업의 시·도별 현황

○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조사·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434개 사업을 미협의 사업으로 확정

○ 예산액을 기준으로 파악한 사업 변동과 사업 내용을 근거로 3,163개의 협의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요청

- 8개 특별·광역시는 925개(6,313억 원), 9개 도는 2,238개(4,732억 원) 등 총 3,163개(1조 1,044억 원) 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사업정보의 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 조사 및 확인 결과 434개 사업(931억)을 미협의 사업으로 확정

- 경기가 76개로 미협의 사업이 가장 많고 충남(55개), 강원(47개), 서울(36개), 전남(41개) 등이 상대적으로 미협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세종(3개), 대전(5개), 광주(6개), 울산(8개), 전북(10개) 등이 미협의 사업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1-2> 협의대상 사업 및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의 시·도별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시도	협의대상 사업(지자체 확인)		미협의 사업(확정)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서울	361	432,330	36	10,751
부산	127	52,712	19	11,536
대구	114	66,656	24	3,551
인천	133	24,333	12	1,448
광주	49	6,293	6	236
대전	64	26,636	5	297
울산	62	15,834	8	3,449
세종	15	6,466	3	50
경기	607	170,396	76	27,325
강원	212	52,256	47	12,024
충북	137	18,489	18	1,262
충남	307	44,951	55	6,731
전북	150	34,044	10	575
전남	231	30,360	41	4,363
경북	235	23,985	33	2,074
경남	228	74,058	25	3,159
제주	131	24,615	16	4,262
합계	3,163	1,104,566	434	93,093

□ 미협의 사업의 자치단체별 현황

○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67개 자치단체에 미협의 사업이 있음

- 광역 16개, 기초 151개(시 57, 군 60, 구 34) 자치단체에 미협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반면에 광역 1개(전북), 기초 75개(시 18, 군 22, 구 35) 자치단체는 미협의 사업이 없음

○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평균 1.8개의 미협의 사업이 있으며,

- 미협의 사업이 있는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2.6개의 미협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미협의 사업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시·경기도·제주도(16개)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충남 부여시(10개), 충남 보령시(8개), 서울 은평구(6개), 전남 장흥군 및 경남 함양군(6개)의 순으로 나타남

제2절 시·도별 현황 및 조사 결과

1. 서울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서울 지역의 2016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회보장 사업 수는 5,527개이며, 예산은 3조 3천억 원으로 2015년의 2조 9천억 원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 지역별로는 서울시청이 1,085개(약 19.6%), 종로구가 135개(약 2.4%), 중구가 161개(약 2.9%), 용산구가 124개(약 2.2%), 성동구가 151개(약 2.7%), 광진구가 180개(약 3.3%), 동대문구가 146개(약 2.6%), 중랑구가 120개(약 2.2%), 성북구가 174개(약 3.1%), 강북구가 207개(약 3.7%), 도봉구가 170개(약 3.1%), 노원구가 243개(약 4.4%), 은평구가 206개(약 3.7%), 서대문구가 182개(약 3.3%), 마포구가 171개(약 3.1%), 양천구가 189개(약 3.4%), 강서구가 129개(약 2.3%), 구로구가 172개(약 3.1%), 금천구가 110개(약 2.0%), 영등포구가 187개(약 3.4%), 동작구가 164개(약 3.0%), 관악구가 137개(약 2.5%), 서초구가 197개(약 3.6%), 강남구가 431개(약 7.8%), 송파구가 194개(약 3.5%), 강동구가 162개(약 2.9%)로 나타났음.
- 자체사업 예산을 자치단체별로 구분하면 서울시청은 3조 3백만 원으로 전체 광역시 예산의 약 90.9%를 차지하며, 반면에 자치구는 1% 미만에 불과.

○ 사업 변동은 신설 사업이 1,392개, 증액 사업이 1,219개, 동결 사업이 1,982개, 감액 사업이 934개로 나타나 동결사업이 가장 많았고, 신설, 증액, 감액사업 순서로 사업 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신설 사업 수는 서울시청(400개), 강남구(108개), 은평구(80개) 순으로 많았으며, 증액 사업 수는 서울시청(349개), 강남구(97개), 은평구(52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신설 사업 예산액은 서울시청(3,199억원), 송파구(71억4천만원), 용산구(47억3천만원) 순으로 많았으며, 증액 사업 예산액은 서울시청(1조5천억원),

강남구(151억7천만원), 서초구(130억4천만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서울)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시청	1,085	3,034,078	400	319,919	349	1,530,438	166	59,402	170	1,124,319
종로	135	8,474	23	350	25	4,916	67	1,940	20	1,268
중구	161	14,969	40	2,549	24	6,977	72	2,075	25	3,368
용산	124	9,482	33	4,735	22	1,781	44	858	25	2,108
성동	151	8,209	22	610	21	1,734	56	1,917	52	3,949
광진	180	7,069	53	612	34	2,055	70	1,784	23	2,617
동대문	146	9,003	20	2,404	16	3,179	78	1,797	32	1,622
중랑	120	9,629	10	284	31	3,389	57	3,180	22	2,776
성북	174	9,007	37	1,080	34	3,640	79	2,946	24	1,343
강북	207	8,307	46	714	48	4,551	78	1,934	35	1,109
도봉	170	10,594	29	2,137	40	5,857	82	1,348	19	1,252
노원	243	15,597	38	2,001	31	4,603	147	5,551	27	3,442
은평	206	11,614	80	2,737	52	5,444	43	1,744	31	1,688
서대문	182	10,739	41	1,292	35	5,663	78	1,052	28	2,731
마포	171	15,955	36	1,785	33	4,299	73	6,113	29	3,757
양천	189	13,216	48	3,394	36	3,326	76	4,946	29	1,550
강서	129	8,722	15	366	30	3,705	61	3,547	23	1,104
구로	172	8,111	30	1,157	35	3,288	77	1,622	30	2,045
금천	110	5,827	24	3,105	23	561	51	1,755	12	405
영등포	187	14,080	34	3,089	46	5,764	87	2,752	20	2,475
동작	164	11,217	43	727	44	6,289	57	1,694	20	2,508
관악	137	12,138	26	270	19	5,633	66	2,303	26	3,931
서초	197	22,273	51	2,995	32	13,047	52	1,822	62	4,408
강남	431	33,984	108	3,410	97	15,174	131	6,050	95	9,350
송파	194	18,500	64	7,149	32	3,749	68	3,954	30	3,648
강동	162	7,917	41	923	30	1,753	66	4,448	25	793
합계	5,527	3,338,711	1,392	369,794	1,219	1,650,815	1,982	128,534	934	1,189,566

나. 미협의 사업

○ 예산 증감을 통해 '신설 및 증액'으로 파악된 사회보장사업 2,611개 중, 협의 대상으로 채택된 사업은 361개이며, 예산 규모는 4,323억 원 수준.

○ 협의 대상으로 검토 요청한 사업은 사업 수를 기준으로 서울시청이 123개로 가장 많았고, 예산 규모 면에서도 서울시청이 약 4,092억 원으로 가장 많았음.

〈표 3-2-2〉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서울)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시청	123	409,153	962	2,624,925	4	8,430
종로	8	663	127	7,811	2	421
중구	6	213	155	14,756	0	0
용산	2	7	122	9,475	0	0
성동	10	314	141	7,895	1	5
광진	12	388	168	6,681	2	7
동대문구	2	62	144	8,941	1	13
중랑	4	86	116	9,543	0	0
성북	9	280	165	8,727	4	43
강북	12	1,490	195	6,817	4	95
도봉	6	1,184	164	9,410	1	37
노원	14	2,085	229	13,512	2	558
은평	21	2,640	185	8,974	6	565
서대문구	8	2,054	174	8,685	1	4
마포	7	327	164	15,627	1	10
양천	13	673	176	12,543	2	277
강서	3	129	126	8,593	0	0
구로	3	113	169	7,999	0	0
금천	5	578	105	5,249	1	56
영등포구	9	797	178	13,283	0	0
동작	9	415	155	10,802	2	179
관악	14	4,658	123	7,480	1	11
서초	13	455	184	21,818	0	0
강남	31	2,911	400	31,073	0	0
송파	5	118	189	18,382	0	0
강동	12	537	150	7,380	1	40
전체	361	432,330	5,166	2,906,381	36	10,751

○ 미협의 사업은 총 36개로 사업 규모는 108억 원 수준임. 지역별 미협의 사업 수는 평균 1.38개로 나타났으며 은평구가 6개로 가장 많았음. 예산 규모 면에서 서울시청이 8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평구(5.6억), 노원구(5.5억) 순으로 많았음.

○ 미협의 사업은 복지관련 사업 담당과가 32개로 일자리(3개), 주택(1개)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3〉 미협의 사업 목록(서울)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노숙인자활프로그램운영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비(보조)	307-05	신설 사업
2	어르신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308-01	신설 사업
3	저소득층주택임대료보조지급	월세임대료보조지급	301-01	지원 금액 인상
4	시민생애주기별 비만예방사업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추진	308-01	신설 사업
5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301-11	신설 사업
6	장애인 일자리 사업	효사랑안마서비스 사업	307-05	인건비 증액
7	저소득층 현역병 휴가지원	저소득층 현역병 휴가지원금	301-01	신설 사업
8	장애인 특별지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301-01	신설 사업
9	입양 축하금 지원 사업	입양 축하금	301-11	신설 사업
10	일반노인복지지원	독거노인 집수리 사업	307-11	신설 사업
11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307-05	신설 사업
12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친환경 쌀 등 급식지원	307-05	신설 사업
13	시각장애인 효 안마사업	시각장애인 효 안마사업	307-11	신설 사업
14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어르신가정 안전바 설치	307-11	신설 사업
1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복지사각 취약계층 건강음료 배달사업	301-01	신설 사업
1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	단태아	307-05	신설 사업
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	쌍생아	307-05	신설 사업
18	저소득층 전문기술인력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인건비 등	101-04	신설 사업
19	자활참여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참여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급	307-11	신설 사업
20	출산장려	출산축하금 지원	301-01	지원단가 인상
21	발달장애인과 여행돌봄	엄마,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가요!	307-11	신설 사업
22	출산지원 사업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301-01	지원대상 확대
23	안심주택 운영	안심주택 개보수비	401-01	신설 사업
24	안심주택 운영	안심주택 가구 및 집기류 구입	405-01	신설 사업
25	함께하는 세상조성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307-11	지원대상 확대
26	독거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독거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301-01	신설 사업
27	'다둥이 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다둥이 가정 산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307-01	신설 사업
28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가정지원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301-01	신설 사업
29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철분제, 엽산제 구매	307-01	신설 사업
30	어르신 자서전 제작	자서전 만들기 사업 지원	307-02	신설 사업
31	보육료 차액지원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307-10	신설 사업
32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	차상위복지대상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301-01	지원대상 확대
33	독거어르신 반려식물 보급	독거어르신 반려식물 보급	301-01	신설 사업
34	어린이집 운영 지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307-11	신설 사업
35	가스지키미설치지원	가스지키미설치	401-01	신설 사업
36	장애인직업학교 운영	장애인직업학교 운영	307-11	신설 사업

2. 부산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부산광역시 자체 복지사업은 총 1,525개, 478,429백만원(2016년 기준)으로 전년도 418,913백만 원에 비해 59,516백만 원 증가

- 본청의 사업수가 36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기장군 115개, 해운대구 100개. 이에 비해 북구는 40개로 가장 적은 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예산 기준으로 보면, 본청이 435,194백만 원으로 부산광역시 자체사업 총 예산의 91%를 차지했고, 이어 기장군 3.6%(17,319백만 원), 해운대구 1%(3,204백만 원)순으로 나타남.

〈표 3-2-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부산)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시청	369	435,194	74	24,325	112	208,091	102	132,885	81	69,892
중구	65	1,252	14	295	12	214	32	598	7	145
서구	46	720	12	219	7	299	19	116	8	85
동구	65	1,495	9	678	13	270	33	408	10	138
영도구	49	775	5	95	8	236	29	318	7	127
부산진구	83	2,578	14	265	15	653	40	1,186	14	475
동래구	58	896	19	214	4	31	32	644	3	7
남구	72	2,271	24	1,090	11	575	34	387	3	219
북구	40	1,247	9	150	6	558	21	339	4	200
해운대구	100	3,204	25	618	27	1,895	40	503	8	188
사하구	59	2,424	15	1,049	6	269	35	632	3	473
금정구	66	1,060	16	292	7	182	35	522	8	63
강서구	82	2,716	16	568	16	1,033	41	789	9	326
연제구	71	1,316	13	87	3	97	49	600	6	533
수영구	95	1,915	15	201	17	861	46	704	17	148
사상구	90	2,049	29	293	16	1,234	32	455	13	68
기장군	115	17,319	19	3,175	33	10,040	54	3,738	9	366
전체	1,525	478,429	328	33,615	313	226,537	674	144,824	210	73,453

○ 2015년, 2016년의 예산을 기준으로 자체사업의 변동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2016년도에 신설된 사업은 총 328개, 33,615백만 원, 2015년에 비해 증액된 사업은 총 313개, 226,537백만 원, 전년도에 비해 동결된 사업은 총 674개, 144,824백만 원, 감액된 사업은 총 210개, 73,453백만 원
- 동결, 신설, 증액, 감액사업 순으로 사업 수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됨.
- 신설 사업과 증액 사업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청으로 각각 74개(22.6%), 24,325백만 원, 112개(35.8%), 208,091백만 원.
- 신설 사업이 가장 적은 지역은 영도구 5개(1.5%), 95백만 원, 증액 사업이 가장 적은 지역은 연제구 3개(1.0%), 97백만 원.

나. 미협의 사업

□ 미협의 사업 현황

○ 신설 또는 증액사업으로서 협의대상에 해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요청한 사업은 총 127개 사업, 52,712백만 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참고하고, 신설·변경 협의 안건의 접수목록과 대조하여 미협의 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총 19개, 11,536백만 원

- 미협의 사업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면 부산광역시가 6개 사업 10,181백만 원으로 사업 수와 예산 규모가 크고,
- 자치구의 경우는 영도구 1개(4.5백만 원), 부산진구 1개(10백만 원), 해운대구 2개(45백만 원), 수영구 1개(9백만 원), 사상구 3개(283백만 원), 기장군 5개(1,003백만 원) 사업으로 확인됨

〈표 3-2-5〉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부산)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시청	38	45,553	331	389,641	6	10,181
중구	2	25	63	1,227	0	0
서구	3	49	43	671	0	0
동구	2	146	63	1,348	0	0
영도구	3	44	46	731	1	4.5
부산진구	4	158	79	2,421	1	10
동래구	4	37	54	859	0	0
남구	9	595	63	1,676	0	0
북구	2	122	38	1,125	0	0
해운대구	14	402	86	2,801	2	45
사하구	5	263	54	2,161	0	0
금정구	2	14	64	1,046	0	0
강서구	8	608	74	2,108	0	0
연제구	3	71	68	1,245	0	0
수영구	3	99	92	1,816	1	9
사상구	8	548	82	1,501	3	283
기장군	17	3,978	98	13,341	5	1,003
전체	127	52,712	1,398	425,717	19	11,536

□ 미협의 사업의 특성

○ 사업의 지원 대상을 9개 영역(저소득·취약계층, 영유아·아동·청소년, 노인, 임신·출산모, 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가족·다문화, 일반, 기타)별로 분류하여 사회서비스(평생사회안전망) 제도를 살펴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 사업(5개, 26.3%), 여성·가족·다문화 대상 사업과 노인 대상 사업이(3개, 15.8%)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미협의 19개 사업은 급식, 보건, 장례, 안전, 교육, 고용·일자리, 출산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미협의 사업은 복지업무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등)의 사업이 7개로 보건(1개),

보건소(4개) 등 타 업무부서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복지, 보건업무 담당부서 외에 행정지원과, 경제진흥과, 문화교육홍보과 등 기타 업무부서 또한 교육, 고용 등의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신설·변경 의미에 대한 지침 기준에 따라 협의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사유를 살펴본 결과, 2016년 이전에 시행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신설사업(12개)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급여 내용 변경, 급식 단가 변경,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의해 협의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됨.

〈표 3-2-6〉 미협의 사업 목록(부산)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보훈사업 지원(직접)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및 유족)보상	301-01	급여수준 변경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301-01	급여수준 변경
3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평일·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308-01	급식 단가 변경
4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308-01	급식 단가 변경
5	결혼 및 출산장려지원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계정 우수사업 공모 지원	307-02	신설 사업
6	치매예방관리	한방치매관리(특화사업)	308-01	신설 사업
7	무연고 행려사망자 관리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201-01	급여수준 변경
8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	사회적취약계층 권익 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관한사업(공모)	307-02	신설 사업
9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기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	307-11	신설 사업
10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보급사업	401-01	신설 사업
11	독거노인 안전강화사업	독거노인 안전강화사업	307-11	신설 사업
12	국제화센터 운영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301-01	급여수준 변경
13	시니어 재능나르미 운영	시니어 재능나르미 운영	301-11	신설 사업
14	만성폐쇄성 폐질환 재활사업	만성폐쇄성 폐질환 재활사업	307-05	신설 사업
15	주민 진료	산후조리비용 지원	301-01	대상자선정기준변경
16	주민 진료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307-01	신설 사업
17	호스피스 완화케어사업	말기암환자 영양제등 구입	307-01	신설 사업
18	여성단체지원	시설입소자 지원(기금)	307-02	신설 사업
19	저소득층 복지 지원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201-02	신설 사업

3. 대구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대구 지역의 2016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회보장 사업 수는 1,352개이며, 예산은 3,042억 원으로 2015년의 2,625억 원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 509개(약 38%), 중구 97개(약 7.1%), 동구 78개(약 5.7%), 서구 72개(약 5.3%), 남구 71개(약 5.2%), 북구 111개(약 8.2%), 수성구 92개(약 6.8%), 달서구와 달성군이 각각 161개(약 11.9%).
- 자체사업 예산을 시, 군, 구로 나누어 보면, 대구광역시는 2,68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8%를 차지하고, 시군구 중 달성군은 12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1%, 달서구가 약 62억 원으로 약 2%를 차지함.

〈표 3-2-7〉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대구)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시청	509	268,640	84	12,381	143	126,815	232	29,849	50	99,596
중구	97	1,362	20	106	14	417	57	693	6	147
동구	78	2,455	19	386	12	1,367	37	509	10	194
서구	72	4,038	11	107	19	3,407	35	327	7	197
남구	71	1,060	8	35	10	468	50	494	3	63
북구	111	2,856	26	809	24	1,305	53	653	8	88
수성구	92	5,018	10	214	23	1,501	46	2,499	13	803
달서구	161	6,236	24	1,593	38	1,798	81	2,603	18	243
달성군	161	12,508	44	3,852	38	6,111	64	1,733	15	812
전체	1,352	304,173	246	19,483	321	143,189	655	39,360	130	102,143

○ 사업 변동은 신설 사업이 246개, 증액 사업이 321개, 동결 사업이 655개, 감액 사업이 130개로 나타나 동결사업이 가장 많았고, 증액, 신설, 감액 사업 순서로 사업 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신설 사업 수는 대구시청(84개), 달성군(44개), 북구(26개) 순으로 많았으며, 증액 사업 수는 대구시청(143개), 달서구 및 달성군(38개), 북구(24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신설 사업 예산액은 대구시청(123.8억 원), 달성군(38.5억 원), 달서구(15.9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증액 사업 예산액은 대구시청(1,268억 원), 달성군(61.1억 원), 서구(34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나. 미협의 사업

○ 미협의 사업은 총 24개로 예산은 약 36억 수준임. 미협의 사업 수는 평균 2.6개로 나타났으며 대구시가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예산 규모 면에서 대구시(30억 원), 동구(4억 원), 북구(5.9억 원) 순임.

〈표 3-2-8〉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대구)

(단위: 개, 백만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 액	사업 수	예산 액
시청	53	63,975	456	204,655	16	3,075
중구	4	35	93	1,327	0	0
동구	5	744	73	1,711	3	406
서구	8	309	64	3,729	1	0.5
남구	4	158	67	902	0	0
북구	8	313	103	2,543	2	58.5
수성구	11	605	81	4,413	0	0
달서구	10	125	151	6,111	0	0
달성군	11	392	150	12,116	2	11
전체	114	66,656	1,238	237,517	24	3,551

○ 미협의 사업은 복지관련 사업 담당과가 19개로 보건(4개), 위생(1개)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시설퇴소아동에서 2016년 가정위탁아동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노인 의치 사후

관리비 사업의 경우 2016년 6월 국비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자체 자체 사업이 신설되어 협의대상 사업에 포함됨.

〈표 3-2-9〉 미협의 사업 목록(대구)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다문화가족치아돌보미사업	다문화가족치아돌보미사업	308-01	대상자 범위 확대
2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307-02	신설 사업
3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308-01	지원단가 증액
4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지원사업	308-01	신설 사업
5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301-02	대상자 범위 확대
6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308-01	대상자 범위 확대
7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308-01	급여항목 추가신설
8	퇴소아동자립정착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08-01	대상자 범위 확대
9	대학운영 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307-02	신설 사업
10	청소년 교육 지원	대학생 저소득층 학습 멘토지원 사업	307-11	신설 사업
11		학교 밖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307-11	신설 사업
12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 운영	학교밖 청소년 취업 지원	307-11	신설 사업
13		학교밖 청소년 복지지원	307-11	신설 사업
14		학교밖청소년복지지원(구군)	308-01	신설 사업
15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307-02	지원단가 증액
16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지원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지원	308-01	대상자 범위 확대
17	경로우대업소보상	경로우대목욕장보상	301-11	지원단가 증액
18	경로우대목욕료지원	경로우대목욕료지원	301-01	
19	경로우대업소보상	경로우대이.미용업소보상	301-11	
20	구강건강 관리사업	노인 의치 사후관리비	307-01	신설 사업
21	공중위생업소 관리	경로우대목욕장 하수도료 지원	301-11	신설 사업
22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301-11	지원단가 증액
23	안전서비스 사업	안전서비스사업	307-02	신설 사업
24	임산부 출산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307-01	신설 사업

4. 인천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인천 지역의 2016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회보장 사업 수는 1,615개이며, 예산은 3,634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소폭 증가.

- 지역별로 인천시 341개(21.1%), 중구 130개(8.0%), 동구 76개(4.7%), 남구 97개(6.0%), 연수구 161개(10.0%), 남동구 129개(8.0%), 부평구 120개(7.4%). 계양구 117개(7.2%), 서구 135개(8.4%), 강화군 180개(11.1%), 옹진군 129개(8.0%) 이며,
- 예산 규모는 인천시가 2,897억 원으로 전체 광역시 예산의 약 79.7%를 차지하고, 군·구 중 서구는 126억 원으로 전체 광역시 예산의 약 3.5%, 연수구가 약 121억 원으로 약 3.3%를 차지함.

〈표 3-2-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인천)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시청	341	289,781	109	39,627	78	86,169	86	19,299	68	144,686
중구	130	5,485	60	1,610	18	2,192	28	318	24	1,365
동구	76	4,874	17	519	13	1,468	28	548	18	2,339
남구	97	4,146	29	459	16	1,302	40	729	12	1,657
연수구	161	12,146	63	4,869	29	3,916	56	1,651	13	1,709
남동구	129	6,207	36	864	13	1,320	64	2,368	16	1,655
부평구	120	6,620	28	840	24	2,397	49	2,479	19	904
계양구	117	5,005	28	347	27	2,143	55	2,005	7	510
서구	135	12,665	46	6,237	15	2,120	58	896	16	3,412
강화군	180	8,599	78	2,894	24	1,229	55	1,684	23	2,792
옹진군	129	7,912	40	1,399	8	562	58	3,311	23	2,640
전체	1,615	363,440	534	59,665	265	104,818	577	35,288	239	163,669

○ 사업 변동은 신설 사업이 534개, 증액 사업이 265개, 동결 사업이 577개, 감액 사업이 239개로 나타나 동결사업이 가장 많았고, 신설, 증액, 감액사업 순

서로 사업 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신설 사업 수는 인천시청(109개), 강화군(78개), 연수구(63개) 순으로 많았으며, 증액 사업 수는 인천시청(78개), 연수구(29개), 계양구(27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신설 사업 예산액은 인천시청(396억 원), 서구(62억 원), 연수구(49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증액 사업 예산액은 인천시청(862억 원), 연수구(39억 원), 부평구(24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나. 미협의 사업

○ 예산 증감을 통해 '신설 및 증액'으로 파악된 사회보장사업 799개 중, 협의대상으로 채택된 사업은 133개이며, 예산 규모는 243억 원 수준임.

- 협의 대상으로 검토 요청한 사업은 인천시청이 58개로 가장 많았고, 예산 규모 면에서도 인천시청이 약 169억 원으로 가장 많았음.

〈표 3-2-11〉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인천)

(단위: 개, 백만원)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시청	58	16,956	283	272,825	7	1,148
중구	14	1,756	116	3,729	2	18
동구	6	66	70	4,808	0	0
남구	9	375	88	3,771	1	22
연수구	8	1,650	153	10,496	1	220
남동구	4	1,240	125	4,967	1	39
부평구	7	675	113	5,945	0	0
계양구	8	775	109	4,231	0	0
서구	5	413	130	12,252	0	0
강화군	7	176	173	8,423	0	0
옹진군	7	251	122	7,662	0	0
전체	133	24,333	1,482	339,109	12	1,448

○ 미협의 사업은 총 12개로 사업 규모는 14억 수준임. 지역별 미협의 사업수는

평균 0.9개로 나타났으며 인천시청이 7개로 가장 많았음. 예산 규모 면에서 인천시청(11억4천만원), 연수구(22억원), 남동구(3천9백만원) 순으로 높았음.

○ 미협의 사업은 복지관련 사업 담당과가 8개로 건축(2개), 보건(1개), 행정(1개)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또는 서비스가 확대되었을 경우 협의 대상임.

〈표 3-2-12〉 미협의 사업 목록(인천)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아동복지사업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308-01	지원금액 인상
2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301-01	신설 사업
3	장애인단체 활성화	재가장애인 사회적응 훈련사업 지원	307-02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4	장애인단체 활성화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307-02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5	장애인단체 활성화	선천적 발달장애 아동상담 치료사업 사업 지원	307-02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6	장애인단체 활성화	신장장애인 지원사업	307-02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7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	403-02	지원 대상 확대
8	아토피, 천식 예방 사업	아토피천식진단검사,치료비 지원 등	307-01	지원 대상 확대
9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	의치보철 사후관리비	307-01	신설 사업 (국비사업 종료 후)
10	장애인 행사지원	장애인활동강화 사업비지원	307-11	지원 대상 확대
11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자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바우처기금 예탁	307-05	지원 대상 확대
12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시설전기요금 지원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시설전기요금지원	301-01	지원 대상 확대

5. 광주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광주지역의 2016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회보장 사업 수는 878개이며, 예산은 1,285억원으로 2015년의 1,249억원에 비해 조금 증가한 수준임.

- 지역별로 자체 추진한 사회보장 사업수는 광주 본청이 370개(42%)로 전체

중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구 129개(약 15%), 북구 121개(약 14%), 남구 96개(약 11%), 동구 82개(약 9%), 광산구 80개(약 9%)의 순으로 나타남.

- 자체 추진한 사회보장사업 예산은 광주 본청이 1,15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시군구 중에는 서구가 34억원(약 2.7%), 광산구가 26억원(약 2.1%)으로 나타남.

〈표 3-2-13〉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광주)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시청	370	115,800	66	7,696	90	70,024	177	23,439	37	14,641
동구	82	1,980	18	143	15	538	44	1,112	5	186
서구	129	3,481	31	1,455	18	910	71	839	9	278
남구	96	2,171	17	191	8	634	47	546	24	800
북구	121	2,443	22	253	20	795	70	1,215	9	180
광산구	80	2,656	12	328	13	904	36	677	19	747
전체	878	128,531	166	10,066	164	73,804	445	27,828	103	16,832

○ 광주지역의 2015년과 2016년의 예산 변경을 통해 본 사업 변동은 신설 사업이 166개, 증액 사업이 164개, 동결 사업이 445개, 감액 사업이 103개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예산 동결 사업수가 약 51%, 이외 신설 및 증액 사업이 약 37%, 감액 사업이 약 12%인 것으로 나타남.

- 광주 본청의 경우 자체사업 예산 중 증액사업이 약 60%(700억원), 동결사업이 약 20%(234억원), 감액사업이 약 13%(146억원), 신설사업이 약 7%(76억원)로 증액사업의 예산 비중이 가장 컸음.
- 구군은 서구의 경우 자체사업 중 신설 사업 예산이 약 42%(14억원)로 비중이 컸고, 광산구도 증액 사업 예산이 34%(9억원)로 비교적 비중이 컸음.

나. 미협의 사업

○ 사회보장사업 중 49개 사업(사업예산 약 63억원 규모)을 협의대상 사업으로 지자체에 송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음.

- 지역별로 보면, 광주 본청의 협의대상 사업 수는 19개(38%), 예산은 약 50억원(80%)으로 전체 협의대상 사업예산의 2/3 이상을 차지함.
- 구군 사업 중 협의대상 사업 수는 30개(약 60% 이상)로 많더라도 해당 예산액은 20%에 미치지 못함.

〈표 3-2-14〉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광주)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시청	19	5,077	351	110,723	2	109
동구	7	71	75	1,908	1	9
서구	9	729	120	2,753	2	18
남구	3	127	93	2,044	0	0
북구	5	55	116	2,387	0	0
광산구	6	234	74	2,423	1	100
전체	49	6,293	829	122,237	6	236

○ 미협의 사업은 총 6개로 사업 규모는 2억 3천만원 수준임. 광주본청이 2개 사업(약 1억원), 동구 1개 사업(9백 만원), 서구 2개 사업(1천 8백만원), 광산구 1개 사업(1억원)을 포함함.

○ 미협의 사업은 사업 대상별로 아동, 청소년, 저소득, 다문화가족 등 으로 나타났고, 사업 내용은 청소년 진로지도, 수학여행 경비 지원, 장사사업, 가족지원, 가스 안전 사업 등 임. 미협의 사유는 사업의 신규 추진(4개), 지원 금액 변경(1개), 사업 확대(1개)로 나타남.

〈표 3-2-15〉 미협의 사업 목록(광주)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지원(자체)	꿈을 만드는 청소년 잡-스케치(시민참여예산)	308-01	신설 사업
2	아동복지업무추진(직접)	요보호아동수학여행경비	308-01	지원 금액 변경
3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	저소득층공영장례서비스지원	301-01	신설 사업
4	다문화가족행복정착프로그램	다문화가족행복정착프로그램	307-11	신설 사업
5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장애인대상 프로그램 지원사업	307-02	신설 사업
6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보급사업	401-01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6. 대전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대전광역시 2016년도 자체 예산으로 기획, 집행한 사업은 총 841개, 192,029백만원(2016년 기준)으로 전년도 180,375백만원에 비해 11,654백만원 증가

- 사업 수로 보면, 자체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 시청(364개)으로 대전광역시 전체 자체 복지사업의 4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서구 110개, 중구 105개 순이었음. 이에 비해 동구는 74개로 사업이 가장 적음.
- 예산 기준으로 보면, 시청이 172,588백만원으로 대전광역시 자체 복지사업 총 예산의 90%를 차지해 시 예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시청에 이어 동구 3.4%(6,478백만원), 중구 3.0%(5,699백만원)순

〈표 3-2-16〉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대전)

(단위: 개, 백만 원)

예산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시청	364	172,588	32	19,522	90	70,503	195	49,861	47	32,701
동구	74	6,478	4	90	16	217	45	652	9	5,520
중구	105	5,699	9	43	23	641	62	492	11	4,524
서구	110	2,051	13	222	14	396	71	1,131	12	302
유성구	103	3,981	19	1,678	28	1,298	47	787	9	217
대덕구	85	1,232	29	136	11	563	34	343	11	190
전체	841	192,029	106	21,691	182	73,618	454	53,267	99	43,454

○ 2015년, 2016년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본예산 기준)에 따른 자체사업의 변동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신설된 사업은 총 106개, 21,691백만 원, 2015년에 비해 증액된 사업은 총 182개, 73,618백만 원, 전년도에 비해 동결된 사업은 총 454개, 53,267백만 원, 감액된 사업은 총 99개, 43,454백만 원

으로 사업 수 기준 동결(54.0%), 증액(21.6%), 신설(12.6%), 감액(11.8%)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됨.

- 신설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시청 32개, 19,522백만 원, 대덕구 29개, 136백만 원, 유성구 19개, 1,678백만 원 순이었음.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동구 4개, 90백만 원, 중구 9개, 43백만 원, 서구 13개, 222백만 원임.
- 증액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시청이 총 90개, 70,503백만 원으로 신설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에 이어 증액 사업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시청에 이어 유성구 28개, 1,298백만 원, 중구 23개, 641백만 원 순이었음.

나. 미협의 사업

○ 신설 또는 증액사업으로서 협의대상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은 총 64개, 26,636백만 원으로 이중 지자체의 의견을 참고하고, 신설·변경 협의 안건의 접수목록과 대조하여 미협의 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총 5개, 297백만 원

- 지역별 미협의 사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전시청은 1개(254백만 원), 유성구는 4개(43백만 원) 사업으로 확인됨.

〈표 3-2-17〉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대전)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시청	15	25,984	349	146,604	1	254
동구	5	31	69	6,447	0	0
중구	11	197	94	5,502	0	0
서구	2	90	108	1,961	0	0
유성구	17	243	86	3,738	4	43
대덕구	14	91	71	1,142	0	0
전체	64	26,636	777	165,393	5	297

○ 사업 지원 대상을 9개 영역(저소득·취약계층, 영유아·아동·청소년, 노인, 임신·출산모, 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가족·다문화, 일반, 기타)별로 분류하여 사회서비스(평생사회안전망) 제도를 살펴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3개, 여성·가족·다문화 대상 사업 2개로 나타남.

○ 미협의 사업의 지원 목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지원 1개, 고용·일자리 지원 1개, 출산 지원 1개, 안전 지원 1개, 기타 지원 1개로 나타났고, 사업의 주 담당부서는 노인보육정책과 등 복지관련 부서 사업이 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표 3-2-18〉 미협의 사업 목록(대전)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영유아수범도시 육성(지원)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308-01	급여수준 변경
2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정 취업프로그램 운영	307-11	신설 사업
3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정 DIY추억만들기	307-11	신설 사업
4	신생아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301-01	신설 사업
5	청소년선도보호활동 강화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지원	307-11	신설 사업

7. 울산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울산 지역의 2016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회보장 사업 수는 1,147개이며, 예산은 1,595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임.

- 지역별로는 울산시청 326개(29%), 울주군 245개(21%), 남구 185개(16%), 동구 151개(13%), 중구 139개(12%), 북구 101개(9%)로 나타남.
- 자체사업 예산을 시 및 구군으로 나누어 보면, 울산본청은 1,23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울주군은 17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1%, 남구가 80억 원으로 약 5%를 차지함.
  - 울산시청의 사회보장사업은 1,24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여 자체사업 예산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2-19〉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울산)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시청	326	123,937	29	4,354	108	51,573	151	55,320	38	12,690
중구	139	3,764	25	772	32	2,140	74	692	8	161
남구	185	8,077	31	898	23	2,590	114	4,105	17	484
동구	151	3,189	31	366	20	670	79	1,183	21	970
북구	101	2,782	11	695	28	978	45	955	17	153
울주군	245	17,775	40	4,248	60	7,165	105	4,845	40	1,518
전체	1,147	159,524	167	11,332	271	65,116	568	67,100	141	15,976

○ 사업 변동은 신설 사업이 167개, 증액 사업이 271개, 동결 사업이 568개, 감액 사업이 141개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예산 동결된 사업 수가 약 50%, 신설 및 증액된 사업 수가 38%, 감액 사업수가 12%임.

- 지역별로는 울산시청의 사업 변동은 동결사업이 45%(553억 원), 증액사업 42%(515억 원), 감액사업 10%(126억 원), 신설사업 9%(43억 원)의 비중을 보임.
- 울주군의 자체사업을 전년도 대비 예산 변동으로 보면, 증액사업 예산 40.3%(71억 원), 동결사업 예산이 27.3%(48억 원), 신설사업이 23.9%(42억 원), 감액 사업이 8.5%(15억 원)의 비중임.

나. 미협의 사업

○ 사회보장사업 1,147개 중, 협의대상으로 채택된 사업은 62개이며, 예산 규모는 158억 원 수준임.

- 협의 대상으로 검토 요청한 사업은 울산시청의 사업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예산액도 131억 원으로 가장 많았음.

〈표 3-2-20〉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울산)

(단위: 개, 백만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시청	25	13,126	301	110,811	3	2,593
중구	9	757	130	3,007	3	585
남구	6	941	179	7,136	0	0
동구	8	92	143	3,097	0	0
북구	9	373	92	2,409	2	271
울주군	5	546	240	17,230	0	0
전체	62	15,834	1,085	143,690	8	3,449

○ 미협의 사업은 총 8개로 사업 규모는 34억원 수준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울산 본청의 비중이 컸으며(3개 사업, 약 26억원), 이외 중구와 북구의 자체 사업이 포함됨.

○ 미협의 사업은 복지관련 사업이 5개, 보건 관련 사업 1개, 에너지관리 1개, 주거관련이 1개의 구성이며, 지원 대상 기준으로는 아동에 대한 사업이 4개로 가장 많았음.

〈표 3-2-21〉 미협의 사업 목록(울산)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아동 급식 지원	아동 급식 지원	308-01	지원단가 증액
2	민간단체 위탁사업	취약계층 결핵검진 X-선 장비지원	307-02	신설 사업
3	에너지 안정적 공급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 사업	308-10	신설 사업
4	공동주택 지원사업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지원	402-01	신설 사업
5	취약계층 아동보호	결식아동급식지원(토,일,공휴일,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301-01	지원단가 증액
6	취약계층 아동보호	결식아동급식지원(토,일,공휴일,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307-10	지원단가 증액
7	저소득계층 생계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301-01	신설 사업
8	아동 급식 지원	학기중토,공휴일아동급식지원(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307-11	지원단가 증액

8. 세종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세종특별자치시 2016년 자체 복지사업은 총 210개, 46,450백만 원(2016년 기준)으로 전년도 44,727백만 원에 비해 1,723백만 원 증가

〈표 3-2-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세종)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세종	210	46,450	25	2,701	59	16,413	86	4,347	40	22,988

○ 세출예산사업명세서(본예산 기준)의 2015년 예산액과 2016년 예산액의 차액(예산변동)을 기준으로 해당사업을 신설, 증액, 동결, 감액사업으로 분류.

- 이에 따라 자체사업의 변동 증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6년도에 신설된 사업은 총 25개, 2,701백만원, 2015년에 비해 증액된 사업은 총 59개, 16,413백만원, 전년도에 비해 동결된 사업은 총 86개, 4,347백만원, 감액된 사업은 총 40개, 22,988백만원으로 확인됨.
- 이중 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 사업과 증액 사업을 활용. 전체 사업 중 신설 또는 증액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 수 기준 40%, 예산 기준 41%로 나타남.

나. 미협의 사업

□ 협의대상 사업 현황 결과

○ 신설 또는 증액사업으로서 협의대상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은 총 15개,

6,466백만원으로 이중 최종 확정된 미협의 사업은 총 3개, 50백만원

〈표 3-2-23〉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세종)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세종	15	6,466	195	39,984	3	50

□ 미협의 사업의 특징

○ 사업의 지원 대상을 9개 영역(저소득·취약계층, 영유아·아동·청소년, 노인, 임신·출산모, 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가족·다문화, 일반, 기타)별로 분류하여 사회서비스(평생사회안전망) 제도를 살펴보면, 총 3개 사업 중 영유아·아동·청소년, 기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각 1개로 나타남.

○ 세종시 미협의 대상사업 모두 복지업무 담당부서(여성가족과,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3-2-24〉 미협의 사업 목록(세종)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청소년육성지원	청소년 해외봉사단 문화교류	307-11	신설 사업
2	금연대상자 폐암검사비 지원사업	금연대상자 폐암 검사비 지원	307-01	신설 사업
3	장애인행사지원	장애인 합동결혼식	307-04	신설 사업

9. 경기도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경기도가 2016년에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수는 7,391개이며, 사업의 예산은 총 9,947억원으로 2015년의 8,059억원에 비해 다소 증가

- 지역별로는 경기도청의 사업 수 510개(6.9%), 성남시 443개(6.0%), 안산시 341개(4.6%), 화성시 308개(4.2%)로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음.
- 자체 사회보장사업 예산을 본청, 시, 군별로 보면, 경기도 본청이 2,822억원(28.4%)으로 전체의 1/3, 시 예산 합이 6,919억 원(28개시: 69.6%)으로 약 2/3의 수준, 군의 예산은 205억 원(3개 군: 2.1%)임.

○ 신설 및 증액 사업은 46.2%(3,412개)로 나타났으며, 동결 사업 40.2% (2,968개), 감액 사업은 13.7%(1,011개)로 나타남.

- 예산규모로는 증액사업 45.3%(4,506억 원), 신설사업 20.8%(2,073억 원), 감액사업 18.0%(1,789억 원), 동결사업 15.9%(1,578억 원)으로 신설 및 증액 사업의 예산은 전체의 66.1%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신설 및 증액 사업 수가 60%를 넘는 지역은 경기도청, 화성시이며, 신설 및 증액 사업 수가 절반을 넘는 지역은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의정부시, 김포시, 오산시, 의왕시, 과천시 8개 지역임.
  - 동결사업이 절반을 초과한 지역은 안산시(53%), 파주시(62%), 이천시(61%), 구리시(50%), 양평군(50%), 동두천시(54%), 연천군(52%)
- 자체 사회보장사업 예산에서 신설 및 증액 사업이 70%를 넘는 지역은 수원시(70.7%), 고양시(73.3%), 성남시(75.0%), 용인시(84.1%), 화성시(94.7%), 평택시(75.9%), 오산시(74.7%)였으며,
  - 반면, 동결 및 감액 사업 예산이 60%를 넘는 지역은 파주시(62.3%), 이천시(62.0%), 구리시(60.7%), 포천시(61.8%)로 나타남.

〈표 3-2-25〉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경기)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510	282,248	126	42,020	211	119,372	119	39,779	54	81,077
수원시	248	62,135	66	12,591	58	31,352	79	5,683	45	12,510
고양시	270	44,930	77	10,464	55	22,468	62	2,799	76	9,199
성남시	443	107,039	138	23,721	72	56,504	164	14,578	69	12,235
용인시	180	21,103	36	1,894	62	15,850	60	2,461	22	898
부천시	229	38,501	50	12,993	38	10,099	92	7,873	49	7,536
안산시	341	33,501	64	7,309	63	14,176	180	9,965	34	2,052
남양주시	208	16,507	26	1,496	52	7,733	99	5,245	31	2,032
안양시	281	24,421	58	1,525	72	14,676	119	2,478	32	5,742
화성시	308	87,442	75	37,462	121	45,311	73	2,300	39	2,369
평택시	242	23,500	70	3,185	56	14,662	94	5,265	22	387
의정부시	217	17,337	61	5,908	58	6,029	76	3,370	22	2,030
시흥시	177	24,006	35	6,614	30	7,965	87	7,785	25	1,642
파주시	156	10,439	10	188	32	3,743	97	5,793	17	715
김포시	182	17,685	48	1,037	47	10,159	48	2,946	39	3,542
광명시	223	20,277	32	690	51	11,385	96	2,278	44	5,925
광주시	226	9,980	46	2,349	42	4,321	106	2,433	32	877
군포시	228	17,265	53	3,392	48	8,694	96	4,027	31	1,152
오산시	206	17,948	45	7,923	61	5,485	70	2,244	30	2,296
이천시	224	11,578	28	962	42	3,439	137	5,020	17	2,157
양주시	257	13,217	86	6,255	39	2,379	105	2,566	27	2,018
안성시	285	9,786	108	3,118	33	2,138	129	4,300	15	230
구리시	173	7,294	20	345	42	2,518	87	3,904	24	527
포천시	223	9,830	30	1,580	44	2,173	88	2,703	61	3,374
의왕시	189	9,656	53	1,422	55	3,459	48	728	33	4,046
하남시	204	15,977	29	5,294	60	5,784	102	1,478	13	3,421
여주시	136	6,007	35	1,790	14	1,127	68	863	19	2,226
양평군	250	8,880	42	556	64	4,556	126	1,563	18	2,205
동두천시	144	4,582	18	259	31	2,722	77	1,055	18	546
과천시	160	10,027	23	1,243	68	5,371	56	1,646	13	1,766
가평군	122	6,236	20	1,586	29	1,712	51	1,609	22	1,329
연천군	149	5,410	10	171	44	3,244	77	1,147	18	848
전체	7,391	994,742	1,618	207,345	1,794	450,606	2,968	157,884	1,011	178,908

나. 미협의 사업

○ 사회보장사업 7,391개 중 협의대상 사업은 607개(1,704억 원)

– 해당 지자체에게 확인을 요청한 사업은 도청이 107개(570억 원)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성남시 49개(205억 원), 화성시 40개(83억 원)의 순임

〈표 3-2-26〉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경기)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107	56,989	403	225,259	16	3,261
수원시	29	6,256	219	55,879	5	335
고양시	22	3,199	248	41,731	4	190
성남시	49	20,479	394	86,560	1	27
용인시	10	6,866	170	14,237	3	6,118
부천시	18	7,385	211	31,115	4	3,816
안산시	21	1,936	320	31,565	1	10
남양주시	11	5,033	197	11,474	0	0
안양시	20	6,855	261	17,566	2	305
화성시	40	8,270	268	79,172	4	1,518
평택시	19	3,546	223	19,954	2	970
의정부시	16	6,299	201	11,038	2	2,057
시흥시	15	3,227	162	20,779	1	1,145
파주시	5	1,511	151	8,929	1	13
김포시	13	7,158	169	10,527	1	4
광명시	28	4,598	195	15,679	3	1,415
광주시	9	2,622	217	7,358	1	7
군포시	16	2,610	212	14,655	0	0
오산시	18	1,458	188	16,490	3	1,019
이천시	16	1,725	208	9,853	3	940
양주시	8	1,716	249	11,501	3	1,562
안성시	7	271	278	9,515	2	22
구리시	8	153	165	7,141	0	0
포천시	7	75	216	9,755	0	0
의왕시	12	1,013	177	8,643	1	225
하남시	19	2,410	185	13,567	1	40
여주시	11	1,043	125	4,964	3	440
양평군	14	700	236	8,180	0	0
동두천시	11	1,831	133	2,751	4	874
과천시	19	1,429	141	8,598	2	352
가평군	5	406	117	5,831	1	10
연천군	4	1,327	145	4,083	2	650
전체	607	170,396	6,784	824,348	76	27,325

○ 경기도의 미협의 사업은 총 76개로 사업 규모는 약 273억 원임.

– 본청의 미협의 사업은 사업 수 16개(약 21%), 약 32억 원(약 12%)의 수준이었으며, 시 단위의 미협의 사업 수는 57개(약 75%), 약 234억 원(약

85%), 군 단위의 미협의 사업 수는 3개, 6.5억 원(약 2%)였음.

- 용인시는 미협의 사업 수가 3개, 예산규모 61억 원(약 23%)으로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예산 규모가 컸으며, 부천시가 4개, 예산 규모 38억 원(14%), 의정부시가 2개 사업, 약 20억 원의 예산 규모였음.

○ 미협의 사업은 총 76개였으며, 이 중 복지관련 사업이 약 50%로 절반을 차지하고, 보건 관련 사업 13%, 보훈 사업 13%, 일자리 관련 사업 5% 등의 비율을 보임. 이외에 보육, 장사 관련, 교육·청소년, 안전 사업 등이 미협의 사업으로 검토됨.

- 사업 수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별로는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이 약 20%(15개)로 가장 많았고, 노인 지원 사업이 12%, 출산 가정 지원 사업이 12%, 장애인 지원 사업이 9%의 구성을 보임.
-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별로는 출산 가정 지원 사업이 13.5%,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이 4.3%, 노인 지원 사업이 2.6%의 구성을 보임.

〈표 3-2-27〉 미협의 사업 목록(경기)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결혼이민자 행복드림사업(자체/직접)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307-05	신설 사업
2	NEXT 희망일자리사업(자체/직접)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07-02	신설 사업
3	청년 등 특화사업 발굴(자체/직접)	청년 등 특화사업 발굴	307-02	신설 사업
4	융복합 행정체제 운영(자체/직접)	융복합 사업 활성화 지원	307-02	신설 사업
5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자체/직접)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307-11	신설 사업
6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자체/지원)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308-01	신설 사업 (재원 변경)
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사업(자체/직접)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사업	307-11	신설 사업
8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체/직접)	공공심야약국 운영	307-02	신설 사업
9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사업(자체/직접)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	307-05	신설 사업
1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자체/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308-01	지원 단가 및 내용 변경
11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 확대(자체/직접)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 확대	307-05	지원 확대
12	학교 밖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사업(자체/직접)	학교 밖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사업	308-01	신설 사업
13	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자체/직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307-05	신설 사업

78 신설·변경 미협의 사회보장사업 조사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4	다문화고교생 직업교육(자체/지원)	지역 다문화고교생 직업교육	308-01	신설 사업
15	노인사회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기금)	공모사업(노인복지사업 등)	307-00	신설 사업
16	시니어 일자리창출사업	시니어 일자리창출사업	308-01	신설 사업
17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307-02	신설 사업
18	장애인 여가활동 및 문화행사	장애인 합동결혼식	307-04	신설 사업
19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307-02	신설 사업
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307-02	신설 사업
21	(하수도사업특별회계)사회보장적수혜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301-01	신설 사업
22	민간단체 협력 지원사업	홀몸어르신 평생돌보미 사업 실버케어센터	307-02	신설 사업
23	재난취약계층 가스 타이머 콕 보급사업	재난취약계층 가스 타이머 콕 보급사업	307-02	신설 사업
24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301-01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25	배움누리 지원	배움누리 운영지원	307-05	재원 변경
26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	취약계층 아토피환아 의료비, 보습제 지원	307-01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변경
27	보훈대상자등 지원	보훈명예수당	301-01	지원 대상 기준 확대
28	청소년보호및선도단체지원	청소년선도·보호단체지원	307-02	신설 사업
29	청소년보호및선도단체지원	미인가대안교육기관지원	307-02	신설 사업
30	일반 보훈업무 추진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경비	301-01	지원 회수 및 금액 변경
3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307-11	신설 사업
32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	307-11	신설 사업
33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희희빨래방 운영	307-11	신설 사업
34	중도입국자녀 적응지원	중도입국청소년 맞춤형 진로지원사업	307-11	사업 내용 변경
35	출산안정지원사업	한방 난임 지원	307-01	신설 사업
36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301-01	지원 대상 기준 확대
37	다문화 통합프로그램 운영	다문화통합프로그램지원	307-11	신설 사업
38	다자녀 가정 출산장려 사업	다자녀가정출산장려사업	301-01	신설 사업
39	결식아동 급식단가 보조(자체)	결식아동 급식단가 보조(자체)	301-01	신설 사업
40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성인지)	출산지원금	301-01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41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301-11	신설 사업
4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수당	301-01	지원 금액 증가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43	취약계층지원	민관협력 사업 운영	307-02	신설 사업 (재원변경추가)
44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보훈명예수당	301-01	지원 수준 확대
45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 수당	301-11	지원 금액 증가
46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	301-11	지원 금액 증가
47	취약계층 복지증진	행려사망자 처리비	301-01	서비스 단가 변경
48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명예수당	301-01	지원 금액 증가
49	행려자 보호 및 지원	행려자 보호 및 지원	301-01	서비스 단가 변경
50	어린이충치 예방사업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구강관리비	307-01	신설 사업
51	대한적십자사 경기광주지구협의회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사업	307-02	신설 사업 (담당부서변경)
52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301-01	지원 금액 증가
53	난독증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307-11	신설 사업
54	노인무료틀니사업	틀니시술 및 수리비 지원	307-01	신설 사업 (재원 변경)
55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307-11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56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수당	301-11	지원 금액 증가
57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	어린이집 아동 관내 체험활동비 지원	301-01	지원 서비스 단가 변경
58	보훈가족 예우시책 추진	보훈명예수당	301-01	지원 금액 증가
59	출산장려 지원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301-01	지원 단가 금액 증가
60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자체시비)	301-01	신설 사업 (시비 추가)
61	요보호아동 긴급지원비	요보호아동 긴급지원비	301-01	신설 사업
62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	국민기초 고등학생 저녁급식비 지원	301-01	신설 사업
63	(기금)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	화장장려금	301-11	대상자 기준 확대 및 지원 내용 변경
64	독거노인 디지털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독거노인 디지털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301-01	신설 사업
65	장묘문화 개선지원(화장 장려금 지원)	화장 장려금 지원	301-11	지원 확대
66	보훈단체 운영지원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301-01	지원 금액 증가
67	보훈단체 운영지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	301-01	신설 사업
68	복지자원관리 연계추진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무료수강 교재비	301-11	지원 서비스 수준 확대
69	보훈단체 운영	보훈명예수당	301-01	지원 금액 증가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70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전동휠체어, 스쿠터대여 및 배터리 교체등)	307-11	신설 사업
71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301-01	지원 금액 증가
72	보훈 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307-05	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73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태아기형 선별검사 쿠폰 지원	307-01	신설 사업
74	고령국가유공자 돌봄사업	고령국가유공자 돌봄사업	307-02	신설 사업
75	출산지원	출산장려금	301-01	지원 대상 확대
76	아동복지 서비스	요보호 아동지원	301-01	지원 확대 (금액,횟수)

10. 강원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강원도의 사회보장사업은 총 4,063개, 271,965백만 원(2016년 기준)으로 전년도 232,985백만 원에 비해 38,980백만 원 증가

- 지역별로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릉시로 334개, 다음으로 도청 262개, 삼척시 258개임. 반면에 고성군은 148개로 사업이 가장 적음.
- 예산을 기준으로 도청이 74,488백만 원으로 강원도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했고, 춘천시 9.8%(26,536백만 원), 원주시 8.8%(23,944백만 원)순임.

〈표 3-2-28〉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강원)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262	74,488	40	6,503	63	32,152	119	9,222	40	26,611
춘천시	216	26,536	35	4,658	52	12,187	87	3,141	42	6,549
원주시	244	23,944	48	826	38	16,030	4	185	154	6,904
강릉시	334	18,321	58	2,396	42	6,397	186	6,378	48	3,150
동해시	201	9,070	31	1,528	40	4,304	108	2,330	22	908
태백시	167	7,984	13	179	42	5,826	94	1,249	18	730
속초시	183	9,812	42	1,344	43	2,867	77	2,444	21	3,158
삼척시	258	12,577	79	3,943	40	3,734	98	3,471	41	1,430
홍천군	218	14,067	69	3,717	43	7,223	80	1,375	26	1,752
횡성군	203	10,372	25	997	58	5,244	81	2,196	39	1,934
영월군	182	8,072	40	1,825	29	2,993	103	3,107	10	147
평창군	177	8,103	57	2,689	32	2,328	59	2,033	29	1,053
정선군	210	11,850	24	2,457	35	4,063	121	4,263	30	1,066
철원군	199	5,671	24	487	28	1,739	116	2,993	31	452
화천군	242	7,490	26	1,246	52	2,847	124	2,821	40	576
양구군	196	4,590	12	445	28	1,160	141	2,621	15	364
인제군	220	8,130	54	2,423	28	1,102	107	3,143	31	1,462
고성군	148	5,408	58	1,436	22	1,620	34	1,638	34	714
양양군	203	5,479	21	1,083	26	1,712	134	2,259	22	425
전체	4,063	271,965	756	40,183	741	115,528	1,873	56,868	693	59,386

○ 예산에 따른 사업의 변동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신설된 사업은 총 756개, 40,183백만원, 2015년에 비해 증액된 사업은 총 741개, 115,528백만원, 전년도에 비해 동결된 사업은 총 1,873개, 56,868백만원, 감액된 사업은 총 693개, 59,386백만원으로 확인됨.

– 협의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 사업과 증액 사업을 활용.

- 가장 많은 신설 사업이 시행된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삼척시 79개, 3,943백만원, 홍천군 69개, 3,717백만원, 강릉시 58개, 2,396백만원, 고성군 58개, 1,436백만원 순이었음.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양구군 12개, 445백만원, 태백시 13개, 179백만원, 양양군 21개, 1,083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 증액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본청이 총 63개, 32,152백만원. 본청에 이어 횡성군 58개, 5,244백만원, 춘천시 52개, 12,187백만원, 화천군 52개, 2,847백만원 순이었음.

나. 미협의 사업

□ 협의대상 사업 현황 결과

○ 협의대상으로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한 사업은 총 212개(52,256백만) 이며, 이 중 최종적으로 미협의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총 47개, 12,024백만원

– 지역별 미협의 사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본청(6개, 4,397백만원), 원주시(4개, 2,245백만원), 강릉시(2개, 48백만원), 동해시(4개, 1,115백만원), 속초시(4개, 451백만원), 삼척시(3개, 169백만원), 홍천군(3개, 42백만원), 횡성군(4개, 1,172백만원), 영월군(2개, 541백만원), 철원군(4개, 858백만원), 화천군(3개, 519백만원), 양구군(5개, 392백만원), 인제군(2개, 67백만원), 양양군(1개, 8백만원)

〈표 3-2-29〉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강원)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24	24,650	238	49,838	6	4,397
춘천시	14	3,044	202	23,492	0	0
원주시	10	3,737	234	20,207	4	2,245
강릉시	10	3,198	324	15,122	2	48
동해시	9	1,582	192	7,489	4	1,115
태백시	10	1,969	157	6,015	0	0
속초시	13	765	170	9,047	4	451
삼척시	11	1,540	247	11,037	3	169
홍천군	13	2,009	205	12,058	3	42
횡성군	14	1,572	189	8,800	4	1,172
영월군	12	1,064	170	7,008	2	541
평창군	7	1,052	170	7,050	0	0
정선군	7	438	203	11,412	0	0
철원군	9	1,031	190	4,640	4	858
화천군	13	1,968	229	5,522	3	519
양구군	14	855	182	3,735	5	392
인제군	5	357	215	7,772	2	67
고성군	5	41	143	5,367	0	0
양양군	12	1,382	191	4,097	1	8
전체	212	52,256	3,851	219,709	47	12,024

□ 미협의 사업의 특성 분석

○ 사업의 지원 대상을 9개 영역(저소득·취약계층, 영유아·아동·청소년, 노인, 임신·출산모, 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가족·다문화, 일반, 기타)별로 분류하여 사회서비스(평생사회안전망) 제도를 살펴보면, 보훈 대상 사업(15개, 31.9%), 노인 대상 사업(12개, 25.5%), 여성·가족·다문화 대상 사업(11개, 23.4%)순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미협의 사업은 복지업무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등)의 사업이 37개로 보건(3개), 보건소(5개) 등 타 업무부서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복지, 보건업무 담당부서 외에 타 부서에서 사회보장사업 대상인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1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1개)을 시행하고 있음.

〈표 3-2-30〉 미협의 사업 목록(강원)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북한이탈대학생 교재비 지원	308-01	급여 내용 변경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치료	308-01	신설 사업
3	(공공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사업	308-01	신설 사업
4	(취업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운영기관 지원금 및 활동비지원	307-02	신설 사업
5	(인턴형)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기업 및 운영기관 지원금	307-02	신설 사업
6	(특화형)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사업	308-01	신설 사업
7	구강예방사업	노인무료의치시술비	307-01	신설 사업
8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참전 명예수당	301-01	급여 내용 변경
9	국가보훈대상자지원사업	보훈영예수당	301-01	급여 내용 변경
10	의료지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신설 사업
11	다문화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301-06	대상사선정기준변경
12	보호종결아동자립정착금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301-01	대상사선정기준변경
13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301-01	급여 내용 변경
14	국가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지원	보훈명예수당	301-01	신설 사업
15	국가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지원	보훈대상자 장제비	301-01	신설 사업
16	국가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지원	참전명예수당	301-01	급여 내용 변경
17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01-01	신설 사업
18	노숙인 등 보호	노숙인 등 보호	301-01	신설 사업
19	다문화가정 지원	결혼이민자한국사회적응지원사업	307-11	신설 사업
20	출산장려 지원	출산지원금	301-01	지원단가 인상
21	공공산후조리원개설운영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용 지원	307-02	신설 사업
22	저소득한부모가족시책사업비	초·중·고등학생수학여행경비지원	301-01	신설 사업
23	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1명)	301-01	신설 사업
24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시설퇴소아동자립 정착금지원	301-01	급여 내용 변경
25	의치보철사업	의치보철의료비지원	301-01	신설 사업
26	여성발전기금운영	모자가정취약환경주거개선사업	307-02	신설 사업
27	보훈유가족 지원	참전명예수당	301-01	급여 내용 변경
28	보훈유가족 지원	보훈영예수당	301-01	신설 사업
29	요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301-01	급여 내용 변경
30	요보호아동 지원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301-01	신설 사업
31	국가보훈대상자수당지급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지원	301-01	급여 내용 변경
32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군비추가)	307-11	신설 사업
33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 사업	태아기형아검사	307-01	대상사선정기준변경
34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301-11	급여 내용 변경
35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급	301-11	급여 내용 변경
36	무연고사망자장제처리	사망자 장제비	301-01	급여 내용 변경
37	보훈단체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301-01	급여 내용 변경
38	보훈단체운영	참전유공자 지원시책 추진	301-01	급여 내용 변경
39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301-11	신설 사업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40	무료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 사업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307-01	대상자선정기준변경
41	무료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 사업	무료의치 보철사업 사후관리비	307-01	급여 내용 변경
42	법질서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	301-11	신설 사업
43	국가유공자 지원	참전수당(참전용사)	301-01	급여 내용 변경
44	경로당운영 활성화 추진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307-11	신설 사업
45	보훈대상자 지원[자체]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301-11	신설 사업
46	여성단체사업지원[자체]	독거노인 환경정비사업	307-11	지원단가 인상
47	저소득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301-01	신설 사업

11. 충북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충북 지역의 2016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회보장 사업 수는 2,249개이며, 예산은 1,902억 원으로 2015년의 1,808억 원에 소폭 증가한 수준임.

- 도청 228개(10.3%), 청주시 225개(10%), 충주시 259개(11.5%), 제천시 280개(12.4%), 보은군 160개(7.1%), 옥천군 159개(7%), 영동군 146개(6.4%), 증평군 122개(5.4%) 등으로 나타남.
- 자체사업 예산을 시, 군으로 나누어 보면, 충북도청은 81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시군 중 청주시는 37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9%, 제천시가 약 136억 원으로 약 7%를 차지함.

〈표 3-2-3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충북)

(단위: 개, 백만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228	81,397	24	1,569	59	44,715	112	6,625	27	28,488
청주시	225	37,673	52	7,977	37	13,442	104	8,541	32	7,713
충주시	259	10,668	51	748	28	3,414	149	3,510	31	2,996
제천시	280	13,684	43	1,114	65	4,495	132	4,223	40	3,851
보은군	160	5,145	20	889	25	1,532	89	2,182	26	542
옥천군	159	7,054	32	369	38	2,869	66	2,639	23	1,177
영동군	146	7,662	25	310	37	2,163	56	1,390	28	3,800
증평군	122	4,438	24	1,724	11	560	22	329	65	1,825
진천군	193	5,138	24	455	39	1,758	97	2,366	33	560
괴산군	112	3,650	14	426	34	1,530	50	1,049	14	644
음성군	171	6,085	22	189	40	2,093	84	1,979	25	1,823
단양군	194	7,703	31	844	37	2,775	93	1,963	33	2,121
전체	2,249	190,297	362	16,614	450	81,346	1,054	36,796	377	55,540

○ 신설 사업 362개, 증액 사업 450개, 동결 사업 1,054개, 감액 사업 377개로 나타나 증액 및 동결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신설 사업 수를 살펴보면, 청주시(52개), 충주시(51개), 제천시(43개) 순으로 많았으며, 증액 사업 수는 제천시(65개), 충북도청(59개), 음성군(40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신설 사업의 예산은 청주시(79.7억 원), 증평군(17.2억 원), 도청(15.6억 원) 순이며, 증액 사업 예산은 도청(447억 원), 청주시(134억 원), 제천시(44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나. 미협의 사업

○ 예산 증감을 통해 '신설 및 증액'으로 파악된 사회보장사업 812개 중, 협의대상으로 채택된 사업은 137개이며, 예산 규모는 185억 원 수준임.

- 협의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요청한 사업은 충북도청 사업이 20개로 가장 많았으나, 예산은 청주시가 81억 원으로 가장 많았음.

〈표 3-2-32〉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충북)

(단위: 개, 백만 원)

	협의 대상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 사업		협의대상 제외 사업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도청	20	6,012	208	75,385	3	266
청주시	16	8,106	213	29,567	1	40
충주시	6	434	253	10,234	1	300
제천시	14	790	266	12,894	1	17
보은군	7	178	153	4,967	3	105
옥천군	14	1,217	145	5,837	2	457
영동군	10	169	136	7,493	0	0
증평군	12	451	110	3,987	0	0
진천군	8	221	185	4,917	1	4
괴산군	12	293	100	3,356	2	44
음성군	9	187	162	5,898	2	6
단양군	9	431	185	7,272	2	21
전체	137	18,489	2,112	171,808	18	1,262

○ 미협의 사업은 총 18개로 사업 규모는 12.6억 원 수준임. 지역별로 미협의 사업 수는 0~3개 범위였으며 지역별 미협의 사업수는 평균 1.5개였음. 예산 규모 면에서는 옥천군(4.5억 원), 충주시(3억 원), 충북도청(2.6억 원) 순으로 높았음.

○ 미협의 사업은 복지관련 사업 담당과가 10개로 보건(4개), 행정(2개), 청년지원(1개)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청년사업 지원 사업의 경우 1회성 사업인지 불분명한 경우 협의대상에 포함되며,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사업의 경우 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전달체계가 바뀐 경우에는 협의대상 사업으로 볼 수 있음

〈표 3-2-33〉 미협의 사업 목록(충북)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청년여성 희망일터지원사업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307-11	신설 사업
2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자살시도자 등 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308-01	신설 사업
3	청년 창업 활성화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308-10	신설 사업
4	감염병관리	취약계층 인플루엔자사업	307-01	신설 사업
5	미망인 복지수당지원	미망인복지수당	301-11	대상자 범위 확대
6	시민활동지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307-02	지원내용 확대
7	공훈 선양 지원	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	301-01	신설 사업
8	어린이집 및 아동지원	추가보육료 지원	307-05	대상자 범위 확대
9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지원	자활 지원기금	307-02	지원내용 확대
10	사회단체운영지원	사랑의 연탄나누기	307-02	신설 사업
11	출산축하금지원사업	출산축하금 지원	301-01	지원단가 증액
12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자립지원	301-01	신설 사업
13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지원	부랑인 및 행려자	307-01	지원단가 증액
14	자살예방사업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	307-01	신설 사업
15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지원	307-01	신설 사업
16	만성질환관리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안저검사)	307-01	지원단가(검진비) 증액
17	보훈행사지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301-01	신설 사업
18	자활기금(기금)	희망키움통장(I)가입 자 추가장려금 지원	301-01	신설 사업

12. 충남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충청남도 자체 복지사업은 총 2,974개, 274,836백만 원(2016년 기준)으로 전년도 213,067백만 원에 비해 61,769백만 원 증가

- 사업 수로 보면, 자체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아산시로 296개, 다음으로는 당진시 244개, 본청 241개임. 이에 비해 계룡시는 118개로 가장 적은 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청이 55,296백만 원으로 충남 총 자체 복지사업 예산의 20.1%를 차지했고, 천안시 12.4%(34,207백만 원), 서산시 10.8%(29,627백만 원)순으로 나타남.

〈표 3-2-3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충남)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241	55,296	65	10,113	68	31,555	52	5,950	56	7,677
천안시	172	34,207	61	15,254	33	13,512	53	4,592	25	848
공주시	164	14,623	18	7,345	20	1,333	111	2,057	15	3,889
보령시	207	12,581	50	2,120	34	2,426	110	4,192	13	3,843
아산시	296	23,645	53	1,396	57	12,840	164	8,558	22	851
서산시	240	29,627	47	4,081	46	16,462	124	6,275	23	2,808
논산시	209	18,277	66	1,984	28	7,334	82	6,607	33	2,352
계룡시	118	5,078	15	885	14	1,062	79	2,994	10	137
당진시	244	16,622	59	1,511	35	8,046	129	5,289	21	1,776
금산군	158	8,972	42	1,432	12	1,541	89	2,390	15	3,609
부여군	173	13,032	35	843	26	2,559	87	5,377	25	4,253
서천군	146	5,672	29	226	10	970	97	3,105	10	1,371
청양군	163	8,260	14	185	22	1,694	102	2,356	25	4,025
홍성군	149	13,349	25	266	19	2,594	87	8,364	18	2,125
예산군	148	7,600	28	2,617	23	1,242	75	993	22	2,750
태안군	146	7,995	56	1,810	22	2,595	56	1,541	12	2,049
전체	2,974	274,836	663	52,067	469	107,766	1,497	70,640	345	44,362

○ 신설 사업은 663개(52,067백만), 증액 사업은 469개(107,766백만), 동결 사업은 1,497개(70,640백만), 감액 사업은 345개(44,362백만).

- 신설 사업 수가 많은 지역은 논산시 66개(1,984백만), 도청 65개(10,113백만), 천안시 61개(15,254백만)의 순이며, 반면에 적은 지역은 청양군 14개(185백만), 계룡시 15개(885백만), 공주시 18개(7,345백만)로 나타남.
- 증액 사업 수가 많은 지자체는 도청으로 68개(31,555백만) 사업이며, 아산시 57개(12,840백만), 서산시 46개(16,462백만)의 순임.

나. 미협의 사업

□ 미협의 사업 현황

○ 협의대상 사업으로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한 사업은 307개(44,951백만) 이며, 최종적으로 미협의 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55개(6,731백만) 사업

〈표 3-2-35〉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충남)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45	12,834	196	42,462	2	50
천안시	43	6,658	129	27,549	4	366
공주시	9	482	155	14,141	2	259
보령시	27	1,068	180	11,513	8	548
아산시	27	6,009	269	17,636	4	2,522
서산시	20	5,033	220	24,594	4	56
논산시	13	646	196	17,630	1	4
계룡시	11	793	107	4,285	5	373
당진시	14	4,315	230	12,307	1	6
금산군	24	810	134	8,162	1	1
부여군	18	714	155	12,318	10	340
서천군	11	168	135	5,503	2	50
청양군	9	1,097	154	7,164	4	293
홍성군	14	482	135	12,868	4	162
예산군	11	1,814	137	5,786	0	0
태안군	11	2,028	134	5,967	3	1,700
전체	307	44,951	2,667	229,885	55	6,731

- 지역별 미협의 사업은 본청 2개(50백만), 천안시 4개(366백만), 공주시 2개(259백만), 보령시 8개(548백만), 아산시 4개(2,522백만), 서산시 4개(56백만), 논산시 1개(4백만), 계룡시 5개(373백만), 당진시 1개(6백만), 금산군 1개(1백만), 부여군 10개(340백만), 서천군 2개(50백만), 청양군 4개(293백만), 홍성군 4개(162백만), 태안군 3개(1,700백만)임.

□ 미협의 사업의 특징

○ 미협의 사업을 지원 대상별로 구분한 결과 여성·가족·다문화 대상 사업이 24개,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이 8개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함.

○ 미협의 사업은 복지업무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등)의 사업이 32개로 보건(1개), 보건소(11개) 등 타 업무부서에 비해 월등히 많음

〈표 3-2-36〉 미협의 사업 목록(충남)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 한방치료사업	308-01	신설 사업
2	에너지절약.교육,홍보	취약계층 에너지나눔 사회공헌 활동	403-02	신설 사업
3	저소득노인지원	저소득독거노인건강과일지원	307-11	신설 사업(15년)
4	기초생활지원	노인 목욕비 지원	301-01	신설 사업
5	거주외국인복지지원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단체 보조	307-02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6	거주외국인복지지원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확대	307-02	신설 사업
7	보훈대상자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수당	301-01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8	공동주택관리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301-11	급여 내용 변경
9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01-11	신설 사업
10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가임기여성 엽산제 지원	307-01	신설 사업
11	장애인재활사업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	307-11	신설 사업
12	다문화가정 지원	국제결혼가정지원	301-01	대상자 확대
13	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 보육 특화 프로그램	307-11	신설 사업
14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장려금	301-01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 변경
15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운영	저소득층 가스안전 차단기(타이머콕)설치	401-01	신설 사업
16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자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자체)	101-04	급여 내용 변경
17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301-01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18	아기 디엔에이카드 발급	아기 디엔에이카드 발급	301-01	신설 사업
19	아동급식비 지원	아동급식 시비추가지원금	307-11	신설 사업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20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보조)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403-02	신설 사업
21	장애인 인권침해예방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402-01	신설 사업
22	청소년육성·보호·행사활동 등 지원	청소년 단체 공익활동지원	307-11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23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정서행동 프로그램 지원(시비추가)	301-01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24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임산부 및 아동건강증진사업(시비추가)	307-01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25	행복한 출산.영유아 관리사업	엽산제 및 철분제 등 구입	301-01	신설 사업
26	아동과 모성 건강관리	출산장려금 지원	301-01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 변경
27	아동과 모성 건강관리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원	307-01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28	다문화 가정 자녀 부진학습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부진학습지원	307-11	신설 사업
29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보급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307-01	신설 사업
30	교육복지 업무추진	다자녀 학비 지원(인구증가시책)	301-11	신설 사업
31	부랑인 보호	행려사망자 장제비	301-01	급여내용 변경
32	사회단체의 군정참여확대	따뜻한 마음 나눔 집수리 지원	307-02	신설 사업
33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307-01	신설 사업
34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임산부 분만 이송비 지원	307-01	신설 사업
35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301-01	신설 사업
36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지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301-01	신설 사업
37	국제결혼가정 지원	국제결혼가정 특송요금 지원	301-11	신설 사업
38	행려자 및 부랑인관리	행려사망자 수송비 및 장제비	301-01	신설 사업
39	자활기금 지원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지원사업	301-01	신설 사업
40	성(가정)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07-01	신설 사업
41	인구증가 지원	출산장려금(넷째)	301-11	급여내용 변경
42	인구증가 지원	출산장려금(다섯째 이상)	301-11	신설 사업
43	소외계층의료비 지원	경동맥초음파 검진비	307-01	신설 사업
44	치매환자관리사업	취약가정 가스타이머 설치 보급	307-05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45	다문화자녀 능력개발 지원	다문화자녀 자신감 UP	307-11	신설 사업
46	넷째이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지원	넷째이후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 차량운행비 지원	301-01	신설 사업
47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아이돌보미지원(넷째자녀)	307-11	신설 사업
48	인구정책사업	출산지원금 및 임신축하금	301-01	급여내용 변경
49	국제결혼가정지원	다문화가족 행복앨범 제작	307-11	신설 사업
50	모자보건관리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307-01	지원항목 추가,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 변경
51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 협의회 사업 보조	307-02	신설 사업
52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 예방	자살위기시도자 응급치료	307-01	신설 사업
53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301-01	급여내용 변경
54	출산장려	신생아 출산장려금	301-01	급여내용 변경
5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307-02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13. 전북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전라북도 자체 복지사업은 총 3,025개, 297,226백만 원(2016년 기준)으로 전년도 269,349 백만 원에 비해 27,877백만 원 증가

- 사업 수로 보면, 자체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정읍시로 307개, 다음으로는 전주시 291개, 본청 288개 순이었음. 이에 비해 무주군은 122개로 가장 적은 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본청이 182,063백만 원으로 전북 자체 복지사업 총 예산의 61.3%를 차지했고, 이어 전주시 6.6%(19,650백만), 군산시 3.8%(11,427백만)순으로 나타남.

〈표 3-2-37〉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전북)

(단위: 개, 백만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288	182,063	65	5,632	77	50,607	100	39,747	46	86,077
전주시	291	19,650	110	2,259	27	5,872	89	5,759	65	5,759
군산시	180	11,427	42	3,308	32	4,139	80	2,815	26	1,165
익산시	205	10,057	37	1,438	59	5,111	82	1,698	27	1,810
정읍시	307	10,825	39	1,167	57	4,307	176	3,698	35	1,654
남원시	246	6,489	103	1,994	25	1,973	97	895	21	1,626
김제시	174	7,918	16	753	17	2,111	75	2,228	66	2,826
완주군	178	10,980	35	903	31	4,973	79	2,978	33	2,127
진안군	206	6,531	30	1,543	57	2,559	72	1,120	47	1,309
무주군	122	4,768	25	442	36	2,402	41	894	20	1,030
장수군	129	6,128	23	1,801	16	1,605	76	2,019	14	703
임실군	180	4,202	33	885	33	1,907	73	545	41	865
순창군	126	4,977	27	492	24	1,325	52	2,585	23	575
고창군	192	6,261	35	904	34	2,654	103	2,033	20	670
부안군	201	4,952	31	565	23	2,164	118	869	29	1,354
전체	3,025	297,226	651	24,085	548	93,710	1,313	69,883	513	109,550

○ 예산에 따른 자체 복지사업의 변동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신설된 사업은 총 651개, 24,085백만 원, 2015년에 비해 증액된 사업은 총 548개, 93,710백만 원, 전년도에 비해 동결된 사업은 총 1,313개, 69,883백만 원, 감액된 사업은 총 513개, 109,550 백만 원으로 확인됨.

- 신설 사업이 많은 지역은 전주시(110개)와 남원시(103개)이며, 반면에 적은 지역은 김제시(16개), 장수군(23개), 무주군(25개) 등임.
- 증액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도청(77개, 50,607백만)이며, 다음으로 익산시(59개, 5,111백만), 정읍시(57개, 4,307백만)의 순임

나. 미협의 사업

□ 미협의 사업 현황

○ 신설 또는 증액사업으로서 협의대상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은 총 150개, 34,044백만원으로 이중 최종 미협의 사업은 총 10개, 575백만원

〈표 3-2-38〉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전북)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26	25,331	262	156,733	0	0
전주시	23	1,031	268	18,618	1	200
군산시	6	1,042	174	10,385	1	6
익산시	14	1,772	191	8,284	1	45
정읍시	9	1,280	298	9,545	0	0
남원시	7	133	239	6,356	0	0
김제시	7	158	167	7,760	0	0
완주군	12	696	166	10,284	2	150
진안군	12	272	194	6,258	1	18
무주군	8	128	114	4,640	1	30
장수군	5	232	124	5,896	0	0
임실군	5	270	175	3,932	2	80
순창군	9	784	117	4,193	0	0
고창군	4	698	188	5,563	1	46
부안군	3	218	198	4,735	0	0
전체	150	34,044	2,875	263,182	10	575

- 지역별 미협의 사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주시(1개, 200백만원), 군산시(1개, 6백만원), 익산시(1개, 45백만원), 완주군(2개, 150백만원), 진안군(1개, 18백만원), 무주군(1개, 30백만원), 임실군(2개, 80백만원), 고창군(1개, 46백만원)

□ 미협의 사업의 특성 분석

○ 사업의 지원 대상을 9개 영역(저소득·취약계층, 영유아·아동·청소년, 노인, 임신·출산모, 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가족·다문화, 일반, 기타)별로 분류하여 사회서비스(평생사회안전망) 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대상 사업(3개)과 노인 대상 사업(2개)이 전체 미협의 사업 10개 중 1/2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미협의 사업은 복지업무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등)의 사업이 8개로 보건(1개), 농업농촌정책과(1개) 등 타 업무부서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됨.

〈표 3-2-39〉 미협의 사업 목록(전북)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307-05	신설 사업
2	장애인단체지원	휠체어, 컴퓨터 클린업	307-11	신설 사업
3	한방지원사업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첩약 및 한압요법등)	307-01	급여내용 변경
4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301-11	신설 사업
5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	307-11	신설 사업
6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307-11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7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	402-02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8	지역사회복지증진기반조성	사회복지심부름센터운영(자체)	307-10	신설 사업
9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추가 지원	307-11	급여내용 변경
10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301-11	신설 사업

14. 전남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사회보장사업 현황

○ 전남의 2016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회보장 사업 수는 5,056개이며, 예산은 2,465억 원으로 2015년의 2,203억 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임.

- 지역별로는 전남도청이 360개(약 7.1%), 목포시가 246개(약 4.9%), 여수시가 368개(약 7.3%), 순천시가 316개(약 6.3%), 나주시가 205개(약 4.1%), 광양시가 337개(약 6.7%), 담양군이 165개(약 3.3%), 곡성군이 222개(약 4.4%), 구례군이 176개(약 3.5%), 고흥군이 194개(약 3.8%), 보성군이 163개(약 3.2%), 화순군이 134개(약 2.7%), 장흥군이 172개(약 3.4%), 강진군이 205개(약 4.1%), 해남군이 253개(약 5.0%), 영암군이 221개(약 4.4%), 무안군이 158개(약 3.1%), 함평군이 221개(약 4.4%), 영광군이 198개(약 3.9%), 장성군이 159개(약 3.1%), 완도군이 264개(약 5.2%), 진도군이 168개(약 3.3%), 신안군이 151개(약 3.0%) 로 나타남.
- 자체사업 예산을 시, 군, 구로 나누어 보면, 전남도청은 830억원으로 전체 도 예산의 약 33.7%를 차지하고, 시군 중 순천시는 186억원으로 전체 도 예산의 약 7.5%, 여수시가 약 174억원으로 약 7.1%를 차지함.

□ 사업 변동의 현황

○ 사업 변동은 신설 사업이 1,015개, 증액 사업이 669개, 동결 사업이 2,532개, 감액 사업이 840개로 나타나 동결사업이 가장 많았고, 신설, 감액, 증액사업 순서로 사업 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신설 사업 수는 완도군(101개), 광양시(85개), 여수시(83개) 순으로 많았으며, 증액 사업 수는 전남도청(80개), 순천시(48개), 여수시(46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신설 사업 예산은 순천시(63억), 완도군(26억 원), 화순군(23억) 순

으로 많았으며, 증액 사업 예산액은 전남도청(250억), 여수시(89억), 순천시(55억)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40〉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전남)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360	83,040	30	1,920	80	25,047	203	41,863	47	14,210
목포시	246	10,117	39	1,542	25	2,471	152	4,827	30	1,276
여수시	368	17,411	83	2,069	46	8,937	170	2,497	69	3,908
순천시	316	18,603	50	6,327	48	5,452	168	3,453	50	3,371
나주시	205	8,184	76	1,302	44	4,425	66	1,353	19	1,103
광양시	337	11,420	85	1,544	44	3,136	151	5,417	57	1,323
담양군	165	7,276	20	276	26	2,930	84	1,189	35	2,881
곡성군	222	3,146	53	323	28	483	109	1,254	32	1,085
구례군	176	3,448	28	364	9	450	81	1,646	58	989
고흥군	194	5,974	59	1,312	29	3,029	69	1,037	37	595
보성군	163	6,014	21	656	15	1,129	103	1,968	24	2,261
화순군	134	9,582	20	2,311	13	3,257	76	2,633	25	1,381
장흥군	172	5,114	36	847	18	2,496	83	1,337	35	434
강진군	205	3,497	51	481	20	617	117	1,961	17	438
해남군	253	8,596	44	1,044	24	1,455	158	2,109	27	3,988
영암군	221	3,597	2	20	25	1,404	69	574	125	1,600
무안군	158	3,583	7	573	20	755	107	1,908	24	347
함평군	221	3,273	54	1,139	17	538	113	932	37	664
영광군	198	6,843	83	1,849	33	2,594	69	553	13	1,846
장성군	159	6,867	23	851	33	4,334	91	1,464	12	218
완도군	264	8,774	101	2,631	27	979	117	3,929	19	1,235
진도군	168	5,694	30	1,939	20	1,366	91	1,608	27	780
신안군	151	6,528	20	494	25	2,058	85	2,049	21	1,927
전체	5,056	246,581	1,015	31,814	669	79,342	2,532	87,561	840	47,860

나. 미협의 사업

○ 예산 증감을 통해 '신설 및 증액'으로 파악된 사회보장사업 1,684개 중, 협의 대상으로 채택된 사업은 231개이며, 예산 규모는 303억원 수준임.

- 협의 대상으로 검토 요청한 사업은 사업 수 면에서는 해남군과 영광군이 17개로 가장 많았고, 예산 규모 면에서 순천시가 약 30억으로 가장 많았음.

〈표 3-2-41〉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전남)

(단위: 개, 백만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14	2,698	346	80,342	4	317
목포시	11	2,242	235	7,874	1	22
여수시	14	2,995	354	14,416	4	238
순천시	8	3,007	308	15,596	1	200
나주시	6	1,749	199	6,435	0	0
광양시	14	1,075	323	10,345	1	3
담양군	10	2,514	155	4,762	2	22
곡성군	14	208	208	2,937	1	17
구례군	5	433	171	3,015	2	426
고흥군	8	1,280	186	4,693	3	1,113
보성군	3	803	160	5,211	0	0
화순군	8	1,786	126	7,796	2	1,000
장흥군	10	654	162	4,460	6	531
강진군	3	51	202	3,446	0	0
해남군	17	390	236	8,206	2	10
영암군	5	1,119	216	2,478	1	11
무안군	10	560	148	3,023	1	372
함평군	12	423	209	2,850	1	8
영광군	17	2,095	181	4,748	1	20
장성군	13	2,862	146	4,006	0	0
완도군	12	139	252	8,635	2	21
진도군	10	904	158	4,789	3	20
신안군	7	373	144	6,154	3	12
전체	231	30,360	4,825	216,217	41	4,363

○ 미협의 사업은 총 41개로 사업 규모는 44억 수준임. 지역별 미협의 사업수는 평균 3.1개로 나타났으며 장흥군이 6개로 가장 많았음. 예산 규모 면에서 고흥군(11억1천만원), 화순군(10억원), 장흥군(5억3천만원) 순으로 높았음.

○ 미협의 사업은 복지관련 사업 담당과가 19개로 보건(14개), 경제(4개) 등에 비해 많았으며 타 광역시에 비해 보건과 관련된 사업이 14개로 그 수가 많게 나타났음.

〈표 3-2-42〉 미협의 사업 목록(전남)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보훈사업 지원	독립유공자유족진료비지원	308-01	지원단가 인상
2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시설아동대학진학자금	308-01	지원단가 인상
3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자체)	아동그룹홈보호아동지원 (생활용돈,참고서비,교육비등)	308-01	지원단가 인상
4	일제강점기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제강점기여자근로 정신대 피해자 지원	308-01	지원단가 인상
5	출산지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	307-01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6	여성장애인 컴퓨터 및 자수교실 운영	여성장애인 컴퓨터 및 자수교실 운영	307-11	신설 사업
7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영구임대주택 보안등 공동전기료지원(3개소)	301-01	신설 사업
8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2016년도 서민층 가스안전 장치(타이머콕)보급사업(자체사업)	403-02	신설 사업
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자체 사업)	308-10	신설 사업
1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500명)	308-10	신설 사업
11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중증장애인유료방송요금지원	301-01	신설 사업
12	저소득 아동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301-01	신설 사업
13	저소득 아동지원	디딤씨앗통장적립지원	301-01	신설 사업
14	아동복지사업 지원	교재교구 구입비	307-11	신설 사업
15	고령화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화장장사용료 지원	301-01	지원단가 인상
16	호국정신 계승	참전유공자 지원	301-11	지원대상 확대
17	국가유공자 유족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1-11	지원대상 확대
18	모자보건 관리	출산장려금지원	301-01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19	모자보건 관리	임산부 산전관리 초음파검사	307-05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20	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	301-01	지원기간 변경
21	국도군정시책	범죄피해자위로금	301-11	신설 사업
22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	농어촌신생아양육비(첫째아)	301-01	신설 사업
23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	농어촌신생아양육비(둘째아)	301-01	지원방법, 단가변경
24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다자녀 산모도우미 지원(셋째아이상)	307-01	신설 사업
25	탄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출산육아용품 지원	301-01	신설 사업
26	다둥이 출산 지원 사업	다둥이 가정 출산 지원	301-01	신설 사업
27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1-01	지원단가 인상
28	치매상담센터운영(자체)	치매노인배회감지기기기구입	307-01	신설 사업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29	치매상담센터운영(자체)	치매노인배회감지기 사용료	307-01	신설 사업
30	저소득층 가스안전 장치 보급사업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403-02	신설 사업
31	보훈관리및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01-01	지원단가 인상
32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출생아축하선물지급(기저귀)	301-01	신설 사업
33	노인 건강복지 지원	이동세탁서비스 운영지원	307-11	신설 사업
34	장애인복지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301-01	신설 사업
35	어려운 이웃 지원	불우계층자녀 교복지원사업(16년시책사업)	307-01	신설 사업
36	출산장려지원	임신축하물품구입	301-01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37	출산장려지원	출산축하물품구입	301-01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38	출산장려지원	난임부부의료비지원사업(자체)	307-01	신설 사업
39	장애인 단체 후원 및 각종행사 지원	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	307-11	신설 사업
40	장애인 자립지원	인권피해자 사후지원 (의료비,의류구입비 등)	301-01	신설 사업
41	장애인 자립지원	인권피해자 한시적 시설 이용지원(입소비용)	301-11	신설 사업

15. 경북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사회보장사업 현황

○ 경북 지역의 2016년 자체 사회보장사업 수는 5,395개이며, 예산은 3,736억 원으로 2015년의 3,351억 원에 비해 증가함.

– 지역별 자체 사회보장사업 수는 경상북도 도청이 525개(9.7%), 포항시 337개(6.2%), 구미시 309개(5.7%)로 많았으며, 군 단위에서는 청송군이 222개(4.1%)로 많았음.

– 도청의 자체사업 예산은 1,881억 원, 50.4%로 경북지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10개 시의 예산 합은 1,152억 원으로 30.9%, 13개 군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예산의 합은 701억 원으로 18.8%를 차지함.

□ 사업 변동의 현황

○ 경북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동결 및 감액 사업 수는 3,763개로 69.7%를 차지하여 약 2/3의 수준이며, 신설 및 증액 사업 수는 1,632개로 30.3%로 동결 및 감액 사업의 비중이 큰데, 이는 경북 지역의 전반적인 경향임.

– 동결 및 감액 사업의 예산 합은 2,383억 원으로 63.8%이며, 신설 및 증액 사업 예산 합은 1,352억 원으로 36.2%임.

• 경북 도청의 동결 및 감액 사업은 62.5%(328개), 예산은 78.1%(1,468억 원)로 동결 및 감액 사업의 수와 예산액 모두 60%이상으로 자체 사업의 예산 편성이 비교적 소극적임을 의미함.

– 신설 및 증액사업이 많은 지역(자체 사업의 40% 이상)은 군위군, 의성군, 고령군이며, 동결 및 감액 사업 수가 많은 지역(자체사업의 75% 이상)은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상주시, 청도군.

• 예산에서 신설 및 증액사업 예산의 비중이 높은 지역(60%이상인 지역)은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울진군이며, 동결 및 감액 사업

예산 비중이 높은 지역(70% 이상)은 도청, 경주시, 상주시, 청도군 임.

〈표 3-2-43〉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경북)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525	188,196	81	8,662	116	32,643	277	29,964	51	116,927
포항시	337	15,275	34	326	45	6,280	228	5,738	30	2,930
경주시	307	13,053	36	1,156	35	1,979	135	3,223	101	6,695
김천시	249	13,684	57	2,110	28	4,069	143	5,094	21	2,411
안동시	251	14,725	50	2,119	42	4,322	144	5,239	15	3,045
구미시	309	16,721	41	2,634	56	8,167	187	4,783	25	1,137
영주시	226	11,458	21	3,184	62	1,222	110	2,947	33	4,105
영천시	237	6,752	26	836	17	2,136	78	2,173	116	1,607
상주시	261	5,646	19	338	39	1,202	176	2,622	27	1,485
문경시	194	6,871	35	1,433	33	3,020	103	1,810	23	607
경산시	225	11,103	22	1,502	38	5,441	132	2,708	33	1,452
군위군	163	3,693	34	742	33	1,882	79	486	17	583
의성군	180	8,900	48	2,678	25	3,447	78	2,328	29	446
청송군	222	7,384	41	552	34	4,553	119	1,382	28	899
영양군	183	3,987	26	990	23	510	110	1,505	24	983
영덕군	200	3,086	39	856	22	352	88	894	51	984
청도군	215	3,120	28	396	25	511	140	2,064	22	148
고령군	167	2,600	24	728	45	677	73	569	25	625
성주군	177	6,233	29	307	25	3,278	93	2,398	30	250
칠곡군	217	3,307	26	629	30	1,252	109	729	52	698
예천군	142	4,628	6	190	14	2,477	89	1,289	33	672
봉화군	137	3,241	8	336	31	1,111	92	1,513	6	280
울진군	161	16,284	26	9,574	20	1,335	85	3,488	30	1,887
울릉군	110	3,679	23	105	14	982	54	2,090	19	502
전체	5,395	373,627	780	42,384	852	92,848	2,922	87,037	841	151,359

나. 미협의 사업

○ 협의대상으로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한 사업은 235개(예산은 239억)

○ 지자체 의견을 검토한 결과, 미협의 사업은 총 33개로 예산은 20억 수준임.

- 도 본청의 미협의 사업은 3개(예산 규모 약 1억), 시 단위가 10개 사업(약 10억), 군 단위가 20개 사업(약 9억)이었음.
- 사업 수는 고령군(4개), 경북 도청, 경주시, 영주시, 의성군, 영양군, 성주군

(이상 3개)이 많았고, 예산 규모는 안동시(8억), 고령군과 성주군(2억)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2-44〉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경북)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34	3,113	491	185,083	3	127
포항시	7	2,141	330	13,133	1	36
경주시	14	1,171	293	11,882	3	54
김천시	7	459	242	13,225	1	4
안동시	13	2,006	238	12,719	1	822
구미시	9	794	300	15,927	1	75
영주시	15	652	211	10,805	3	64
영천시	7	271	230	6,482	0	0
상주시	4	107	257	5,539	0	0
문경시	11	880	183	5,991	0	0
경산시	6	2,713	219	8,391	0	0
군위군	4	546	159	3,147	0	0
의성군	11	1,735	169	7,166	3	147
청송군	7	872	215	6,512	2	70
영양군	10	484	173	3,503	3	175
영덕군	13	663	187	2,423	0	0
청도군	5	19	210	3,101	2	6
고령군	12	572	155	2,027	4	215
성주군	11	465	166	5,768	3	250
칠곡군	8	679	209	2,628	0	0
예천군	8	1,947	134	2,681	2	26
봉화군	6	463	131	2,777	0	0
울진군	9	888	152	15,396	1	3
울릉군	4	345	106	3,334	0	0
전체	235	23,985	5,160	349,642	33	2,074

○ 미협의 사업은 33개이며, 복지관련 사업이 18개(약 55%)로 가장 많았고, 보건 관련 사업이 7개(약 21%), 보훈사업이 3개(약 9%) 등이며, 이외에 안전, 이동, 환경, 장사 사업 등이 포함됨.

- 사업 수를 기준으로 대상 별 비율은 노인 지원 사업이 약 21%로 가장 많았고, 아동, 저소득층, 출산 가정 지원 사업이 각 12%로 나타남.
- 예산 규모 기준의 대상 별 비율은 노인 지원 사업이 21%로 가장 많았고, 아동 지원 사업 예산이 약 15%, 출산 가정 지원 사업이 6.5%의 비율을 보임.

〈표 3-2-45〉 미협의 사업 목록(경북)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농아인용영상전화기지원사업	308-01	신설 사업
2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복지전문성제고지원	308-01	신설 사업
3	치매어르신안전지킴사업	치매어르신안전지킴사업	307-05	신설 사업
4	장애인복지 지원	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307-11	신설 사업
5	노인복지증진 일반	취약계층 일시보호비 지원	307-01	신설 사업
6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가족시설입소자 및 한부모세대교복비	301-01	지원단가 증액
7	저출산 대책관리	임산부 기형아검사비 지원	301-01	신설 사업
8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취득 지원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취득 지원	307-05	신설 사업
9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콜센터 관리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전출금	309-01	신설 사업
10	기형아검사쿠폰발급장운영	기형아검사비 지원	307-01	신설 사업
11	여성의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다양한 세상 프로젝트(보조율 90%)	307-02	지원 사업 추가
12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정 모국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	402-01	신설 사업
13	보육시설 지원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301-01	신설 사업
14	노인복지지원	노인목욕비지급	301-01	지원단가 증액
15	청소년선도 육성지원	불우청소년 선도 지원사업	307-02	신설 사업
16	치매관리사업	치매노인 GPS사용료지원	301-01	신설 사업
17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보금자리단장지원사업(재료비)	307-02	신설 사업
18	장례식장운영관리	화장장려보조금지원	301-11	신설 사업
19	저소득층 생활지원	저소득 긴급구호양곡·피복·취사연료비	307-01	지원 서비스 확대
20	노인복지지원	화장장려금지원	301-11	신설 사업
21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노령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403-02	신설 사업
22	결핵환자영양제구입	결핵환자영양제구입	307-01	지원대상자 확대
23	자활기금	자활사업운영지원	307-05	신설 사업
24	보훈선양사업	보훈예우수당	301-01	지원단가 증액
25	보훈선양사업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301-01	신설 사업
26	보훈선양사업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1-01	지원단가 증액
27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지원	차액보육료 지원	307-11	지원대상자 확대
28	출산·육아행복플러스	아기보험가입	301-01	지원 대상 증가
29	어린이집지원(군비)	다문화보육아동본인부담금지원	301-01	신설 사업
30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이동목욕사업단지원	307-11	신설 사업
31	출산장려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검사 지원비	307-01	신설 사업
32	출산장려 지원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301-01	지원서비스 확대
33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지원	301-01	신설 사업

16. 경남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사회보장사업 현황

○ 경상남도 자체 복지사업은 총 4,755개, 384,378백만 원(2016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은 159,692백만 원 증가

- 사업 수를 지원으로 창원시로 571개, 도청 420개, 진주시 348개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의령군은 155개로 가장 적은 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예산 기준으로 보면, 본청이 117,854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7%를 차지했고, 창원시 21.1%(80,935백만), 양산시 6.2%(23,667백만)로서, 세 지역이 경남 전체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 변동의 현황

○ 2015년, 2016년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본예산 기준)에 따른 자체사업의 변동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신설된 사업은 총 545개, 52,491백만 원, 2015년에 비해 증액된 사업은 총 707개, 147,937백만 원, 전년도에 비해 동결된 사업은 총 2,856개, 106,623백만 원, 감액된 사업은 총 647개, 77,327백만 원으로 확인됨.

- 신설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양산시 52개, 12,841백만 원, 창원시 51개, 8,726백만 원, 진주시 45개, 764백만 원 순이었음.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남해군 12개, 293백만 원, 거창군 12개, 511백만 원, 의령군 15개, 1,992백만 원으로 나타남.
- 증액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창원시 총 79개, 37,581백만 원. 창원시에 이어 본청 75개, 49,816백만 원, 통영시 49개, 3,550백만 원 순이었음.

〈표 3-2-46〉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경남)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420	117,854	41	12,721	75	49,816	265	29,831	39	25,486
창원시	571	80,935	51	8,726	79	37,581	351	22,073	90	12,554
진주시	348	16,726	45	764	44	6,125	206	5,182	53	4,656
통영시	218	9,433	20	460	49	3,550	123	2,814	26	2,609
사천시	303	12,669	23	418	35	6,077	217	4,994	28	1,180
김해시	265	13,708	32	766	46	5,558	145	1,901	42	5,482
밀양시	190	12,122	21	2,401	28	2,771	108	3,922	33	3,028
거제시	226	13,160	43	2,195	39	7,590	113	1,663	31	1,713
양산시	323	23,667	52	12,841	46	4,141	189	5,470	36	1,215
의령군	155	5,594	15	1,992	17	515	94	1,221	29	1,867
함안군	164	9,067	21	1,533	28	2,842	90	1,742	25	2,950
창녕군	219	13,051	25	1,586	35	6,381	137	3,287	22	1,797
고성군	175	7,648	23	1,114	27	3,449	115	2,145	10	941
남해군	159	5,977	12	293	19	1,920	106	2,171	22	1,594
하동군	241	8,304	29	730	25	1,531	157	3,232	30	2,811
산청군	172	6,506	28	488	37	1,730	71	2,299	36	1,989
함양군	170	7,687	25	1,031	22	1,234	106	5,150	17	272
거창군	192	10,580	12	511	25	2,567	112	4,140	43	3,363
합천군	244	9,689	27	1,923	31	2,559	151	3,387	35	1,820
전체	4,755	384,378	545	52,491	707	147,937	2,856	106,623	647	77,327

나. 미협의 사업

□ 협의대상 사업 현황 결과

○ 신설 또는 증액사업으로서 협의대상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은 총 228개, 74,058백만 원으로 이중 최종 미협의 사업은 총 25개, 3,159백만 원

– 지역별 미협의 사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본청(5개, 1,432백만), 통영시(1개, 26백만), 사천시(1개, 36백만), 밀양시(1개, 3백만), 양산시(2개, 165백만), 의령군(1개, 11백만), 창녕군(1개, 5백만), 고성군(1개, 200백만), 남해군(1개, 50백만), 하동군(1개, 14백만), 함양군(6개, 200백만), 거창군(3개,

867백만), 합천군(1개, 150백만)

〈표 3-2-47〉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경남)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도청	33	42,670	387	75,184	5	1,432
창원시	16	12,327	555	68,608	0	0
진주시	10	268	338	16,458	0	0
통영시	10	165	208	9,268	1	26
사천시	12	1,494	291	11,175	1	36
김해시	10	3,640	255	10,068	0	0
밀양시	8	418	182	11,703	1	3
거제시	10	1,513	216	11,647	0	0
양산시	13	1,301	310	22,366	2	165
의령군	2	27	153	5,568	1	11
함안군	7	584	157	8,483	0	0
창녕군	10	1,727	209	11,324	1	5
고성군	8	1,359	167	6,290	1	200
남해군	9	811	150	5,166	1	50
하동군	15	817	226	7,487	1	14
산청군	11	1,349	161	5,157	0	0
함양군	16	1,417	154	6,270	6	200
거창군	14	1,678	178	8,902	3	867
합천군	14	494	230	9,195	1	150
전체	228	74,058	4,527	310,320	25	3,159

□ 미협의 사업의 특성 분석

○ 사업 지원 대상을 9개 영역(저소득·취약계층, 영유아·아동·청소년, 노인, 임신·출산모, 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가족·다문화, 일반, 기타)으로 분류하여 사회서비스(평생사회안전망) 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대상 사업 2개, 영유아·아동·청소년 사업과 기타 대상 사업이 1개, 노인 대상 사업 6개, 여성·가족·다문화 대상 사업이 7개, 보훈 대상 사업 3개,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사업 5개로 확인됨.

○ 사업의 지원 목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영역 1개, 보건 영역 11개, 주거 영역 2개, 고용·일자리 영역 2개, 소득·생계 영역 2개, 출산 영역 1개, 기타 영역 6개로 나타났고, 복지업무 담당부서(복지노인정책과 등)의 사업이 16개로 보건소(7개), 보건(1개), 민원(1개)관련 부서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됨.

〈표 3-2-48〉 미협의 사업 목록(경남)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 사업	저소득 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	308-01	대상자 소득수준 변경
2	홀로어르신선풍기지원	홀로어르신 선풍기 지원	403-01	신설 사업
3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308-01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4	입양가정 지원(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도)	308-01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5	분만취약지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307-05	신설 사업
6	식사배달사업	식사배달사업	307-11	급여수준 변경
7	노인회 지원(기금)	노인회 지회장 및 부지회장 활동비 지원	307-03	급여수준 변경
8	노후생활안정	노인건강 진단	301-01	급여수준 변경
9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307-01	신설 사업
10	장애아동 재활치료 (물리, 직업, 언어)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 (물리, 직업, 언어)서비스	307-05	신설 사업
11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307-01	신설 사업
12	포괄건강증진사업	당뇨합병증 안정 및 신장검사비	307-01	신설 사업
13	자활지원	자활사업 민간융자금	501-01	신설 사업
14	사랑의 집짓기	사랑의 집짓기 개보수	402-01	급여수준 변경
15	임산부 건강관리	태아기형아 등 검사비지원	307-01	신설 사업
16	재가환자 및 장수노인 지원사업	치매노인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307-01	신설 사업
17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자체)	산후조리비용 지원	307-01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18	둘째아 출산 산모 한방 첩약지원 사업	둘째아 출산산모 한방첩약지원	307-01	신설 사업
19	보훈단체관리	보훈명예수당	301-01	신설 사업
20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훈련비 지급	301-01	신설 사업
2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전기배선공사)	401-01	신설 사업
22	보훈단체 지원	유족회 및 미망인회 명예수당	301-01	급여수준 변경
23	참전유공자 위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301-01	급여수준 변경
24	위기가정 지원사업	제도권밖 의료비지원사업	301-01	신설 사업
25	지역 건강증진	틀니.가교 지원사업	307-02	급여수준 변경

17. 제주도

가.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사업 변동

○ 제주 지역에서 2016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회보장 사업 수는 892개이며, 예산은 1,428억원으로 2015년의 1,046억원에 비해 증가함.

○ 세출예산사업명세서(본예산 기준)의 2015년 예산액과 2016년 예산액의 차액(예산변동)을 기준으로 해당사업을 신설, 증액, 동결, 감액사업으로 분류.

- 이에 따라 자체사업의 변동 증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6년도에 신설된 사업은 총 166개, 276억원, 2015년에 비해 증액된 사업은 총 292개, 745억원, 전년도에 비해 동결된 사업은 총 354개, 211억원, 감액된 사업은 총 80개, 197억원으로 확인됨.
- 이중 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 사업과 증액 사업을 활용. 전체 사업 중 신설 또는 증액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 수 기준 52%, 예산 기준 71%로 나타남.

〈표 3-2-49〉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제주)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사업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제주	892	142,888	166	27,569	292	74,520	354	21,084	80	19,715

나. 미협의 사업

○ 사회보장사업 892개 중, 협의대상으로 채택된 사업은 131개이며, 예산 규모는 246억원 수준임.

○ 검토 결과, 미협의 사업은 총 16개로 사업 규모는 42억원 수준임.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사업을 위해 전년도 대비 적극적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변동을 통해 본 미협의 사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표 3-2-50〉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제주)

(단위: 개, 백만 원)

지자체	협의대상 여부				미협의 사업	
	협의대상(지자체 확인)		협의 제외대상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제주	131	24,615	761	118,273	16	4,262

○ 미협의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복지관련 사업이 9개로 약 56%로 가장 많았고, 보건 사업 2개, 일자리 관련 사업 2개 등으로 나타남.

– 사업 수를 기준으로 대상별 비율을 보면 노인지원사업과 장애인 지원사업이 각 3개, 아동·청소년 사업과 다문화 가정 사업이 각 2개 등으로 나타남.

– 예산을 기준으로 대상별 비율은 장애인 지원 사업이 약 15%, 다문화 지원 사업 약 3%, 노인지원사업 예산이 약 2% 의 비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3-2-51〉 미협의 사업 목록(제주)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편성목	사유
1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도민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307-02	신설 사업
2	주택행정 효율화 추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301-01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3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사업지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위탁 운영비	307-05	대상자 확대
4	수눌음 정신의 복지사업 추진	영구임대아파트(동홍3단지,아라) 승강기 유지관리비	307-11	지원 지역 추가
5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배변장애가 있는 척수장애인 침대매트리스 클리닝 사업	307-11	신설 사업
6	장애인가정 도우미지원 사업	장애인가정 도우미지원사업 운영	307-11	신설 사업
7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중고령 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새일센터)	307-11	신설 사업
8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307-11	신설 사업
9	건강한 가족만들기사업 지원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육성사업	307-02	신설 사업
10	결핵관리사업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307-05	지원 대상 확대
11	재가서비스 확충	시설수급자 간병비 지원	301-01	지원 대상 확대
12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 육성	어려운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07-02	지원서비스 수준 확대
13	사회단체육성	독거노인 자매결연사업(정액)	307-02	신설 사업
14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수급자 간병비	301-01	지원단가 인상
15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301-01	지원대상 기준 변경
16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취약계층아동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307-01	신설 사업

제3절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에 대한 분석

1. 사업의 담당조직 및 유형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미협의 사업 현황

○ 미협의 사업 434개를 자치단체유형별로 구분하면 군이 142개로 가장 많고, 시가 131개, 광역시·도는 97개, 그리고 자치구는 64개의 순

○ 유형별 자치단체 수(광역시·도 17, 시 75, 군 82, 자치구 69)를 고려한다면, 미협의 사업은 광역시·도가 가장 많고, 자치구가 가장 적으며, 시와 군은 비슷한 수준임

– 미협의 사업의 수는 광역 시·도 5.4개, 시 1.8개, 군 1.7개, 자치구 0.9개

<표 3-3-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미협의 사업 현황

(단위: 개)

시도	광역	시	군	자치구	합계
서울	4	–	–	32	36
부산	6	–	5	8	19
대구	16	–	2	6	24
인천	7	–	0	5	12
광주	2	–	0	4	6
대전	1	–	–	4	5
울산	3	–	0	5	8
세종	3	–	–	–	3
경기	16	57	3	–	76
강원	6	17	24	–	47
충북	3	3	12	–	18
충남	2	29	24	–	55
전북	0	3	7	–	10
전남	4	7	30	–	41
경북	3	10	20	–	33
경남	5	5	15	–	25
제주	16	0	–	–	16
합계	97	131	142	64	434

□ 미협의 사업의 담당부서 유형별 현황

○ 본 조사의 대상이 사회보장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미협의 사업 434개 중 270개(82.2%)가 사회복지업무 부서의 사업

○ 반면에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의료 담당부서와 기타 관련부서의 사업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보건의료 업무부서는 95개(21.9%), 기타 관련부서는 69개(16.1%) 사업

○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부서(보건소 포함)와 기타 관련부서에 대해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대한 정보공유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표 3-3-2> 미협의 사업의 담당부서별 현황

(단위: 개)

시도	사회복지 담당부서	보건의료 담당부서(보건소)	기타업무 담당부서	합계
서울	24	6	6	36
부산	10	5	4	19
대구	13	5	6	24
인천	6	3	3	12
광주	4	0	2	6
대전	4	0	1	5
울산	5	1	2	8
세종	3	0	0	3
경기	51	11	14	76
강원	37	8	2	47
충북	11	5	2	18
충남	33	12	10	55
전북	8	1	1	10
전남	16	17	8	41
경북	22	9	2	33
경남	16	8	1	25
제주	7	4	5	16
합계	270	95	69	434

□ 미협의 사업의 유형별 현황

○ 전체 미협의 사업 중 60.1%인 261개가 신설 사업이며, 반면에 39.9%인 173개 사업이 변경(증액) 사업으로 나타남

○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에서 신설 사업과 증액 사업의 비율은 50.6(9,526개) : 49.4(9,316개)

- 신설 사업의 전체 비중에 비해 미협의 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이는 사업 신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
- 기타 관련부서 사업의 경우 69개 미협의 사업 중에서 신설 사업이 55개, 변경사업이 14개로 신설 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음

<표 3-3-3> 미협의 사업의 유형별 현황

(단위: 개)

시도	신설 사업	변경(증액) 사업	합계
서울	30	6	36
부산	12	7	19
대구	12	12	24
인천	1	11	12
광주	5	1	6
대전	4	1	5
울산	4	4	8
세종	3	0	3
경기	45	31	76
강원	23	24	47
충북	11	7	18
충남	35	20	55
전북	6	4	10
전남	25	16	41
경북	23	10	33
경남	14	11	25
제주	8	8	16
합계	261	173	434

2. 사업의 대상 및 지원목적별 현황

□ 미협의 사업의 대상별 현황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74개(17.1%), 영유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71개(1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에 기타 및 일반대상자를 제외하고 보훈 (47개, 10.8%), 장애인 (42개, 9.7%), 여성·가족·다문화 (40개, 9.2%) 대상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음

<표 3-3-4> 미협의 사업의 지원대상별 현황

(단위: 개, %)

대상	빈도	비율(%)
저소득·취약계층	74	17.1
영유아·아동·청소년	71	16.4
노인	60	13.8
임신·출산모	60	13.8
보훈대상자	47	10.8
장애인	42	9.7
여성·가족·다문화	40	9.2
일반	26	6
기타	14	3.2
합계	434	100

□ 미협의 사업의 지원목적별 현황

○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434개 사업 중에서 소득·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81개(1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돌봄 47개(10.8%), 출산지원 46개(10.6%)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지원을 합하면 65개(15.2%)로 나타남

○ 반면에 보건 및 건강증진과 안전 관련 사업은 각각 17개(3.9%), 급식지원이 11개(2.5%), 장례지원 10개(2.3%) 그리고 피해보상 8개(1.8%)로 미협의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음

<표 3-3-5> 미협의 사업의 지원 목적별 현황

(단위: 개, %)

지원 목적	빈도	비율(%)
소득·생계 지원	81	18.7
돌봄	47	10.8
출산 지원	46	10.6
의료(비) 지원	33	7.6
고용·일자리	32	7.4
보육·양육	23	5.3
주거 지원	22	5.1
교육 지원	20	4.6
임신	19	4.4
사회통합	18	4.2
보건	17	3.9
안전	17	3.9
급식	11	2.5
장례 지원	10	2.3
피해보상	8	1.8
기타	30	6.9
합계	434	100

3. 예산의 편성목별 현황

□ 미협의 사업의 편성목별 현황

○ 미협의 사업을 예산 편성목별로 구분한 결과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이 사업 수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35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31.1%를, 그리고 예산 규모는 48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에 해당

○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외에 사업 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3개 사업(14.5%), 의료 및 구료비(307-01) 54개 사업(12.4%), 민간경상보조(307-02) 48개 사업(11.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38개 사업(8.8%), 기타보상금(301-11) 34개 사업(7.8%), 그리고 민간위탁금(307-05)

25개 사업(5.8%)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6> 미협의 사업의 예산 편성목별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

편성목	미협의 사업(A)		2016년 예산(B)		B/A (백만 원)
	사업 수	비율(%)	백만 원	비율(%)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135	31.1	48,420	52.0	35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3	14.5	2,624	2.8	42
의료 및 구료비(307-01)	54	12.4	1,083	1.2	20
민간경상보조(307-02)	48	11.1	3,233	3.5	67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38	8.8	23,186	24.9	610
기타보상금(301-11)	34	7.8	5,182	5.6	152
민간위탁금(307-05)	25	5.8	6,255	6.7	250
기타	37	8.5	3,111	3.3	84
합계	434	100.0	93,093	100.0	214

□ 미협의 사업의 예산 현황

○ 미협의 사업의 전체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232억(24.9%), 민간위탁금(307-05) 63억(6.7%), 기타보상금(301-11) 52억(5.6%), 민간경상보조(307-02) 32억(3.5%), 사회복지사업보조 26억(2.8%), 의료 및 구료비(307-01) 11억(1.2%)의 순임

○ 미협의 사업의 사업별 예산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이 6.1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광역 시·도가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임

○ 전체사업 수와 전체예산 규모를 비교하여 사업별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제외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359백만 원, 민간위탁금(307-05) 250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며,

○ 반면에 의료 및 구료비(307-01) 20백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2백만 원, 민간경상보조(307-02) 67백만 원으로 사업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4. 미협의 사업의 다빈도 사례

□ 사업 대상 및 목적별 구분에 따른 미협의 사업의 다빈도 사례

○ 미협의 사업의 대상-목적별 구분에 따른 다빈도 사례는 '보훈대상자-소득·생계지원'이 47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모-출산지원'이 41개로 나타남

- 임신과 출산 지원을 합하면 산모에 대한 지원이 60개로 가장 높음.
- '영유아(아동)-보육·양육지원' 영역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및 급식 지원이 22개 사업으로 나타남.
-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은 17개 사업으로 나타남.

○ 이들 사업은 지방보훈청, 보건소, 교육청, LH 등 지방주택공사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통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아닌 경우가 빈번함.

- 사회복지영역에서 사회보장사업의 확대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은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광의의 사회보장사업 영역에서 본인들의 업무가 광의의 사회보장사업에 포함되는 업무라는 인식은 부족함.
- 따라서 사회보장사업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부서 및 사업에 대해서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에 대한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미협의 사업의 빈도와 분포는 신설·변경 협의 안건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3-7> 미협의 사업의 지원 대상-목적별 현황

(단위: 개)

대상별 / 목적별	합계	저소득 취약 계층	장애인	일반	여성 가족 다문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산모	보훈 대상자	노인	기타
합계	434	74	42	26	40	71	60	47	60	14
교육지원	20	1	1	0	6	11	0	0	0	1
급식지원	11	0	0	0	0	11	0	0	0	0
돌봄	47	8	15	0	1	0	0	0	23	0
보건	17	3	1	6	0	3	0	0	4	0
보육·양육	23	0	0	0	3	20	0	0	0	0
사회통합	18	0	7	0	9	0	0	0	0	2
소득생계지원	81	17	5	0	1	9	0	47	1	1
안전	17	10	0	1	0	0	0	0	6	0
의료비 지원	33	5	4	9	1	3	0	0	9	2
고용·일자리	32	11	7	6	5	1	0	0	2	0
임신	19	0	0	0	0	0	19	0	0	0
장례지원	10	2	0	0	0	0	0	0	8	0
주거지원	22	17	0	0	2	0	0	0	3	0
출산지원	46	0	2	0	3	0	41	0	0	0
피해보상	8	0	0	0	0	0	0	0	0	8
기타	30	0	0	4	9	13	0	0	4	0

□ 다빈도 사업을 지원 대상과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이러한 목록의 예시는 향후 협의 조정 미이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침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보훈대상자

○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사업 중 다빈도 사업은 주로 수당 등 현금성 급여로 나타남.

- 보훈처 사업은 별도의 전달체계(예, 지방보훈청)를 통해 사업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때문에 복지주무부서가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특히 지방보훈청의 업무 담당자가 해당 사업들이 사회보장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협의조정 절차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

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집행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현금성 수당이 존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비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협의·조정 대상 사업에 해당함.

-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협의 조정 미이행 사업으로 교부세 감액 및 환수의 우려가 있음.

<표 3-3-8> 보훈사업의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시도	사업
부산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및 유족) 보상
경기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경비, 참전유공자 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고령 국가유공자 돌봄사업
강원	참전 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 장제비,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지원, 참전유공자지원시책추진, 참전수당(참전용사),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충북	미망인복지수당,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충남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전남	독립유공자유족진료비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경북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임산부(산모)

○ 출산 후 지원은 임신·출산에 대한 현금 지원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나, 출산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확대 지원 등도 빈도가 높음.

○ 출산 전 지원은 주로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과 검사비용 지원임.

<표 3-3-9> 임산부 대상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지원목적	시도	사업
출산 후 지원	서울	단태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 쌍생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다둥이 가정 산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부산	출산장려계정 우수사업 공모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인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바우처기금 예탁
	대전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경기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출산장려 지원사업,
	강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지원금, 임산부산후조리비용지원
	충북	출산축하금 지원
	충남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장려금, 아기 디엔에이카드 발급 임산부 및 아동건강 증진사업(시비추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 분만 이송비 지원, 출산지원금 및 임신축하금,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전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신축하물품구입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육아용품 지원, 출생아 축하선물 지급(기저귀)
	경북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경남	산후조리비용 지원, 둘째아 출산산모 한방첩약지원
출산 전 지원	서울	철분제, 엽산제 구매(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대구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기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 한방 난임 지원, 태아기형 선별검사 쿠폰 지원
	강원	태아기형아 검사
	충남	난임부부 한방치료사업, 가임기여성 엽산제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등 구입
	전북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첩약 및 한압요법등)
	전남	임산부 철분제구입, 임산부 산전관리 초음파검사,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사업(자체)
	경북	임산부 기형아검사비 지원, 기형아검사비 지원
	경남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양육 지원) 및 교육·급식 지원

○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 및 양육비 지원은 주로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액에 대한 추가 지원금과 입양 및 위탁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나타남.

-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추가보육료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과 맞춤형 보육 등과 연계하여 협의·조정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을 계획하기 위한 제반 컨설팅이 필요함.

○ 교복비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 등은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표 3-3-10> 아동·청소년 대상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지원목적	시도	사업
보육 및 양육 지원	서울	입양 축하금,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대구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인천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대전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경기	어린이집 아동 관내 체험활동비 지원
	강원	가정위탁양육비지원
	충북	추가보육료 지원
	충남	넷째이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지원, 아이돌보미지원(넷째자녀)
	전남	둘째아 이상 양육 지원, 농어촌신생아양육비(첫째아), 농어촌신생아양육비(둘째아)
	경북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지원, 00아기보험가입
	경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교육 및 급식 지원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쌀 등 급식지원, 차상위복지대상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부산	평일·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대구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대학생 저소득층 학습 멘토지원 사업
	광주	꿈을 만드는 청소년 잡-스케치, 요보호아동수학여행경비
	울산	아동급식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경기	결식아동 급식단가 보조(자체), 국민기초 고등학생 저녁급식비 지원
	강원	초·중·고등학생수학여행경비지원
	충남	아동급식 시비추가지원금
	전남	시설아동대학진학자금, 아동그룹홈보호아동지원, 교재교구 구입비, 불우계층자녀 교복지원사업

□ 노인 대상 돌봄, 의료, 장례 지원

○ 노인 대상 사업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앙부처의 노인돌봄서비스의 보충적 성격의 지원이 빈번함.

– 특히 안전바 설치, 디지털 가스안전장치, 배회감지기, GPS 사용료 지원 등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최근 확대하고 있는 사업임.

– 이러한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된다면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할 수도 있음.

– 이 외에도 목욕비 지원은 수요자에게 지원될 때와 공급자에게 지원될 때 고

려해야 할 요건들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협의·조정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3-3-11> 노인 대상 돌봄 및 요양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시도	사업
서울	효사랑안마서비스 사업, 시각장애인 효 안마사업, 독거어르신가정 안전바 설치, 독거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부산	독거노인 안전강화사업
대구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지원, 경로우대목욕장보상, 경로우대목욕료지원, 노인 의치 사후관리비,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보상, 경로우대 목욕장 하수도료 지원,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인천	의치보철사후관리비
광주	저소득층공영장례서비스지원
경기	홀몸어르신 평생돌보미 사업 실버케어센터, 틀니시술 및 수리비 지원, 화장장려금, 독거노인 디지털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강원	노인무료의치시술비, 의치보철의료비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사망자 장제비,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무료의치 보철사업 사후 관리비,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충남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전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추가지원, 화장장려금
전남	화장장사용료 지원, 치매노인배회감지기 기기구입, 치매노인배회감지기 사용료
경북	치매어르신안전지킴사업, 노인목욕비지급, 치매노인GPS사용료지원, 화장장려보조금지원, 노령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이동목욕사업단지원
경남	홀로어르신 선풍기 지원,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노인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틀니가교 지원사업
제주	독거노인 자매결연사업(정액)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소득, 생계, 주거지원

○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들 급여는 대상 선정 기준과 급여액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이와 유사한 사업의 확대는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지적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공급자에 대한 지원과 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서로 다른 사업으로 구성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미이행 사업으로 주거 지원 사업이 있음.

– 영구임대 및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복지주무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신설·변경 사업임에도 협의·조정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함.

<표 3-3-12> 저소득 대상 맞춤형 지원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시도	사업
서울	월세임대료보조지급, 저소득층 현역병 휴가지원금, 안심주택 개보수비, 안심주택 가구 및 집기류 구입
부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 시설입소자 지원(기금),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대구	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
울산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지원
경기	공공하수도사용료지원,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강원	노숙인 등 보호
충북	사랑의 연탄나누기,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
충남	취약계층 에너지나눔 사회공헌 활동,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따뜻한 마음나눔 집수리지원, 행려사망자 수송비 및 장제비
전북	주거환경개선
전남	영구임대주택 보안등 공동전기료지원
경북	취약계층 일시보호비 지원, 취약계층보금자리단장지원사업, 저소득 긴급구호 양곡·피복·취사연료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지원
경남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식사배달사업, 사랑의 집짓기 개보수, 주거환경개선(전기배선공사)
제주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비, 어려운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보건소 사업의 미협의 사업 예시

○ 보건소라는 별도의 전달체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산모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들 사업은 각각의 정책 대상별 사업에서 제시한 바와 동일함.

<표 3-3-13> 보건소 사업의 미이행 다빈도 사업 예시

지원대상	시도	사업
산모	서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 다둥이 가정 산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철분제·엽산제 구매(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부산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구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인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바우처기금 예탁
	경기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 한방 난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지원금, 태아기형 선별검사 쿠폰 지원
	강원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산후조리비용지원, 태아기형아검사
	충북	출산축하금 지원
	충남	출산지원금 및 임신축하금, 가임기여성 엽산제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등 구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 분만 이송비 지원,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전북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전남	임산부 철분제구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자체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임산부 산전관리 초음파검사, 출산육아용품 지원, 임신축하물품구입, 난임부부의료비지원사업(자체)
	경북	임산부 기형아검사비 지원,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경남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둘째아 출산산모 한방첩약지원
노인	서울	어르신 한의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부산	한방치매관리(특화사업)
	대구	노인 의치 사후관리비
	대구	경로우대 목욕장 하수도료 지원
	인천	의치보철사후관리비
	경기	틀니시술 및 수리비 지원, 화장장려금
	강원	노인무료의치시술비, 의치보철의료비지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무료의치 보철사업 사후 관리비
	전남	치매노인배회감지기 기기구입, 치매노인배회감지기 사용료
	경북	치매어르신안전지킴사업, 치매노인GPS사용료지원
	경남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노인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틀니가교 지원사업

□ 기타 부서의 미협의 사업 예시

○ 복지주무부서 외 기타 부서에서 미협의 다빈도 사업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임.

– 타이머콕, 연탄나누기 사업 등은 안전과 관련된 부서 혹은 산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임.

– 이들 부서의 경우 전통적인 복지사업부서가 아닌 관계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의 내용이나 지침 등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음.

<표 3-3-14> 기타 부서의 미이행 다빈도 사업 예시

지원대상	시도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서울	월세임대료보조지급, 저소득층 전문기술인력 공공일자리사업
	부산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보급사업
	인천	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지원
	광주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보급사업
	울산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 사업,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지원
	경기	저소득층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따복공동체 융복합 사업 활성화 지원, 공공하수도사용료지원, 재난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
	충북	사랑의 연탄나누기(3가정)
	충남	취약계층 에너지나눔 사회공헌 활동,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스안전 차단기(타이머콕)설치, 따뜻한 마음나눔 집수리지원,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협의회 사업 보조
	전남	영구임대주택 보안등 공동전기료지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경남	주거환경개선(전기배선공사)
	제주	어려운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동 청소년 지원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쌀 등 급식지원
	부산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사업,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대구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학생 저소득층 학습 멘토지원 사업, 학교밖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학교밖 청소년 취업 지원, 학교밖 청소년 복지지원, 학교밖 청소년 복지지원(구군)
	대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법사랑위원회)
	경기	학교밖청소년자립지원, 국민기초 고등학생 저녁급식비 지원

제 4 장

미협의 사업 조사 개선 및 결과 활용 방안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결과 처리와 조사 개선 방안
제2절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4 미협의 사업 조사 개선 및 결과 활용 방안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결과 처리와 조사 개선 방안

1.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 미협의 사업 목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의요청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미협의 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구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③ 보건복지부장관은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미협의 사업에 대한 협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에도 신설·변경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시행을 재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

2. 현행 미협의 사업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 조사의 결과산출에 비해 투입(시간, 인력)이 과다

○ 미협의 사업에 대한 조사는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자체 예산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세출예산 세부사업명세서를 취합하고, 그 내용을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

□ 예산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

○ 예산서는 부서별(조직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의 형식으로 작성

- 예산편성 항목과 금액을 제외한 사업별 예산규모나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재
- 기능별 분류 역시 형식적으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사업 중 일부는 080 또는 090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으며, 따라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분류하는 것이 적지 않음

○ 예산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는 신설·변경 협의대상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미흡하고, 따라서 누락되는 정보의 손실과 제한적 영역에 대한 소극적 접근이 불가피

□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관련된 전산자료의 활용에 제약

○ 미협의 사업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수집과 자료 입력

○ 자료 수집과 입력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가장 유력한 해결책은 e-호조 시스템에서 예산자료를 일괄 추출하는 방안

- e-호조 시스템의 활용은 본예산 이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 및 결산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e-호조 시스템 활용은 자료 획득의 가능 여부를 별도로 하더라도 구조적인 제약이 있음

- 세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세부사업과 내역사업을 볼 수 없으며, 해당 사업 또는 항목에 대한 2개 년도 예산을 비교(연계)할 수 없음
- e-호조 시스템에서 추출한 정보로는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자료 활용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

2. 조사의 개선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수집 절차 간편화

□ 지방자치단체 예산자료 수집의 개선

○ 현행 방식(지방자치단체 예산서 활용)을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수집하는 절차를 간편화하는 방안 필요

-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수집하여 재분류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자료를 다운받는 방식은 시간 소모가 크며 과다한 인력 구성이 필요한 작업임.

○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 양식을 엑셀로 지정한다면 업무가 간편해질 수 있음.

(2)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 현행 조사대상 범위를 사회보장사업의 담당부서 또는 기능별 분류의 영역으로 한정

○ (현행) 해당 지자체의 모든 부서 → (변경) 해당 지자체의 복지 및 보건부서

○ (현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 (변경) 일반회계

○ (현행) 국가 사회보장사업과 유사한 모든 사업 → (변경) 기능별 분류의 080, 090 영역

□ 조사 대상 범위를 사회복지와 보건업무 담당 부서로 한정하는 방안

○ 사업의 범위가 전통적인 사회복지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고려한 사회보장

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사회보장사업을 사회복지와 보건 담당 부서가 하는 업무로 이해

○ 일반적 인식을 반영하고, 또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를 특정부서로 한정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으며, 조사 업무의 작업량이 실질적으로 축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안은 아님**

□ 조사 대상 범위를 일반회계로 한정하는 방안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그리고 저소득(빈곤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특정계층에 대한 목적성 사업을 위한 기금이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의료급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이 아니고, 기금에 의한 목적성 사회보장사업의 비중은 극히 미비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97~8%는 일반회계에 편입

⇒ **조사 대상 범위를 일반회계로 한정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 조사 대상 범위를 기능별 분류의 080, 090으로 한정하는 방안

○ 사회보장사업의 범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을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080과 090 영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사업 및 신설·변경 협의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타당성은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없음 : 예산서에서 기능별 분류를 확인할 수 없음**

(3)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축소하는 방안

□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미협의사업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지자체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2~3년을 주기로 조사

○ 기준 1 : 시·도 또는 권역

○ 기준 2 : 자치단체 유형(시·도, 시, 군, 자치구)

○ 기준 3 : 사회복지예산 비율

○ 기준 4 :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의 비율

○ 기준 5 :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재원의 비율

□ 시·도 또는 권역별 구분

○ 광역자치단체(시·도 본청)는 매년 조사를 실시

○ 기초자치단체는 '7개 특별·광역시, 8개 도' 또는 '중부권(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청), 남부권(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라, 경상)' 으로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하는 방안

-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수 : 7개 특별·광역시 – 74개, 8개 도 – 152개
- 권역별 기초자치단체 수 : 중부권 – 115개, 남부권 – 111개

□ 자치단체 유형별 구분

○ 17개 광역자치단체(시·도 본청)와 인구 50만 이상의 24개 기초자치단체(15개 시, 9개 자치구)는 매년 조사를 실시

- 인구 50만 이상 시(15개) : 수원, 창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청주, 안산, 남양주, 전주, 천안, 안양, 화성, 김해, 포항
-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9개) : 서울 송파, 강서, 강남, 노원, 관악, 대구 달서, 인천 부평, 남동, 서

○ 202개 기초자치단체(60개 시, 82개 군, 60개 자치구)는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

□ 사회복지 예산 비율

○ 17개 시·도와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40% 이상인 60개 시군구는 매년 조사

○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40% 미만인 166개 지자체는 격년제로 조사를 실시

○ **(문제점)** 지자체 예산구조의 특성상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대부분은 매년 조사를 하며, 반면에 자체 복지사업이 많고 인구규모가 큰 시 지역은 격년제로 조사를 실시

□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비율

○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도비 보조 및 매칭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며, 이는 신설·변경 협의대상이 많음을 의미

- 2016년 현재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비율의 전국 평균은 8.7%

○ 자체사업 예산 비율은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로, 논리적 적절성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불가능**함.

□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재원 비율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재원(시·군·구비)의 비중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대상 지자체를 선정

- 2016년 예산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재원의 비율은 계산 결과 226개 시·군·구의 평균은 25.34%, 중위수는 27.86%

○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자체재원 비율이 32% 이상인 67개 지자체는 매년 실시

○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재원 비율이 32% 미만인 159개 지자체는 격년제로 조사를 실시

○ **(문제점)**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대조적으로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대부분은 격년제로 조사를 실시하게 됨

(4) 미협의 사업 조사 개선을 위한 제언

□ 조사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 미협의 사업 조사의 개선을 위해서 '예산자료 수집 방법 개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범위 축소', 그리고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 축소' 등의 3개 방안을 검토

○ 예산자료 수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입력하여 취합하는 방식은 조사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겠으나, 자료입력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의 문제가 있음

○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은 조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실제 조사업무 부담을 완화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축소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조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비교하기 어려움

□ 조사방법을 변경하기 보다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필요

○ 미협의 사업 조사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 조사의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조사 방법에 비해 우월한 방안이 없음.

○ 따라서 현행 조사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절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 사회보장사업의 범위 및 신설·변경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한 지침을 구체화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견해 차이가 빈번함.

–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을 목록화하여 협의·조정 지침과 함께 제시할 필요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의 대상사업의 범위, 협의 제외대상 사업의 구체적 제시, 협의조정 절차, 컨설팅 등의 절차와 협의지원단 등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매우 상세한 지침을 작성

– (예)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각 부처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 및 성과 등을 관리하고 있음

□ 행사(축제), 일회성 교육 등의 사업은 협의·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 마련

○ 행사·축제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세부사업 단위로 원가회계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으로 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 사업은 협의·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

[그림 4-2-1] 지방자치단체 행사예산의 관리방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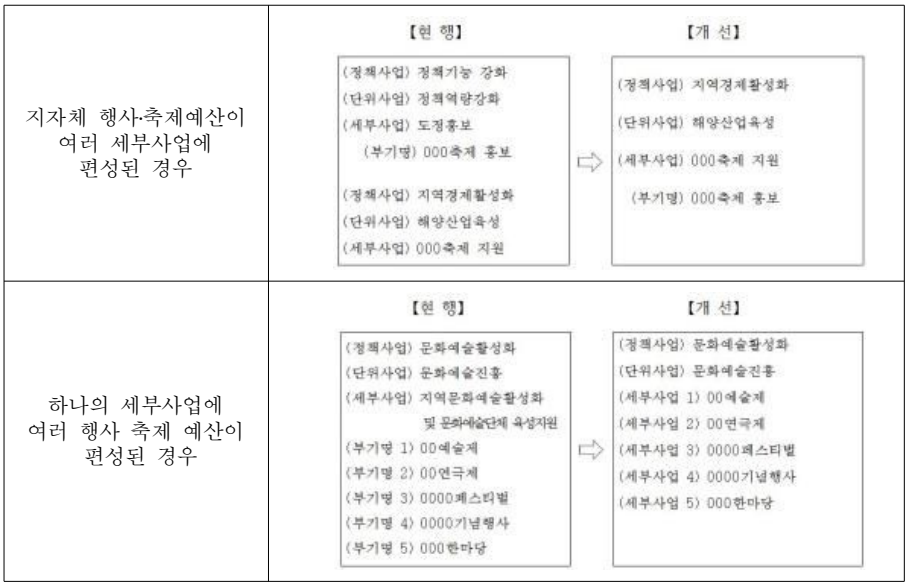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 제28호, 별표 11

□ 협의 안건의 단위를 변경하여 신설·변경 협의 방식을 개선

○ 현행 신설·변경 협의는 개별 사업을 하나의 안건으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신설·변경 협의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

- 개별 사업 단위의 협의 진행은 안건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수반
- 사회보장사업과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 따라 단위사업, 세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
- 개별 사업을 하나의 안건으로 진행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사업부서와 총괄부서, 그리고 예산부서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 신설·변경 미협의사업 조사는 사후적 수단이며, 따라서 신설·변경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조치가 바람직

○ 신설·변경 협의를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해당 지자체 단위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

- 지자체가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사회보장업무 총괄부서가 주도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부서와 예산 담당부서가 참여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 신설·변경 협의는 지자체가 작성한 협의요청서를 1개 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하는 별도의 전달체계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필요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교육 및 지침 등이 제공됨.

- 지방보훈청, 교육청, 보건소 등 전통적인 복지 전달체계가 아닌 경우 교육 및 지침 등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이들 기관의 담당자가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개념 및 범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협의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은 희박함.

○ 차년도 협의조정 지침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전달체계(지방보훈청, 교육청, 보건소 등)가 함께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제언

5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 조사 절차 및 논리모형

[그림 5-1-1]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논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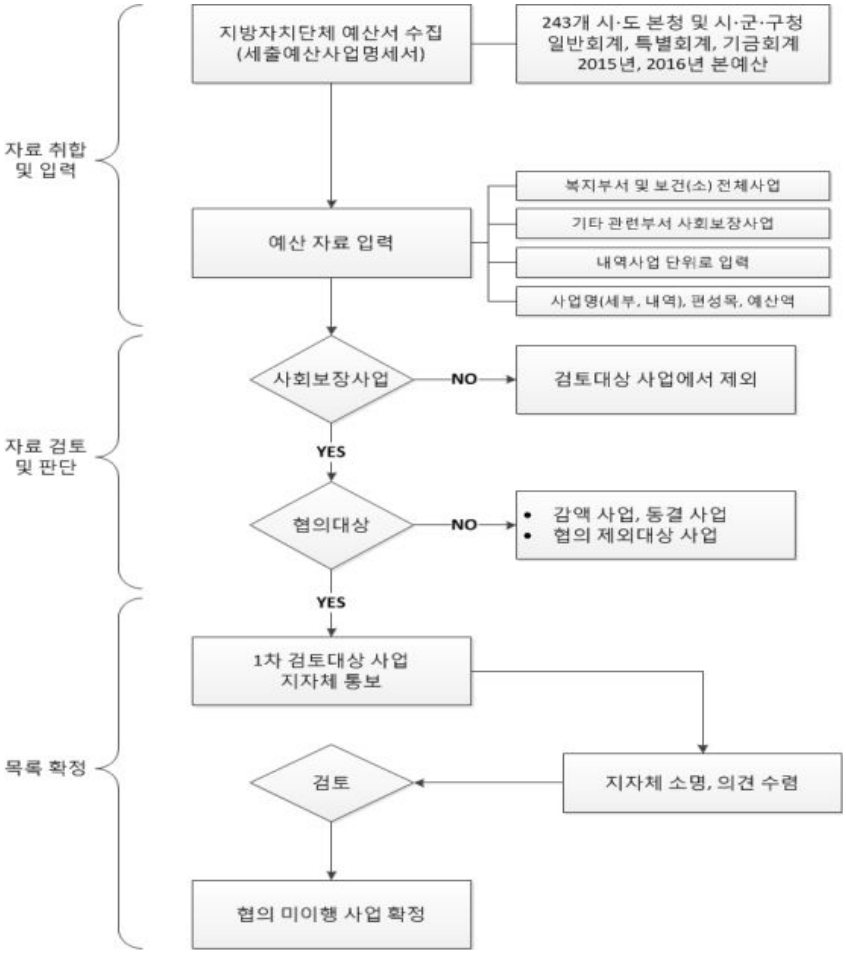

2. 미협의 사업의 조사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수집과 자료 입력

□ 지방자치단체 예산자료 수집

○ 2015년, 2016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본예산 기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시 직접 요청하여 수집

□ 자료 입력 방법

○ 예산자료는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이하의 **내역사업(부기명)을 기본 단위로** 하여 입력

– 담당부서, 사업명, 편성목, 예산액 등 8개 항목과 추가로 예산산출근거를 입력

나. 조사 대상(범위) :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사업), 자체사업

□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규정에 근거한 사회보장과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제도

○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사업

–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있어서 080(사회복지), 090(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사업

–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2016년 현재, 315개)과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사업

– 사회복지통합정보망(행복e음)을 통해 관리하는 10개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 자료 입력 항목의 선택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부서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지출항목에 따라 편성하는 품목별예산(line-item budget) 방식 → 기능별 분류, 사업별 예산을 확인할 수 없음

○ 부서별 예산을 검토하여 사업 또는 지출항목별로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입력자료를 결정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보건소 포함) 부서 ⇒ 내역사업(부기명) 모두 입력
- 기타 부서 ⇒ 사업명, 편성목, 산출근거 등의 내용, 국가 사회보장사업 및 행복e음 관리사업과의 유사·연관성을 검토하여 입력 범위를 결정

□ 자체사업과 자료 입력 범위

○ 자체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

○ 17개 시·도 : 국비보조, 지역특별회계, 중앙정부 기금보조의 항목이 있는 사업은 입력에서 제외하고, 예산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내역사업(부기명)을 입력

○ 226개 시·군·구 : 국비보조, 지역특별회계, 중앙정부 기금보조, 시·도비의 항목이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예산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내역사업(부기명)을 입력

다. 예산액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여부에 따른 검토

□ 예산액 변동에 따른 사업 구분

○ 내역사업의 2015년 예산액과 2016년 예산액의 차액(예산변동)을 기준으로 감액, 동결, 증액, 신설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동결사업과 감액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 사업이 신설·변경 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8가지(‘0.대상’, ‘1.자연변동’, ‘2.폐지’, ‘3.급여무관’, ‘3-1.행사’, ‘4.시설’, ‘5.재원분담변경’, ‘6.기타’)로 구분

○ ‘1.자연변동 ~ 6.기타’는 신설·변경 협의 제외대상에 해당

<표 5-1-1> 신설·변경 협의 제외대상 유형과 주요내용

유형	주요내용
1	•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등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상자 또는 예산의 자연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항목의 변화가 반영되어 대상자 규모, 급여 수준, 예산 등의 변동 • 예산 변동의 이유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판단
2	• 기존 사회보장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이 없는 지자체 조직·기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 직접고용, 시설·장비 구입비, 재료비(보건소 약제비 등 포함)는 협의대상에서 제외
3-1	•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사 •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이 있는 행사는 협의대상에 포함 : 장애인 합동결혼식, 마을공동장례 지원 등
4	•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 지원 • 사회보장 관련 시설·기관·단체 : 사회보장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시설, 기관 및 단체를 의미하며, 법률 근거가 없는 시설·기관·단체 등의 개폐와 운영 지원은 협의 대상 •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제한하며,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과 조례는 법령에 포함 •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 지원 :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관·단체의 운영비 지원, 해당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5	• 사회보장제도의 변경 중 자치단체 간 재원분담(비율) 변경 :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예산분담 변경,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예산분담 변경 등
6	• 기타 사회보장제도 및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 이·통장(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고등학생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 유공자 표창, 재해복구용 장비 구입, 마을회관 목욕시설 설치, 귀농자 농가주택수리,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마을 공동구역 청소용 쓰레기봉투 지원 등

2. 조사 결과 및 활용

가.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 2016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은 48,895개(81,878억 원)

–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은 서울특별시가 33,387억(5,527개)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9,947억(7,391개)

–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464억(210개) 가장 적으며, 광주광역시 1,285억(878개), 제주특별자치도 1,429억(892개), 울산광역시 1,595억원(1,147개)의 순

<표 5-1-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 변동(2016년)

시도	사회보장사업(개)	예산(억 원)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신설		증액		동결		감액	
			사업(개)	예산(억 원)	사업(개)	예산(억 원)	사업(개)	예산(억 원)	사업(개)	예산(억 원)
서울	5,527	33,387	1,392	3,698	1,219	16,508	1,982	1,285	934	11,896
부산	1,525	4,784	328	336	313	2,265	674	1,448	210	735
대구	1,352	3,042	246	195	321	1,432	655	394	130	1,021
인천	1,615	3,634	534	597	265	1,048	577	353	239	1,637
광주	878	1,285	166	101	164	738	445	278	103	168
대전	841	1,920	106	217	182	736	454	533	99	435
울산	1,147	1,595	167	113	271	651	568	671	141	160
세종	210	464	25	27	59	164	86	43	40	230
경기	7,391	9,947	1,618	2,073	1,794	4,506	2,968	1,579	1,011	1,789
강원	4,063	2,720	756	402	741	1,155	1,873	569	693	594
충북	2,249	1,903	368	166	450	813	1,054	368	377	555
충남	2,974	2,748	663	521	469	1,078	1,497	706	345	444
전북	3,025	2,972	651	241	548	937	1,313	699	513	1,095
전남	5,056	2,466	1,015	318	669	793	2,532	876	840	479
경북	5,395	3,736	780	424	852	928	2,922	870	841	1,514
경남	4,755	3,844	545	525	707	1,479	2,856	1,066	647	773
제주	892	1,429	166	276	292	745	354	211	80	197
합계	48,895	81,878	9,526	10,229	9,316	35,979	22,810	11,949	7,243	23,721

○ 사회보장사업 예산 69,688억(2015년) → 81,878억(2016년), 증가율은 17.5%

- 신설 사업은 포함된 반면 폐지 사업은 제외되어 증가율이 높게 계산된 결과
- 실제로 사회복지 영역의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예산은 64,517억(2015년) → 66,344억(2016년), 증가율은 2.8%(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5년, 2016년)

○ 2015년 대비 2016년의 예산 변동을 기준으로 동결사업은 46.7%(22,810개), 감액사업은 14.8%(7,243개), 증액사업은 19.1%(9,316개), 그리고 신설사업은 19.5%(9,526개)

□ 미협의 사업

○ 예산변동과 신설·변경 협의대상 유무를 판단하여 3,163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요청

- 8개 특별·광역시는 925개(6,313억), 9개 도는 2,238개(4,732억) 등 총 3,163개(1조 1,104억) 사업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해당사업의 정보 확인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

○ 243개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조사·확인을 거쳐 434개 사업을 미협의사업으로 확정

- 경기가 76개로 미이행사업이 가장 많고 충남(55개), 강원(47개), 서울(36개), 경북(33개) 등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반면에 세종(3개), 대전(5개), 광주(6개), 울산(8개), 전북(10개) 등이 적음

<표 5-1-3> 시·도별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시도	지자체 확인 요청		미협의 사업(확정)	
	사업 (개)	2016년 예산 (백만 원)	사업 (개)	2016년 예산 (백만 원)
서울	361	432,330	36	10,751
부산	127	52,712	19	11,536
대구	114	66,656	24	3,551
인천	133	24,333	12	1,448
광주	49	6,293	6	236
대전	64	26,636	5	297
울산	62	15,834	8	3,449
세종	15	6,466	3	50
경기	607	170,396	76	27,325
강원	212	52,256	47	12,024
충북	137	18,489	18	1,262
충남	307	44,951	55	6,731
전북	150	34,044	10	575
전남	231	30,360	41	4,363
경북	235	23,985	33	2,074
경남	228	74,058	25	3,159
제주	131	24,615	16	4,262
합계	3,163	1,104,566	434	93,093

나. 사후조치 및 조사결과 활용

□ 미협의 사업 조사의 사후조치

○ 미협의 사업 목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의요청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미협의 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구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③ 보건복지부장관은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미협의 사업의 협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에도 신설·변경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시행을 재검토하는 등의 조정을 진행

□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 지침 개선에 반영 : 협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회보장기본법과 협의제도 운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및 협의대상에 대한 규정은 추상적이고, 협의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에 견해 차이가 빈번

- 미협의 사업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특정 사업이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이의제기가 많았음

○ 협의제도 운용 지침에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을 목록화하고, 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필요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있어서 협의 대상 및 협의 제외대상의 구체적 예시, 협의조정 절차, 컨설팅 등의 절차와 협의지원단 등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매우 상세한 지침을 작성
- (예)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각 부처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 및 성과 등을 관리하고 있음

제2절 제언

1. 조사자료의 활용(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개선

□ 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 예1) A라는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082 취약계층부문의 예산이 과다하게 많은데 이는 081 기초생활보장부문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예산 총량에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예2) B라는 기초자치단체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086 노동 부문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산업분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이런 경우 사회복지예산 총량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서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성과중심의 예산 편성과, 예산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 개선 방향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재정정보의 분야와 부문에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지침의 마련 필요

○ 예산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 e-호조의 재정정보 작성지침은 행정자치부, 교육재정정보시스템은 교육부, 사회보장사업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등은 홈페이지에 예산서를 공개하고, 일반 주민이 이를 확인하기 쉽게 해야 함.

○ 행정자치부 e-호조시스템과 교육부의 재정정보시스템에서 '기능별 예산 * 세부사업 * 성질별 예산(편성목, 통계목) * 부기(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재정정보를 추출하여 협의·조정의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 필요

2. 조사결과의 활용(안):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통합적 분석과 평가

□ 본 조사의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자료를 구축

○ 이러한 자료는 지역별(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유형별(도시와 농촌, 시·군과 구)로 분석할 수 있음.

○ 또한 지역 단위 사회보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하면 지역 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사회보장사업 혹은 사회보장사업의 필요도 등을 분석할 수 있음.

□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요-공급에 대한 통합적 분석의 필요성

○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기존의 분석·평가는 개별 사업,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분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군·구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통합적 시각의 분석·평가는 매우 미흡한 실정

-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서열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결과의 환류를 통해 사회보장정책의 혁신과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
- 사회보장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거나 지역 간 편차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요와 공급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분석은 여전히 부족함.

○ 신설·변경 미협의사업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예산에 대한 분석을 기반

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산출된 예산자료를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요-공급 분석에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요-공급의 측정을 위해서 사회보장 예산 자료 이외에 인구 관련 데이터와 사회복지시설 자료를 추가하여 데이터를 구축
- 사회보장 수요-공급에 대한 분석결과를 시군구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지역 간 비교
- 사회보장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단위 사회보장 전략 수립,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사회복지시설 공급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사회보장 수요 측정

○ 수요(demand)란 특정한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욕구이며, 사회보장 수요는 사회적·집합적 욕구에 의해서 형성된 필요를 의미

- 사회보장 수요 측정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집합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시군구 지역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
- 지역 주민들의 결핍,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에 관련된 욕구를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를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사회보장 수요는 지역의 '집합적 욕구'와 이러한 욕구의 '필요 정도'의 함수

- 집합적 욕구는 특정한 사회보장정책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대상자)의 '규모'로 대체 가능
- 반면에 현재 상황에서 집합적 욕구의 필요 정도를 측정하거나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부재
  - 지역단위 사회보장 욕구의 필요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대상자 (또는 가구)의 빈곤 정도(율), 소득 수준과 분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표들은 시군구 지역단위로 산출되지 않고 있음

○ 시·군·구의 사회보장 수요는 대상자 또는 수혜자의 규모를 측정하고, 이를 지자체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수요의 상대적 크기의 측정이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영역을 고려하면,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대상자는 빈곤층(공공부조), 영·유아(보육),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추가로 차상위계층, 의료·주거·교육 빈곤층,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족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대상자 규모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치의 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

□ 사회보장 공급 측정 : 수요 대응과 사업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정도

○ 사회보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정도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복지자원의 총량으로 측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하는 복지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 가능

- 인적자원은 지자체의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한 전국적 차원에서 시군구 단위의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없음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규모는 측정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없으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일부 영역의 복지시설에 대한 자료 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자료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임
- 지자체 사회보장 예산은 대표적인 물적자원에 해당하며, 예산은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자료가 정기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지역사회보장 수준과 사회보장 공급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고, 지역 간 비교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지표
  - 사회보장예산의 총규모, 사회보장예산의 비중, 대상자 1인당 예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
- 물적자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보장 수요 대응의 지표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
  - 수요 대응을 위하여 투입되는 자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서는 시설의 규모나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량을 표현하는 결과 값이 필요하겠으나, 이를 위한 전국적 차원에서 시군구 단위의 지표가 부재

○ 결론적으로 사회보장 수요 대응과 사회보장사업의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정도는 사회보장 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불가피

- 지자체 사회보장 예산은 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근거로 사회복지(080)와 보건의료(090 중 091) 영역의 예산을 의미
- 사회보장 예산은 일반공공행정(010), 공공질서 및 안전(020), 교육(050), 농림해양수산(100), 산업·중소기업(110), 수송 및 교통(120), 국토 및 지역개발(140) 영역에 부분적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개별 영역에서 해당 예산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 지자체 사회보장 예산은 사회복지(080)와 보건의료(091)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 예산의 규모 및 비중, 세부 영역별 예산, 1인당 예산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 공급을 분석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2014). 20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15). 2016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

정홍원, 강지원, 김보영, 이민경 (2015). 지역 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정경희, 김동진, 최복천, 성은미, 양미선, 류진아(2015).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체계 개선 및 사례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정경희, 김성희, 여유진, 김동진, 이소영, 정은희, 황도경, 류진아, 안효금 (2014).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정자치부 (2015).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각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c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

지방재정365 홈페이지(http://lofin.moi.go.kr)

부 록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홈페이지 주소

자치단체명	URL
서울시청	https://finance.seoul.go.kr/archives/category/budget/data_budget/data_document_budget-n2
서울종로구	http://www.jongno.go.kr/portal/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971&contentsDvCo=BG&menuId=1823&menuNo=1823&menuId=1801&menuNo=1801
서울중구	http://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433
서울용산구	http://www.yongsan.go.kr/pms/board/list.do?boardidn=1055&sitecdv=S0000100&menucdv=03130000&decorator=pmsweb
서울성동구	http://www.sd.go.kr/sd/mainSub.do?mCode=13D070010000&displayId=&op=listPf&division=pf
서울광진구	http://www.gwangjin.go.kr/jsp/kr/c2/02/intro02_61_2_14.jsp
서울동대문구	http://www.ddm.go.kr/join/budgetPulse_11.jsp
서울중랑구	http://www.jungnang.seoul.kr/portal/bbs/list/B0000232.do?menuNo=200430
서울성북구	http://www.seongbuk.go.kr/sb_new/administration/budgetresource/budgetbill/budgetbill.jsp
서울강북구	http://www.gangbuk.go.kr/www/boardList.do?boardSeq=201&key=2111
서울도봉구	http://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5767
서울노원구	http://www.nowon.kr/new/nowon/nowon.jsp?mid=570501
서울은평구	http://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3396
서울서대문구	http://www.sdm.go.kr/admininfo/budget/document2.do
서울마포구	http://www.mapo.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214
서울양천구	http://www.yangcheon.go.kr/yangcheon/administration/budget/budget01/budget01_13/budget01_13.jsp
서울강서구	http://www.gangseo.seoul.kr/new_portal/admins/main_2_6_10.jsp?show=3
서울구로구	http://www.guro.go.kr/www/board/NR_boardList.do?bbsCd=572
서울금천구	http://www.geumcheon.go.kr/html/001/001002007002.html
서울영등포구	http://www.ydp.go.kr/main/page.do?mCode=G020010000
서울동작구	http://www.dongjak.go.kr/portal/bbs/selectBoardList.do?bbsId=B_000082&menuNo=281157
서울관악구	http://www.gwanak.go.kr/servlets/rnl/gwanak/user/servlet/ContentServlet?cmd=CONTENT&cseq=1877&menu_no=000130
서울서초구	http://www.seocho.go.kr/site/seocho/ex/bbs/List.do?cbIdx=31
서울강남구	http://www.gangnam.go.kr/portal/bbs/selectBoardList.do?bbsId=B_000742&menuNo=201204
서울송파구	http://www.songpa.go.kr/user.kdf?a=songpa.menu.MenuApp&c=1001&cate_id=AG0305001000
서울강동구	http://www.gangdong.go.kr/web/board/ko/4/uiList.do?bbsId=1135

자치단체명	URL
부산시청	https://www.busan.go.kr/GBDList.bs?parcode=MNU_00000000052&prgcode=GBD_00000000031
부산중구	http://www.bsjunggu.go.kr/bsjunggu/junggusub.php?midx=472
부산서구	http://www.bsseogu.go.kr/content/?hnum=0jGE03DtvqW3&s_code=zInoH3tYTzP0&w_code=enhMz2wAVIC4&subcnt=3
부산동구	http://www.bsdonggu.go.kr/rbs2/modules/freeForm/view.php?rbsIdx=UR_1_626
부산영도구	http://www.yeongdo.go.kr/04govern/04_01_13.asp
부산부산진구	http://www.busanjin.go.kr/index.busanjin?menuCd=DOM_000000305004001000
부산동래구	http://www.dongnae.go.kr/Body/content/index.php?content_code=portal_6_7_3_16
부산남구	http://www.bsnamgu.go.kr/open/open.php?Menu_Code=open03_01
부산북구	http://www.bsbukgu.go.kr/index.bsbukgu?menuCd=DOM_000000105005001000#
부산해운대구	http://e-budget.haeundae.go.kr/html/02_finance/finance_01_2016.php
부산사하구	http://www.saha.go.kr/rbs2/modules/freeForm/view.php?rbsIdx=UR_1_1487
부산금정구	http://www.geumjeong.go.kr/index.geumj?menuCd=DOM_000000101004001055
부산강서구	http://www.bsgangseo.go.kr/bsgangseo/budget/list.do?mId=0401080100
부산연제구	http://www.yeonje.go.kr/05administer/01gujung/02_2016.jsp
부산수영구	http://www.suyeong.go.kr/suyeong/template.asp?midx=430
부산사상구	http://www.sasang.go.kr/cms/CmsAction.do?cmd=CmsView&menu_key=11&menu_id=1651&HOME_SEQ=2&next=/01/02/11/1215/1223/16.jsp
부산기장군	http://www.gijang.go.kr/kjrepresent/sub3/sub3_6_2.jsp?board_no=238
대구시청	http://www.daegu.go.kr/Budget/Default.aspx?cid=63:82
대구중구	http://gu.jung.daegu.kr/new/pages/administration/page.html?mc=0182
대구동구	http://www.dong.daegu.kr/main/page.htm?mnu_siteid=dongu_k&mnu_uid=3218
대구서구	http://www.dgs.go.kr/01_seogu/page.php?mnu_uid=11659
대구남구	http://www.nam.daegu.kr/index.do?menu_id=00001272
대구북구	http://www.buk.daegu.kr/new_pg/content.php?pc=264
대구수성구	http://www.suseong.kr/02_open/page.htm?mnu_uid=2213
대구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pages/executive/page.html?mc=2348&large_code=20&medium_code=720&small_code=3310&url=/pages/executive/finances.html
대구달성군	http://www.dalseong.daegu.kr/new/dalseong/information/page.html?mc=1707
인천시청	http://www.incheon.go.kr/posts/49
인천중구	http://www.icjg.go.kr/src/contents.asp?init=ai&code=0302011201
인천동구	http://www.icdonggu.go.kr/open_content/main/open_info/finance/budget.jsp
인천남구	http://namgu.incheon.kr/home/administration/finance_budget.asp
인천연수구	http://www.yeonsu.go.kr/main/administration/present.asp
인천남동구	http://www.namdong.go.kr/suggestion/finance/present.asp
인천부평구	http://www.icbp.go.kr/open_content/main/finance/condition/general.jsp
인천계양구	http://www.gyeyang.go.kr/open_content/main/open_info/budget/tax.jsp
인천서구	http://www.seo.incheon.kr/seo/icsg4/sub04/001/sub01_01/sub1_1_38_layout/

자치단체명	URL
인천강화군	http://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open_info/finance/budget.jsp
인천옹진군	http://www.ongjin.go.kr/main/sub.asp?cturl=/etc/budget_money/list.asp&sid=51
광주시청	http://jaejeong.gwangju.go.kr/contents.do?S=S38&M=010233000000
광주동구	http://www.donggu.kr/sub/2pulb/2pulb02/2pulb0251/sub_0202510100.php?pageKey=1587
광주서구	http://finance.seogu.gwangju.kr/index.9is?contentUid=4028484950895ab201511918178210b2
광주남구	http://www.namgu.gwangju.kr/board.es?mid=a10308010100&bid=0272&cg_code=C36
광주북구	http://life.bukgu.gwangju.kr/menu.es?mid=a60103014700
광주광산구	http://www.gwangsan.go.kr/co/contentsView.php?pageID=gwangsan0503040100
대전시청	http://www.daejeon.go.kr/bud/BudFinanceboardList.do?boardId=budboard005&menuSeq=349
대전동구	https://www.donggu.go.kr/budget/home/service_010302.do
대전중구	http://www.djjunggu.go.kr/html/kr/with/with_031801.html?year=2016&gubun=1&x=12&y=12
대전서구	http://www.seogu.go.kr/sorg/content.do?mnucd=SGMENU1300039
대전유성구	http://www.yuseong.go.kr/?page_id=11300
대전대덕구	http://www.daedeok.go.kr/ftp/ftp02/FTP0202_cmmBoardList.do
울산시청	http://www.ulsan.go.kr/tax/fhbudget
울산중구	http://www.junggu.ulsan.kr/public/data16.php
울산남구	http://www.ulsannamgu.go.kr/fieldInfo/openEstimate2016.jsp
울산동구	http://www.donggu.ulsan.kr/kor/livelihood/livelihood7.php
울산북구	http://www.bukgu.ulsan.kr/adm_06.jsp
울산울주군	http://www.ulju.ulsan.kr/index.ulju?menuCd=DOM_000000106008001000
세종시청	http://www.sejong.go.kr/prog/yesanInfo/sub04_01_04_01/list.do
경기도청	http://www.gg.go.kr/archives/category/sector_info/sector_info-admin/sector_info-admin-admin/administration-administration-m02/administration-administration-m02-001
경기수원시	http://yesan.suwon.go.kr/web/budgetDoc/BD_budgetDoc.list.do
경기성남시	http://www.seongnam.go.kr/city/1000614/10470/contents.do
경기의정부시	http://www.ui4u.net/Site/Main/page.asp?MCode=B040030010
경기안양시	http://www.anyang.go.kr/web/board/BD_board.list.do?bbsCd=1148
경기부천시	http://budget.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64002001010001
경기광명시	http://www.gm.go.kr/site/gm/boardList.do?boardSeq=115&key=1496
경기평택시	http://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list.do?ptIdx=238&mId=0108010000
경기동두천시	http://www.ddc21.net/ddc/cms/contents.asp?conNum=246
경기안산시	https://fin.iansan.net/budgetary/Budget_2016.jsp?menuId=15003001
경기고양시	http://www.goyang.go.kr/finance/budget/sub01/13/

자치단체명	URL
경기과천시	http://www.gccity.go.kr/main/board/bbs.do?mCode=A050020000&cfgIdx=132
경기구리시	http://www.guri.go.kr/brd/board/1087/L/menu/1692
경기남양주시	http://www.nyj.go.kr/main/nyjcl/04_01_06_01_01.jsp
경기오산시	http://www.osan.go.kr/osanBudget/bbs/list.do?bbsMstIdx=18&bbsIdx=30&mId=0107000000
경기시흥시	http://www.siheung.go.kr/administration/2016%EB%85%84%EB%8F%84-%EC%82%AC%EC%97%85%EC%98%88%EC%82%B0%EC%84%9C
경기군포시	http://www.gunpo.go.kr/cms/inc/view/386.do
경기의왕시	http://uw21.net/kr/polity/polity02_01.jsp
경기하남시	http://www.hanam.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7&key=42
경기용인시	http://www.yongin.go.kr/home/ifOp/ifOpMunic/ifOpMunic02.jsp
경기파주시	https://www.paju.go.kr/user/board/BD_board.list.do?bbsCd=2004&q_ctgCd=4006
경기이천시	http://www.icheon.go.kr/site/ic/boardList.do?boardSeq=15&key=233
경기안성시	http://www.anseong.go.kr/section/jaejung_new/sub.php?officecd=400&anscd=002009001
경기김포시	http://www.gimpo.go.kr/portal/bbs/CM4204/list.do?menu_cd=100335
경기화성시	http://money.hscity.go.kr/finance/budgetopen.jsp
경기광주시	http://www.gjcity.go.kr/newnetboard/mboard/mboard.asp?board_id=budget&group_name=gjcity
경기양주시	http://www.yangju.go.kr/site/budget/sub.do?Key=3423
경기포천시	http://www.pcs21.net/pocheon/sub/pocheonSub.do?key=2664
경기여주시	http://www.yj21.net/www/jsp/prg/yaesan/yaesan_list.jsp
경기연천군	http://www.iyc21.net/board/list.yeoncheon?boardId=BBS_0000023&menuCd=DOM_000000103003002000&contentsSid=127
경기가평군	http://www.gp.go.kr/portal/contents.do?key=1206
경기양평군	http://www.yp21.net/index.yangpyeong?menuCd=DOM_000000134005003007
강원도청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6_06_07
강원춘천시	http://www.chuncheon.go.kr/index.chuncheon?menuCd=DOM_000000505004001000
강원원주시	http://wonju.go.kr/site/executive/page/sub06/sub06_07_02.jsp
강원강릉시	http://www.gangneung.go.kr/main_new/contents.jsp?dcod=new_main/gn_intro/gn_intro_3/gn_intro_3_2_2_9/gn_intro_3_2_2_9_1
강원동해시	http://dh.go.kr/open_content/intro/admindata/04.htm
강원태백시	http://www.taebaek.go.kr/site/home/page/sub02/sub02_04_01_10.asp
강원속초시	http://sokcho.gangwon.kr/hb/home/sub06_05_01
강원삼척시	http://www.samcheok.go.kr/02open/05_02_2016_01.asp
강원홍천군	http://www.hongcheon.gangwon.kr/www/contents.do?key=17
강원횡성군	http://www.hsg.go.kr/sub/04_02_04_2016.asp
강원영월군	http://www.yw.go.kr/site/executive/page/sub01/sub01_03_02_38.jsp
강원평창군	http://www.happy700.or.kr/index.happy?menuCd=DOM_000000102005001026
강원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hb/portal/sub02_04

자치단체명	URL
강원철원군	http://www.cwg.go.kr/site/www/boardList.do?boardSeq=192&key=2398&part=0049
강원화천군	https://www.ihc.go.kr/home/main/page/sub06/sub06_02_01_01.asp?hb_BoardManager_ID=BDAAFF01
강원양구군	http://www.yanggu.go.kr/user_sub.php?pagecode=01_03_04_01_00
강원인제군	http://www.inje.go.kr/portal/contents/know/report_2016_1.htm
강원고성군	http://www.goseong.org/gs/portal/sub01_05
강원양양군	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sub01/sub01_06_02.jsp
충북도청	http://www.cb21.net/www/contents.do?key=1427
충북충주시	https://www.cj100.net/cj100/%ED%96%89%EC%A0%95%EC%A0%95%EB%B3%B4/%ED%86%B5%EA%B3%84%EF%BC%8F%EC%98%88%EC%82%B0/%EC%97%B0%EB%8F%84%EB%B3%84%EC%98%88%EC%82%B0
충북제천시	http://www.okjc.net/www/selectBbsNttList.do?bbsNo=289&key=132
충북청주시	http://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7630
충북보은군	http://www.boeun.go.kr/BoeunContents.html?menucode=S01M01050331
충북옥천군	http://etc.oc.go.kr/html/kr/hope/yesan/
충북영동군	http://www.yd21.go.kr/html/kr/adfo/adfo_04020703.html
충북진천군	http://www.jincheon.go.kr/home/contents/view.do?jinLayoutVal=main.contents.view&confirm=true&menu_grp_key=1&menu_key=923
충북괴산군	http://www.goesan.go.kr/content/index.php?idx=7&g_num=155&gs_num=495
충북음성군	http://www.eumseong.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9&key=93
충북단양군	https://www.dy21.net/dy21/%EC%A0%95%EB%B6%803%E2%80%A40+%EC%A0%95%EB%B3%B4%EA%B3%B5%EA%B0%9C/%EC%9E%AC%EC%A0%95%EC%A0%95%EB%B3%B4/%EC%98%88%EC%82%B0%EC%84%9C
충북증평군	http://www.jp.go.kr/html/kr/service/service_04_01.html
충남도청	http://www.chungnam.net/orga/content.do?mnu_cd=DCYMENU00101
충남천안시	http://www.cheonan.go.kr/jejung/prog/yesanInfo/sub05_5101.do
충남공주시	http://www.gongju.go.kr:9998/html/kr/service/2016/index.html
충남보령시	http://www.brcn.go.kr/kor/sub01_03_01_01.do
충남아산시	http://www.asan.go.kr/taxonomy/term/418
충남서산시	http://www.seosan.go.kr/move.do?usr_menu_cd=0304010000&is_info_offerer=Y&is_satisfaction=Y&tsort=5&tcsort=3&csort=1&tpl_num=0
충남논산시	http://www.nonsan.go.kr/home.do?mno=sub05_05_02
충남계룡시	http://www.gyeryong.go.kr/_prog/yesan/?site_dvs_cd=kr&menu_dvs_cd=030404
충남당진시	http://www.dangjin.go.kr/html/kr/service/service_04_01.html
충남금산군	http://www.geumsan.go.kr/html/kr/sub01/sub01_010601.html
충남부여군	http://www.buyeo.go.kr/html/kr/service/service_010302.html
충남서천군	http://www.seocheon.go.kr/prog/yesanInfo/sub01_08_02/list.do
충남청양군	http://www.cheongyang.go.kr/jejung/prog/yesanInfo/sub05_5101.do

자치단체명	URL
충남홍성군	http://www.hongseong.go.kr/prog/yesanInfo/sub01_07_02/list.do
충남예산군	http://www.yesan.go.kr/jejung/prog/yesanInfo/sub05_5101.do
충남태안군	http://budget.taean.go.kr/intro/intro_02_01.asp
전북도청	http://finance.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3003001000000
전북전주시	http://jeonju.go.kr/index.9is?contentUid=9be517a751ed340b015210156a417646
전북군산시	http://www.gunsan.go.kr/board/list.gunsan?boardId=BBS_0000039&menuCd=DOM_000000204002002000&contentsSid=435
전북익산시	http://www.iksan.go.kr/budget/index.iksan?menuCd=DOM_000000901001000000
전북정읍시	http://www.jeongeup.go.kr/01kr/05intro/information/03/
전북남원시	http://www.namwon.go.kr/index.nwn?contentUid=ff8080814a418fad014a85841f2d4a05
전북김제시	http://www.gimje.go.kr/index.gimje?menuCd=DOM_000000101009001028
전북완주군	http://www.wanju.go.kr/index.wanju?menuCd=DOM_000000104010003000
전북진안군	http://www.jinan.go.kr/index.sko?menuCd=MM04003002000
전북무주군	http://www.muju.go.kr/index.9is?contentUid=ff8080815199613c0151c84200b20cd5
전북장수군	http://www.jangsu.go.kr/index.jangsu?menuCd=DOM_000000104002003049&myear=2016
전북임실군	http://www.imsil.go.kr/index.sko?menuCd=AA03003007000
전북순창군	http://www.sunchang.go.kr/index.sunchang?menuCd=DOM_000000105002001000
전북고창군	http://www.gochang.go.kr/index.gochang?menuCd=DOM_000000503004012001
전북부안군	http://www.buan.go.kr/index.buan?menuCd=DOM_000000105009003001
전남도청	http://www.jeonnam.go.kr/pj/FinanceSelectAll_Home.do?menuId=jeonnam0305020100&YYYY=2015&category=B
전남목포시	http://www.mokpo.go.kr/open_administrative/finance/estimate_open
전남여수시	http://www.yeosu.go.kr/contentsView.do?menuId=yeosu0502030801
전남순천시	http://www.suncheon.go.kr/kr/news/0003/0001/0014/0001/
전남나주시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budget/revenue
전남광양시	http://www.gwangyang.go.kr/01kr/open/arimy/04/index01.jsp
전남담양군	http://www.damyang.go.kr/index.damyang?menuCd=DOM_000000105003029001
전남곡성군	http://www.gokseong.go.kr/?r=gs&c=641/646/670/2574/2590
전남구례군	http://www.gurye.go.kr/kr/public_info/03/001/index07.jsp
전남고흥군	http://www.goheung.go.kr/open_content/civil/s03/03_data_budget/2016.html
전남보성군	http://www.boseong.go.kr/index.boseong?menuCd=DOM_000000106007003052
전남화순군	http://www.hwasun.go.kr/contents.do?S=S01&M=020408000000
전남장흥군	http://www.jangheung.go.kr/html/HtmlView.jsp?menu_cd=060501_main
전남강진군	http://www.gangjin.go.kr/portal/contents.do?key=3014
전남해남군	http://www.haenam.go.kr/index.9is?contentUid=18e3368f513692730151c909e3204f53

자치단체명	URL
전남영암군	http://www.yeongam.go.kr/home/www/open_information/open_information_05/open_information_05_03
전남무안군	http://www.muan.go.kr/openmuan/budget/saeipchul
전남함평군	http://www.hampyeong.go.kr/2013_hpp/sub/01/hpp010502_2016.php
전남영광군	http://www.yeonggwang.go.kr/subpage/?site=headquarter&mn=2701
전남장성군	http://www.jangseong.go.kr/home/www/news/budget
전남완도군	http://www.wando.go.kr/administration/administration_info/budget_view
전남진도군	http://www.jindo.go.kr/sub.php?pid=JI03040144
전남신안군	http://www.shinan.go.kr/home/www/gov30/gov30_09_01/gov30_09_01_06
경북도청	http://www.gb.go.kr/open_content/finance/page.jsp?LARGE_CODE=893&MEDIUM_CODE=1&SMALL_CODE=1&SMALL_CODE2=&URL=/open_content/finance/sub1_1_2016.jsp
경북포항시	http://www.ipohang.org/open_content/administrative/finance/budget/
경북경주시	http://www.gyeongju.go.kr/open_content/sub.jsp?menuIdx=694
경북김천시	http://www.gimcheon.go.kr/administration/page.htm?mnu_siteid=inno&mnu_uid=1220&
경북안동시	http://www.andong.go.kr/andong/inquiry/selectBudget.do?mId=0501010000
경북구미시	http://www.gumi.go.kr/pages/sub.jsp?menuIdx=362
경북영주시	http://www.yeongju.go.kr/open_content/main/page.do?mnu_uid=1502&
경북영천시	http://www.yc.go.kr/ycMain/contents/budgetList.do?seq=34&mId=0304010000
경북상주시	http://www.sangju.go.kr/main/main.jsp?home_url=sangju&befor_home_url=sangju&befor_code=ADMIN_BUDGET_BUDGET&code=ADMIN_BUDGET_LIST
경북문경시	http://www.gbmg.go.kr/open.content/ko/administration/budget/2016/2016-main/
경북경산시	http://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2171&
경북군위군	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1055&
경북의성군	http://www.usc.go.kr/information_open/finance_whitepaper/budget_bill
경북청송군	http://www.cs.go.kr/02open/20140724/06_05_04_12_01.asp
경북영양군	http://www.yyg.go.kr/organization/finance_info/revenues_expenditure
경북영덕군	http://www.yd.go.kr/?page_id=907
경북청도군	http://www.cd.go.kr/open.content/ko/administration/budget/2016/main.budget/
경북고령군	http://budget.goryeong.go.kr/program/budget/lstBudget.asp?SCate=A1
경북성주군	http://www.sj.go.kr/S0001/page.jsp?site_id=S0001&mnu_uid=2491&
경북칠곡군	http://www.chilgok.go.kr/03administration/04_03_2016.jsp
경북예천군	http://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budget/list/2016/
경북봉화군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ko/organization/budget-info/year/
경북울진군	http://www.uljin.go.kr/index.do?menuCd=DOM_000000803002004000
경북울릉군	http://www.ulleung.go.kr/Wooreumoe/page.htm?mnu_uid=867&

자치단체명	URL
경남도청	http://open.gsnd.net/jsp/sub01/01_0409.jsp
경남창원시	http://www.changwon.go.kr/04Polity/03_01_2016.jsp
경남진주시	http://www.jinju.go.kr/04govern/04_03_11.jsp
경남통영시	http://www.tongyeong.go.kr/04administration/02_03_03_47.asp
경남사천시	http://www.sacheon.go.kr/03administration/02_02_2016_a.asp
경남김해시	http://www.gimhae.go.kr/sub/04/08_01_05_2016_01.jsp
경남밀양시	http://www.miryang.go.kr/sub/03_03_01_09.php
경남거제시	http://yesan.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1701001013000
경남양산시	http://www.yangsan.go.kr/yangsan/selectContents.do?mId=0407020000
경남의령군	http://www.uiryeong.go.kr/01administration/06_03_01_29.asp
경남함안군	http://www.haman.go.kr/sub/09/02_01_10_01.jsp
경남창녕군	http://www.cng.go.kr/country/00001550/00003541.web
경남고성군	http://www.goseong.go.kr/index.goseong?menuCd=DOM_000000105005002040&cpath=
경남남해군	http://www.namhae.go.kr/portal/Index.do?c=WW0304021401
경남하동군	http://www.hadong.go.kr/sub/08_06_01_2016.asp
경남산청군	http://www.sancheong.go.kr/www/contents.do?key=1936
경남함양군	http://www.hygn.go.kr/07info/02_02_09.asp
경남거창군	http://budget.geochang.go.kr/
경남합천군	http://www.hc.go.kr/sub/04/02_02_2016.jsp
제주도청 (제주시, 서귀표시)	http://www.jeju.go.kr/finance/budget/2015.htm

부록 2: 예산의 성질별 분류(편성목, 통계목)에 따른 자료입력 여부

그룹	편성목	통계목	비고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보수	불포함
		02. 기타직 보수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포함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불포함
		02. 공공운영비	
		03. 행사운영비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05. 공립대학 운영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02. 월액여비	
		03. 국외업무여비	
		04. 국제화여비	
		05. 공무원 교육여비	
	203 업무추진비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02. 직급보조비	
		03. 특정업무경비	
	205 의회비	01. 의정활동비	
		02. 월정수당	
		03. 의원국내여비	
		04. 의원국외여비	
		05. 의정운영공통경비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6 재료비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02. 전산개발비	
		03. 시험연구비	

그룹	편성목	통계목	비고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포함
		02. 장학금 및 학자금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불포함
		04.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포함
		06. 민간인 국외여비	
		07. 외빈초청여비	
		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09. 행사실비 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11. 기타 보상금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01. 민간인 이주보상금	포함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3 포상금	01. 포상금	불포함
		02. 성과상여금	
	304 연금 부담금등	01. 연금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금	
		03. 의원상해부담금	
	305 배상금등		
	306 출연금		포함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04. 민간행사사업보조	
		05. 민간위탁금	
		06. 보험금	
		07. 연금지급금	
		08. 이차보전금	
		09. 운수업계보조금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8 자치단체등 이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2. 징수교부금	
		03. 자치구 조정교부금	
		04. 시·군 조정교부금	
		05.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06. 시·군 기타 재원조정비	
		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1. 기타부담금	
	309 전출금	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그룹	편성목	통계목	비고
	310 국외이전	01. 국외경상이전	
		02. 국제부담금	
	311 차입금 이자상환	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상환	불포함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04.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02. 감리비	
		03. 시설부대비	
		04. 행사관련시설비	포함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	
		02. 민간대행사업비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불포함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02. 도서구입비	포함
	406 기타자본 이전		
	407 국외자본이전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01. 민간융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포함
		03. 공사·공단 융자금	
	502 출자금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 원금상환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03.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04.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불포함
		05. 기타 국내차입금원금 상환	
		06. 차관상환	
		07. 기타 해외채무 상환	
	602 예치금		

그룹	편성목	통계목	비고
700 내부거래			
	701 기타회계 등 전출금	01. 기타회계 전출금	불포함
		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01. 법정전출금	
		02. 비법정전출금	
	704 예탁금		
	705 예수금 원리금상환	01. 예수금원금 상환	
		02. 예수금이자 상환	
		0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 상환	
		0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706 기타내부거래	01. 감가상각비	
		02. 당기순이익	
		03. 적립금	
800 예비비 및 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불포함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03. 내부유보금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03. 과오납금 등	
		04. 잡손금	

부록 3: 미협의 사업의 예산 편성목·통계목별 분류

편성목 통계목	사업명
101-04	인건비 등(저소득층 전문기술인력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자체)
201-01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201-02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301-01 (135개)	월세임대료보조지급, 저소득층 현역병 휴가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복지사각 취약계층 건강음료 배달사업,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독거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차상위복지대상자 중·고신입생 교복비 지원, 독거어르신 반려식물 보급,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및 유족) 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경로우대목욕료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시설전기요금지원, 저소득층공영장례서비스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공공하수도사용료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가정 출산장려 사업, 결식아동 급식단가 보조, 출산지원금, 참전유공자 수당, 보훈명예수당, 행려사망자 처리비, 보훈명예수당, 행려자 보호 및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어린이집 아동 관내 체험활동비 지원, 보훈명예수당, 출산장려 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요보호아동 긴급지원비, 국민기초 고등학생 저녁급식비 지원, 독거노인 디지털 가스안전장치 지원,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원, 보훈명예수당,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요보호 아동지원, 참전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보호종결아동자립정착금, 출산장려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 장제비,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노숙인 등 보호, 출산지원금, 초·중·고등학생수학여행경비지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의치보철의료비지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자립지원정착금지원,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지원, 사망자 장제비, 국가보훈대상자지원, 참전유공자지원시책추진, 참전수당(참전용사), 저소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출산축하금 지원, 청소년 자립지원, 보훈명예수당, 희망키움통장(I) 가입자 추가장려금 지원, 노인 목욕비 지원,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수당, 국제결혼가정지원, 출산장려금, 참전유공자 수당, 아기 디엔에이카드 발급, 정서행동 프로그램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등 구입, 출산장려금 지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보훈명예수당,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행려사망자 수송비 및 장제비,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지원사업, 넷째이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지원, 출산지원금 및 임신축하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생아 출산장려금,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지원, 중증장애인유료방송요금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디딤씨앗통장적립지원, 화장장사용료 지원, 출산장려금지원, 둘째아 이상 양육 지원, 농어촌신생아양육비, 출산육아용품 지원, 다둥이 가정 출산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출생아 축하선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임신축하물품구입, 출산축하물품구입, 인권피해자 사후지원, 한부모가족 시설입소자 및 한부모세대 교복비, 임산부 기형아검사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노인목욕비지급, 치매노인GPS사용료지원,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아기보험가입, 다문화보육아동본인부담금지원,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지원, 노인건강 진단, 보훈명예수당,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취득 훈련비 지급, 유족회 및 미망인회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제도권밖 의료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시설수급자 간병비 지원, 시설수급자 간병비, 1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301-02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301-06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편성목 통계목	사업명
301-11 (34개)	장애인일자리 사업, 입양축하금, 시니어 재능나르미 운영, 경로우대목욕장보상, 경로우대이·미용업소보상, 경로우대 목욕장 하수도료 지원,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국가유공자 수당,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 참전유공자수당, 화장장려금,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무료수강 교재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여성농업인영농도우미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미망인복지수당,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다자녀 학비 지원, 국제결혼가정 특송요금 지원, 출산장려금,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화장장려금, 참전유공자 지원, 범죄피해자위로금, 인권피해자 한시적 시설 이용지원(입소비용), 화장장려보조금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307-01 (54개)	다둥이 가정 산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철분제·엽산제 구매,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말기암환자 영양제등 구입, 노인 의치 사후관리비,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아토피천식진단검사·치료비지원, 의치보철사후관리비, 금연대상자 폐암 검사비 지원, 취약계층 아토피환아 의료비 지원, 한방난임지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구강관리비, 틀니시술 및 수리비 지원, 태아기형 선별검사 쿠폰 지원, 노인무료의치시술비,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태아기형아검사,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무료의치 보철사업 사후관리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사업, 부랑인 및 행려자,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지원,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 가임기여성 엽산제 지원, 임산부 및 아동건강 증진사업,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원,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 분만 이송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경동맥초음파 검진비,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자살위기시도자 응급치료,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구입, 다자녀 산모도우미 지원, 치매노인배회감지기 기기구입, 치매노인배회감지기 사용료, 불우계층자녀 교복지원사업, 난임부부의료비지원, 취약계층 일시보호비 지원, 기형아검사비 지원, 저소득 긴급구호 양곡·피복·취사연료비, 결핵환자영양제 구입,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검사 지원비,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당뇨합병증 안정 및 신장검사비, 태아기형아 등 검사비 지원, 치매노인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둘째아 출산산모 한방첩약지원, 취약계층 아동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307-02 (48개)	자서전 만들기 사업 지원, 출산장려계정 우수사업 공모,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사업, 시설입소자 지원,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안전서비스 사업,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사업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선척적 발달장애 아동상담 치료사업, 신장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대상 프로그램 지원사업, 취약계층 결핵검진 X-선 장비지원, 저소득층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청년 등 특화사업 발굴, 융복합사업 활성화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어울림공동체공모사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자립지원, 홀몸어르신 평생돌보미 사업, 재난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 청소년선도·보호단체지원, 미인가대안교육기관지원, 민관협력 사업,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사업, 고령국가유공자 돌봄사업, 임산부산후조리비용지원, 모자가정취약환경주거개선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사랑의 연탄나누기,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 마음나눔 집수리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다양한 세상 프로젝트, 불우청소년선도지원사업, 취약계층보금자리단장지원사업, 틀니가교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도민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돌봄공동체 발굴육성사업, 어려운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독거노인 자매결연사업
307-03	노인회 지회장 및 부지회장 활동비 지원
307-04	장애인합동결혼식, 장애인 합동 결혼식

편성목 통계목	사업명
307-05 (25개)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비, 효사랑안마서비스 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쌀 등 급식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 만성폐쇄성 폐질환 재활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바우처기금 예탁,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프로그램 확대, 학교밖청소년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배움누리 운영지원,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추가보육료 지원, 취약가정 가스타이머 설치,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임산부 산전관리 초음파검사,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취득 지원, 자활사업운영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위탁운영비,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치매어르신안전지킴사업
307-10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사회복지심부름센터운영
307-11 (63개)	독거노인 집수리 사업, 시각장애인 효 안마사업, 독거어르신가정 안전바 설치, 자활참여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장애인직업학교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독거노인 안전강화사업, 대학생 저소득층 학습멘토지원 사업, 학교밖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학교밖청소년 취업 지원, 학교밖청소년 복지지원, 장애인활동강화 사업비 지원, 다문화가족행복정착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취업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추억만들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청소년 해외봉사단 문화교류,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사업, 노인사회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교육, 희희빨래방 운영, 중도입국청소년 맞춤형 진로지원사업, 다문화통합프로그램지원,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독거노인 환경정비사업,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 저소득독거노인 건강과일지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다문화 보육 특화 프로그램, 아동급식 추가지원금, 청소년단체공익활동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부진학습지원, 아이돌보미지원, 다문화가족 행복앨범 제작, 휠체어·컴퓨터 클린업,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추가지원, 여성장애인 컴퓨터 및 자수교실 운영, 교재교구 구입비, 이동세탁서비스 운영지원, 장애인부부 합동결혼식, 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차액보육료 지원, 이동목욕사업단지원, 식사배달사업,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비, 장애인가정 도우미지원사업, 중고령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308-01 (38개)	어르신 한의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추진, 아동급식 지원, 한방치매관리,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사업,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지원사업,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학교밖청소년 복지지원,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꿈을 만드는 청소년 잡-스케치, 요보호아동수학여행경비,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아동급식지원,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학교 밖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사업, 지역 다문화고교생 직업교육, 시니어 일자리창출사업, 북한이탈대학생 교재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치료, 공공형 일자리 사업, 특화형 일자리 사업, 자살시도자 등 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한방치료사업, 독립유공자유족진료비지원, 시설아동대학진학자금, 아동그룹홈보호아동지원, 일제강점기여자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농아인용영상전화기지원사업, 장애인복지전문성제고지원
308-10 (4개)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09-01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전출금
401-01 (6개)	안심주택 개보수비, 가스지키미설치,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보급사업, 가스안전기기보급사업, 저소득층 가스안전 차단기설치, 주거환경개선
402-01 (4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지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다문화가정 모국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 사랑의 집짓기 개보수

편성목 통계목	사업명
402-02	주거환경개선
403-01	홀로어르신 선풍기 지원
403-02 (6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나눔 사회공헌 활동,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노령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405-01	안심주택 가구 및 집기류 구입
501-01	자활사업 민간융자금